2 0 2 3 년 도 서 울 특 별 시 예 산 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8

202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11. 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11. 3.

4. 상정일자 :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1.12. 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1.12.2.)

-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21.12.15.)

-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힘을 잃어가는 미래 성장동력, 기후변화로 기세를 더해가는 각종 자연재난 등 산적한 현안과 과제를 중점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 20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47조 2,05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3조 5,245억원, 특별회계는 13조 6,807억 원임

○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순계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12조 7,033억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8조 7,874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3조 5,24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조 1,820억원(7.0%)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조 7,862억원(7.7%) 증가한 24조 8,818억원 이며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지방소득세 1조 8,817억원(31.1%)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감소로 올해 대비 5,025억원(27.9%) 감소한 1조 2,998억 원임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4,994억원(8.3%) 증가한 6조 5,325억원을 반영하였음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율
총 규 모	**335,245**	**313,425**	**21,820**	**7.0**
자 체 수 입	261,816	248,979	12,837	5.2
시 세	248,818	230,956	17,862	7.7
취 득 세	52,219	62,046	△9,827	△15.8
지 방 소 득 세	79,339	60,522	18,817	31.1
지 방 소 비 세	27,869	21,892	5,977	27.3
주 민 세	6,724	6,167	557	9.0
자 동 차 세	10,524	12,165	△1,641	△13.5
레 저 세	1,061	299	762	254.8
담 배 소 비 세	5,822	5,715	107	1.9
재 산 세	41,633	38,276	3,357	8.8
지역자원시설세	3,340	3,097	243	7.8
지 방 교 육 세	18,150	18,677	△527	△2.8
지난년도 시세	2,137	2,100	37	1.8
세 외 수 입	12,998	18,023	△5,025	△27.9
경상적 세외수입	8,439	13,236	△4,797	△36.2
임시적 세외수입	4,483	4,708	△225	△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	79	△3	△3.8
지 방 교 부 세	2,018	2,048	△30	△1.5
국 고 보 조 금	63,307	58,283	5,024	8.6
지 방 채	-	-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04	4,115	3,989	96.9
보 전 수 입 등	578	901	△323	△35.8
내 부 거 래	7,526	3,214	4,312	134.2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조 6,807억원으로 올해 대비 8,042억원(6.2%)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의 경우 2조 9,21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30억원(10.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증가와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부담금 증가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5조 6,679억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 전입금 2조 2,16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입금 9,526억원,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입금 9,399억원, 유가보조금 전입금 2,656억원 등임

○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20억원(2.4%) 감소한 2조 986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7,930억원으로 도시철도공채로 7,773억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에 2,400억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1,500억원 등을 발행하고자 함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율
총 규 모	**136,807**	**128,765**	**8,042**	**6.2**
세 외 수 입	29,210	26,380	2,830	10.7
경상적세외수입	21,999	19,915	2,084	10.5
임시적세외수입	1,448	1,848	△400	△2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63	4,617	1,146	24.8
일반회계 지원금	56,679	49,676	7,003	14.1
법 정 지 원	37,917	35,470	2,447	6.9
일 반 지 원	18,762	14,206	4,556	32.1
타 회 계 전 입 금	466	453	13	2.9
국 고 보 조 금	20,986	21,506	△520	△2.4
공 채 및 차 입 금	17,930	17,089	841	4.9
기 금 전 입 금	0	1,500	△1,500	△1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등	11,536	12,161	△625	△5.1

○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시안전 강화’라는 3개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 첫째,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12조 8,835억원을 편성하여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 확대(500→1,600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인상(월 10→20만원), 미취업 경력보유 여성 구직활동지원금(최대 90만원), 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 등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지원에 7조 4,509억원을 편성했음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월세(월 2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등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지원에 2조 6,909억원을 편성하였음

○ 시립병원 증축 및 기능강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등 보편적 건강권 보장 위한 의료·건강 지원에 4,772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런 멘토링 및 콘텐츠 확대(가입자 2만→4만명),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동행플라자 2개소 조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20만원) 등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에 2,311억원을 투입하였음

○ 둘째,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조 8,699억원을 편성하여 ‘매력특별시’를 구현하고자 함

○ 서울형 R&D 과제 지원,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제2핀테크랩 운영,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및 양재 AI 혁신지구 운영 등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에 2,077억원을 편성하겠음

○ 유망기업 성장 지원 위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및 동북권 성장유망기업 지원센터 신규 개관, 청년 창업 및 인재양성 위한 캠퍼스타운 9개소 신규 지정 등 808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음

○ 동북선, 서부선 등 경전철 건설 본격 착수, 별내선 개통 등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서남권 도로망 확충,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에 1조 2,347억원을 편성하였음

○ 뷰티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울패션허브 및 DDP 쇼룸 운영, 서울페스타 2023 개최, 고부가가치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한강 미디어아트, 빛 축제 운영 등 2,685억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뷰티·관광허브를 조성하겠음

○ 홍제천, 도림천, 정릉천 등 수변감성공간 조성, 한강 접근성 강화 위한 암사초록길 개통('23.12.), 노들섬 문화명소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책 읽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 책마을 운영 등 품격 있는 감성공간 조성에 4,684억원을 편성하였음

○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 위한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및 수소차 충전소 운영,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한강의 적조·녹조 예방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수돗물 수질 개선 위한 상수도관 세척 등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에 6,098억원을 투자하였음

○ 셋째, 수방대책 및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등 도시안전 강화에 1조 6,676억원을 투자함

○ 강남역, 광화문 등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빗물처리시설 확충, 침수취약지역 29개소 대상 소구역 하수도 정비, 산사태 예방 위한 사방시설 조성 등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 위하여 5,112억원을 편성함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차도 1,365km에 대한 노후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보수·개량 등 재투자, 장기 사용한 상수도관·열수송관 교체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1조 1,564억원을 투자함

○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은 총 12조 7,033억원으로 이 중 자치구 전출금은 조정교부금 4조 1,679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조 6,056억원 등 총 6조 7,735억원임

○ 교육청 전출은 보통세의 10%,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등으로 총 3조 9,660억 원임

○ 그 밖에 채무상환 1조 2,386억원, 법정출연금 3,444억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법정적립금은 2,882억 원임

Ⅲ. 2023년도 예산안 개요[1)]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2.11. 1)를 통하여 '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3대 투자 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예산안은 ①약자와의 동행(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②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③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47조 2,052억 2,700만원이나 중복계상 되는 회계간 전·출입(5조 7,145억 400만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4,907억 2,400만원이며

- 순계예산중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4,600만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6,000만원), 채무상환(1조 2,386억 3,800만원), 기금전출금(2,881억 9400만원), 반환금(4,369억 2,600만원)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3억 5,900만원임

- 실집행규모중 ①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증액된 '22년도 최종예산(15조 8,338억원)보다 1.4%(2,237억원) 증가한 16조 575억원, ②도로·교통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3조 1,900억원)보다 △19.1%(△6,090억원) 감소한 2조 5,80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③환경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2조 3,004억원)보다 △5.1%(△1,179억원) 감소한 2조 1,825억원을 편성요청하였고, ④도시안전 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5,329억)보다 11.7% 증가한 1조 7,12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47조 2,052억 2,700만원이나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9.6%, △5조 180억 9,6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9,759억 8,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운용계획(3조 5,020억 6,100만원)보다 42.1%, 1조 4,739억 2,100만원 증액계획 하여 제출한 것임

〈표 1-1〉 2023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 산	47,205,227	52,223,324	△5,018,096	△9.6
일 반 회 계	33,524,517	37,987,877	△4,463,360	△11.7
특 별 회 계	13,680,710	14,235,447	△554,736	△3.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 p.13

구 분	2023년도 (계획안)	2022년도 (최종계획)	증 감	증 감 률
기 금 (17개 기금 25계정)	4,975,983	3,502,061	1,473,921	4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개요

⑴ 2023년도 예산안 규모

❑ ’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조 2,052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33조 5,245억 1,700만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2〉 2023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계	47,205,227	52,223,324	△5,018,096	△9.6
일반회계	33,524,517	37,987,877	△4,463,360	△11.7
특별회계	13,680,710	14,235,447	△554,736	△3.9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	1,754,767	61,632	3.5
수도사업특별회계	930,000	817,380	112,619	13.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6,400	937,386	△50,986	△5.4
기타특별회계	11,864,310	12,480,679	△616,369	△4.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72,025	2,145,323	△173,298	△8.1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	2,207,225	△555,605	△2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764	265,501	40,263	15.2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	2,982,493	△3,116	△0.1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	1,956,554	△122,827	△6.3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	162,616	5,932	3.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386	29,214	172	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2,895	1,752,274	160,620	9.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5,791	33,704	2,087	6.2
소방특별회계	975,173	945,771	29,402	3.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2023년도 예산(안)」p.13

⑵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조 5,245억 1,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4조 8,817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1조 2,997억 9,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3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2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2,018억 2,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였고, **보조금**은 6조 3,307억 4,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이며 **지방채**의 경우, ’23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예산에 편성요청 하지 않음

〈표 1-3〉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33,524,517	37,987,877	△4,463,360	△11.7
지방세수입	24,881,784	23,095,574	1,786,210	7.7
세외수입	1,299,797	1,888,271	△588,473	△31.2
지방교부세	201,828	263,611	△61,782	△23.4
보조금	6,330,747	6,461,168	△130,421	△2.0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0,359	6,279,251	△5,468,892	△87.1

2) 특별회계

❑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2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외수입**은 2조 9,209억 9,5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조 6,447억 5,000만원)보다 10.4%, 2,762억 4,500만원 증액 편성요청 되었음

○ **보조금**은 2조 985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조 2,934억 2,800만원)보다 △8.5%, △1,948억 4,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1조 2,772억 5,2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85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3,95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357억 9,600만원)에서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22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19.0%, 2,860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된 1조 7,930억 4,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조 8,680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7조 7,889억 4,000만원)보다 △11.8%, 9,208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4〉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13,680,710	14,235,447	△554,736	△3.9
세 외 수 입	2,920,995	2,644,750	276,245	10.4
보 조 금	2,098,584	2,293,428	△194,844	△8.5
지 방 채	1,793,048	1,506,949	286,099	19.0
지 방 교 부 세	0	1,380	△1,38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68,084	7,788,940	△920,856	△11.8

⑶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7조 2,052억 2,7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11.7%, △4조 4,633억 6,100만원 감액된 33조 5,245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3.9%, △5,547억 3,600만원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5조 7,145억 400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조 6,678억 9,900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64억 500만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12조 7,033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자치구 지원은 6조 7,73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7,254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480억 8,8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9,640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8,800만원,
- 채무상환 1조 2,38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9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2,126억 5,200만원,
- 반환금 등 4,369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35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 7,500만원,
-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881억 9,400만원 전액을 편성한 것임

○ 회계간 전·출입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조 4,393억 5,600만원, 특별회계 12조 3,480억 300만원임

〈표 1-5〉 2023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규 모	47,205,227	52,223,324	△5,018,096	△9.6
일 반 회 계	33,524,517	37,987,878	△4,463,361	△11.7
특 별 회 계	13,680,710	14,235,447	△554,736	△3.9

회계간 전출·입 차감

회 계 간 전 출 · 입 : 5조 7,145억 400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5조 6,678억 9,900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64억 500만원

순 계 규 모	41,490,724	46,120,798	△4,630,074	△10.0
일 반 회 계	27,856,618	31,928,856	△4,072,238	△12.8
특 별 회 계	13,634,106	14,191,942	△557,836	△3.9

법정의무경비 차감

법 정 의 무 경 비 : 12조 7,033억 6,500만원

일 반 회 계 11조 4,172억 6,200만원	특 별 회 계 1조 2,861억 300만원
- 자치구 지원 6조 7,254억 5,800만원	- 자 치 구 지 원 480억 8,8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9,640억 7,200만원	교 육 청 지 원 19억 8,800만원
- 채 무 상 환 259억 8,600만원	- 채 무 상 환 1조 2,126억 5,200만원
-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	- 기 금 전 출 금 - -
- 반 환 금 등 4,135억 5,100만원	- 반 환 금 등 233억 7,500만원

실 집 행 규 모	28,787,359	29,747,690	△960,331	△3.2
일 반 회 계	16,439,356	17,032,576	△593,220	△3.5
특 별 회 계	12,348,003	12,715,114	△367,111	△2.9

2) 성질별 재원 배분

❑ ’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47조 2,052억 2,700만원)중 **회계간 전출입** 5조 7,145억 400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조 4,907억 2,400만원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25조 8,589억 1,9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6조 3,907억 5,300만원) 대비 △2.0%, △5,318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 16조 575억 4,400만원(34.0%), 도로·교통 2조 5,809억 5,800만원(5.5%), 환경 2조 1,825억 1,500만원(4.6%), 도시안전 1조 7,126억 4,100만원(3.6%), 산업경제 9,708억 9,200만원(2.1%), 문화관광 8,102억 9,300만원(1.7%),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592억 6,500만원(0.8%) 등임

- 법정의무경비는 12조 7,033억 6,500만원으로 자치구 지원 6조 7,735억 4,600만원,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 6,000만원, 채무상환 1조 2,386억 3,800만원, 반환금 등 4,369억 2,600만원,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1-6〉 총계기준 2023년도 예산안(부문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47,205,227	100.0	52,223,324	100.0	△5,018,096	△9.6
행 정 운 영 경 비	2,126,892	4.5	2,015,664	3.9	111,228	5.5
재 무 활 동	8,479,854	18.0	11,386,851	21.8	△2,906,997	△25.5
교 육 청 지 원	6,773,547	14.3	7,741,100	14.8	△967,553	△12.5
자 치 구 지 원	3,966,016	8.4	4,688,957	9.0	△722,941	△15.4
사 업 비	25,858,919	54.8	26,390,753	50.5	△531,834	△2.0
사 회 복 지	16,057,544	34.0	15,833,821	30.3	223,723	1.4
환 경	2,182,515	4.6	2,300,417	4.4	△117,902	△5.1
도 로 · 교 통	2,580,958	5.5	3,190,024	6.1	△609,066	△19.1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비	359,265	0.8	428,649	0.8	△69,384	△16.2
산 업 경 제	970,892	2.1	1,097,770	2.1	△126,878	△11.6
도 시 안 전	1,712,641	3.6	1,532,905	2.9	179,736	11.7
문 화 관 광	810,293	1.7	839,360	1.6	△29,067	△3.5
일 반 행 정	1,000,072	2.1	999,003	1.9	1,069	0.1
예 비 비	184,739	0.4	168,804	0.3	15,935	9.4

〈표 1-7〉 총계기준 2023년도 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7,205,227	100	52,223,324	100	△5,018,096	△9.6
인 건 비	1,680,182	3.56%	1,637,671	3.14%	42,510	2.6
물 건 비	1,515,913	3.21	1,450,933	2.78	64,980	4.4
경 상 이 전	24,771,793	52.4	26,252,546	50.2	△1,480,752	△5.64
자 본 지 출	6,099,787	12.9	6,193,848	11.8	△94,061	△1.5
융자 및 출자	663,249	1.4	572,825	1.1	90,424	15.79
보 전 재 원	1,031,453	2.19	1,058,308	2.0	△26,854	△2.5
내 부 거 래	11,165,586	23.6	14,730,032	28.2	△3,564,446	△24.2
예비비 및 기타	277,259	0.59	327,157	0.63	△49,897	△15.2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2023년도 예산(안)」p.21~22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3년도에 운용할 17개 기금(25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조 9,759억 8,300만원으로 ’22년도(3조 5,020억 6,100만원)보다 42.1%, 1조 4,739억 2,1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23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도(안)	2022년도[주1)]	증감	증감률
17개 기금 (25개 계정)	4,975,983	3,502,061	1,473,921	42.1

주1) 당초계획 기준

❑ 17개 기금의 ’23년도말 조성액은 6조 7,138억 6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2년도말 조성액(6조 6,654억 800만원)보다 0.7%, 483억 9,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2023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2023년도말 조성액 (B)	증 감 (C=B-A)	증감률 (D=C/A)
		수 입	지 출			
합 계	6,665,408	2,138,320	2,089,922	6,713,806	48,397	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17,589	1,308,875	1,356,720	5,669,745	△47,844	△0.8
통 합 계 정	3,479,015	1,222,328	132,920	4,568,423	1,089,408	31.3
재정안정화계정	2,238,574	86,547	1,223,800	1,101,322	△1,137,252	△50.8
중소기업육성기금	115,953	343,680	376,025	83,607	△32,345	△27.9
융 자 계 정	70,767	301,880	316,860	55,787	△14,980	△21.2
투 자 계 정	45,186	41,800	59,165	27,820	△17,365	△38.4
식품진흥기금	42,674	3,734	4,073	42,335	338	0.8
기후변화기금	81,910	12,683	22,846	71,747	△10,162	△12.4
사회투자기금	24,722	12,110	5,480	31,352	6,630	26.8
도로굴착복구기금	17,311	35,440	33,951	18,800	1,489	8.6
성평등기금	23,576	1,096	1,000	23,673	96	0.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363	30,460	27,143	14,680	3,317	29.2
사회복지기금	43,805	41,932	46,024	39,712	877	2.0
노인복지계정	12,367	861	308	12,920	552	4.5
장애인복지계정	20,983	3,153	7,441	16,695	△4,287	△20.4
자 활 계 정	8,259	1,201	875	8,584	325	3.9
주거지원계정	2,196	36,717	37,400	1,513	△682	△31.1
체육진흥기금	54,243	10,257	10,334	54,167	△76	△0.1
재난관리기금	392,139	271,138	177,535	48,5741	93,602	23.9
재 난 계 정	351,884	213,342	120,910	444,316	92,432	26.3
구 호 계 정	40,255	57,796	56,625	41,425	1,170	2.9
남북교류협력기금	25,639	498	3,478	22,659	△2,979	△11.6
대외협력기금	7,524	2,651	4,680	5,494	△2,028	△27.0
국내협력계정	2,995	1,060	2,972	1,082	△1,912	△63.8
국제협력계정	4,529	1,591	1,708	4,412	△116	△2.6
도시재생기금	44,952	22,934	1,006	66,881	21,928	48.8
관광진흥기금	5,653	2,272	1,614	6,311	658	11.6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519	2,020	1,614	925	406	78.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134	252	0	5,386	252	4.9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699	18,550	18,007	7,242	543	8.1
하수도사업회전기금	49,646	20,000	0	69,646	20,000	40.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p.10~12를 재구성

Ⅳ.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바,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됨

❍ ’23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 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사업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는 ’22년도와 동일한 6,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음

- ’23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설정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출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 다만,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예산편성 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나 '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772억 5,2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0억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3,950억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357억 9,600만원을 편성한 바, 총 1조 7,930억 4,8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19.0%, 2,860억 9,9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지난 7월, '23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7,022억 1,300만원으로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한도액(9,972억 5,200만원)은 ①도시철도공채 발행액(7,772억 5,200만원)과 ②'23년 차환채 발행액(2,200억원)이 해당되는 바,

- ’23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7,022억 1,300만원)과 별도한도액(9,972억 5,200만원)을 합한 2조 6,994억 6,500만원이며 예산총칙 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1조 7,930억 4,800만원으로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 2023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방채 발행규모	**총 발행규모**	①	**1,793,048**
	일반회계		-
	특별회계		1,793,048
	기금		-
지방채 발행한도액	**총 한도액**	②	**2,699,465**
	기본한도액		1,702,213
	별도한도액		997,252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777,252
	’23년 차환채 발행액		220,000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한도초과 발행액		③=①-②	**△904,41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171 (’22.11. 4) 일부 재구성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3조 5,245억원)의 0.41%, 1,393억원, 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593억원임

-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2년도 본예산(1,508억원) 대비 5.6%, 85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된 '22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229억 9,4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23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3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음으로써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세입예산의 특징

❑ ’23년도 예산안은 ’22년도 최종예산(52조 2,233억 2,400만원)보다 △9.6%, △5조 180억 9,600만원 감액된 47조 2,052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이 감액된 33조 5,245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 2023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47,205,227	52,223,324	△5,018,096	△9.6
일 반 회 계	33,524,517	37,987,877	△4,463,360	△11.7
특 별 회 계	13,680,710	14,235,447	△554,736	△3.9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 세입예산은 세출수요증가, 물가의 자연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난 ’21년도에 이어 ’22년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6조 4,428억 4,500만원)이 초과 발생되어 회계연도중 이를 세입예산에 경정한 바 있어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 규모가 확대된 특수성이 있어 ’23년도 편성규모와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됨

⑵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3조 5,245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표 2-3〉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33,524,517	37,987,877	△4,463,360	△11.7
지 방 세 수 입	24,881,784	23,095,574	1,786,210	7.7
보 통 세	22,519,132	20,708,171	1,810,961	8.7
취 득 세	5,221,862	6,204,612	△982,750	△15.8
주 민 세	672,385	616,633	55,752	9.0
재 산 세	4,163,279	3,827,592	335,687	8.8
자 동 차 세	1,052,439	1,216,532	△164,093	△13.5
레 저 세	106,133	29,891	76,242	255.1
담 배 소 비 세	582,205	571,531	10,674	1.9
지 방 소 비 세	2,786,892	2,189,240	597,652	27.3
지 방 소 득 세	7,933,937	6,052,140	1,881,797	31.1
목 적 세	2,148,952	2,177,403	△28,451	△1.3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09,683	24,321	7.9
지 방 교 육 세	1,814,948	1,867,720	△52,772	△2.8
지 난 년 도 수 입	213,700	210,000	3,700	1.8
세 외 수 입	1,299,797	1,888,271	△588,474	△31.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43,884	1,423,889	△580,005	△40.7
재 산 임 대 수 입	166,384	154,234	12,150	7.9
사 용 료 수 입	152,012	142,832	9,180	6.4
수 수 료 수 입	38,799	44,616	△5,817	△13.0
사 업 수 입	352,546	949,551	△597,005	△62.9
징수교부금수입	11,394	11,383	11	0.1
이 자 수 입	122,746	121,271	1,475	1.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448,277	456,496	△8,219	△1.8
재 산 매 각 수 입	32,227	52,835	△20,608	△39.0
자치단체간부담금	13,770	14,599	△829	△5.7
보조금반환수입	224,406	178,922	45,484	25.4
기 타 수 입	147,374	180,852	△33,478	△18.5
지 난 연 도 수 입	30,498	29,288	1,210	4.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35	7,884	△249	△3.2
과 징 금	691	317	374	118.0
변 상 금	4,458	3,371	1,087	32.2
과 태 료	2,361	4,062	△1,701	△41.9
부 담 금	124	133	△9	△6.8
지 방 교 부 세	201,828	263,611	△61,783	△23.4
보 통 교 부 세	172,604	220,579	△47,975	△21.7
특 별 교 부 세	-	-	-	-
소 방 안 전 교 부 세	29,224	32,181	△2,957	△9.2
보 조 금	6,330,747	6,461,168	△130,421	△2.0
지 방 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0,359	6,279,251	△5,468,892	△87.1
보 전 수 입 등	57,802	5,958,127	△5,900,325	△99.0
내 부 거 래	752,556	321,124	431,432	134.4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400만원 감액된 1조 2,9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300만원 감액된 2,018억 2,800만원, **보조금**은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 감액된 6조 3,30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의 경우, ’23년도에도 일반회계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음에 따라 ’22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2,792억 5,100만원)보다 △87.1%, △5조 4,688억 9,200만원 감액된 8,103억 5,9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1)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의 세입예산액은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등을 인용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나,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이 지속되면서 여행, 숙박, 음식, 스포츠 등의 소비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어 둔화와 성장요인 상존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둔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

한 결과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상(2.5%→3.0%)한 바 있어 향후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잠재되어 부동산 거래 둔화 또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기반한 취득세수와 소득·소비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수전망에도 둔화요인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2,046억 1,200만원)보다 △15.8%, △9,827억 5,000만원 감액된 5조 2,218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대출 금리변동,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등에 의하여 세수의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임

-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2년 1월 0.25%에서 '22년 9월 3.2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2년 1월 1.25%에서 '22년 10월, 3%로 인상한 사례가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율 상승과 연동된 부동산 거래가 둔화로 연결되고 있어 회계연도 중 취득세 세입의 신장성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 미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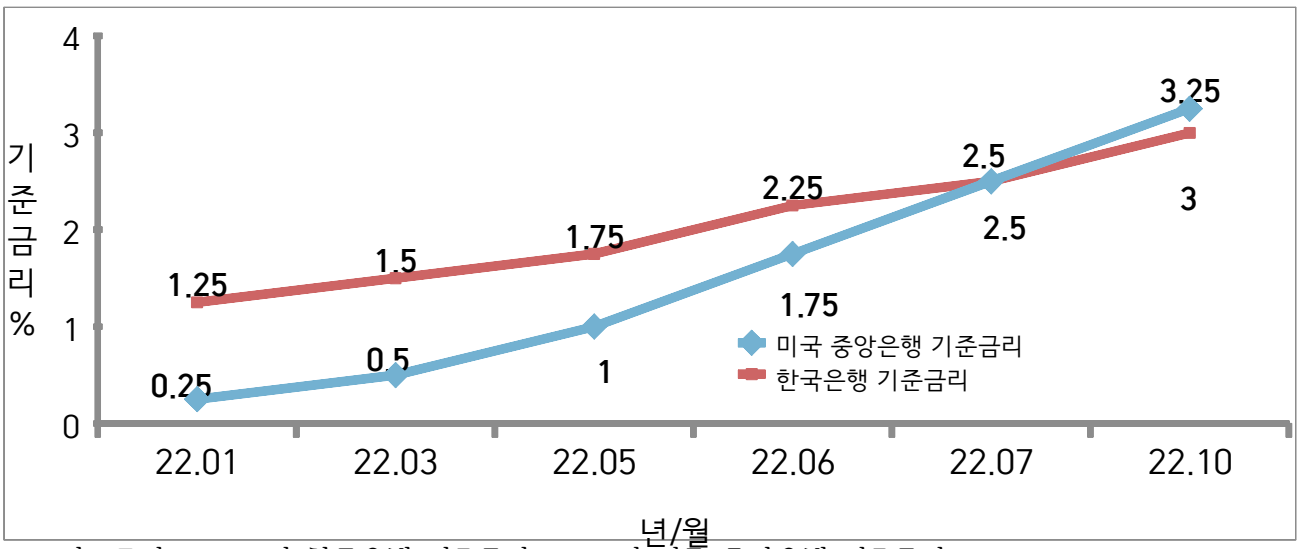

※ 자료근거 : 2022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년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 또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별 대출 부담이 증가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마저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여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초 세수 추계보다 감수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3년도 취득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2023년도 추계[주1] (A)	2022년도[주2]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5,221,862	6,204,612	5,890,364	△982,750	△15.8	△668,502	△11.3

주1)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521억 4,000만원)보다 31.1%, 1조 8,817억 9,700만원 증액된 7조 9,339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3년도 시세 추계액의 32%를 점유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됨

- 기획재정부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3년도 국세수입은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나, 임금상승(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2022년도 대비 5.0%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는 2022년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에 따라 금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바,

-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내년도 국세의 경우에는 '23년도 예산에 '22년도 본예산 대비 법인세(40.0%)와 종합소득세(24.5%)를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서울시도 '22년도 대비 ②법인소득분(56.8%)과 ①종합소득분(16.0%)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동 세목의

경우, 경기둔화 요인이 세수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③특별징수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용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세입증가로 귀결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23년도에는 '22년도(2조 9,058억 3,400만원)보다 25.7%, 3,469억 300만원 증가된 3조 6,52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④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17년도부터 지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도추세가 둔화되어 '23년도에는 '22년도 실제수납액(1조 625억 5,900만원)보다 감소된 7,407억 7,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 2023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명	2023년도 예산안[주1)]	2022년도 예산서 (최종예산)[주2)]	증·감	증감률
계	7,933,937	6,052,140	1,881,797	31.1
①종합소득분	909,933	784,387	125,546	16.0
②양도소득분	740,773	683,755	57,018	8.3
③법인소득분	2,631,051	1,678,164	952,887	56.8
④특별징수분	3,652,180	2,905,834	746,346	25.7

주1)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지방소득세**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소득의 자연증가분이 발생되는 경우 등 다양한 세수 증가요인이 작용될 수 있고 통계청의 「소비자 물자지수」 '20년도(0.5%), '21년도(2.5%), '22년도 1~10월 평균(5.0%)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실제 경제여건에 따라 세수에도 유동성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는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보고 있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고, 최근 수년간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성이 잠재된 세목으로, 최저임금 상승 및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여지가 있으나 물가상승 대비 소득인상률이 둔화 될 경우 세수 감소 요인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2-7〉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년도[주1)]	2021년도[주1)]	'22년도 전망[주2)]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5,433,080	5,196,430	6,052,140	7,933,937
징수액	6,107,644	7,427,344	8,378,593	
결산율	112.4	144.9	138.4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재산세**는 '22년도 최종예산(3조 8,275억 9,200만원)보다 8.8%, 3,356억 8,700만원 증액된 4조 1,632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1조 9,470억 3,400만원)와 ②「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2조 2,162억 4,500만원)로 구성됨

〈표 2-8〉 특별시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 전망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1,414,625	1,634,326	1,818,860	1,947,034
징수액	1,522,721	1,718,520	1,865,216	
결산율	107.6	103.4	102.5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각각 전출되는 재원임

〈표 2-9〉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 전망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1,584,374	1,760,231	2,008,732	2,216,245
징수액	1,681,240	1,927,548	2,009,267	
결산율	106.1	105.3	100.0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동 세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증가되는 세원으로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2022년도 서울시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여전히 100이상으로 평균 매매가격을 상회하고 있어 2023년도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가 전망됨

〈표 2-10〉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서울지역)

(단위 : %)

구 분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22년 6월	'22년 7월	'22년 8월	'22년 9월
매매가격 지수주1)	103.6	103.6	103.6	103.6	103.7	103.7	103.6	103.3	102.8
변동률	0.04	△0.04	△0.01	0.04	0.04	0.00	△0.09	△0.24	△0.47

※ 자료근거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매매가격지수
주1) 주택매매가격지수 : 주택시장의 평균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100을 기준으로 가격증감 측정

- 다만, 당초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기로 계획한 바 있으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금부담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추가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지난 '13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해 공시지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1조 8,431억 1,300만원)중 △0.9% △179억 1,400만원을 '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어 점증적인 세수 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하여도 일부 위험요인은 내재되어 있는 세목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22년도 최종예산(2조 1,892억 4,000만원)보다 27.3%, 5,976억 5,200만원 증액된 2조 7,868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납입관리자(전라북도지사)가 23.7%를 시·도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세목임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에 소비지출 보전분 비율(5%)과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①소비지출 보전분**, 부가가치세 예산에 취득세 등 보전분 비율(6%)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는 **②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비율(14.3%)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③전환사업 등 보전분**으로 구성됨

〈표 2-11〉 지방소비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소비지출분 (5%)	취득세보전분 (6%)	전환사업 등 보전분 (14.3%)
2023년도주1)	2,786,892	711,741	930,014	1,145,137
2022년도주2)	2,189,240	611,256	752,477	825,507

주1) 2023년도 세입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소비세에 대해 '23년도에는 1.6%p 인상할 계획인 바, '22년도의 지방소비세율은 23.7%이나, '23

년도부터는 세율 인상분 1.6%가 반영된 25.3%의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세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의 '23년도 예산안중 부가가치세는 '22년도(76조 540억원)보다 7조 1,495억원(9.4%) 증액된 83조 2,035억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2.1%, 민간소비 2.6% 증가 등 내년도 경제여건이 완만하게 호전될 것으로 예측한 정부 예산안에 근거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의 증가에 따라 자치구 전출, 교육청 지원 등도 연동되어 증가될 수 밖에 없어 증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물가상승, 코로나 재확산 등 내년도 국내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또한 증·감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가 통제될 때까지 유동성이 높은 세목으로 사료됨

〈표 2-12〉 최근 5개년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율

(단위 : %)

구 분	'19년도주1)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주2)	'23년도주3)
소비지출분 (5% 및 잔여분)	13.646	12.867	12.980	12.996	12.780
취득세 보전분(6%)	26.633	24.487	23.390	23.749	22.788
전환사업 보전분	해당없음 ('20년부터 적용)	267억원	267억원	790억원	1,549억원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자동차세**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2,165억 3,200만원)보다 △13.5%, △1,640억 9,300만원 감액된 1조 524억 3,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 2023년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추계[주1] (A)	2022년도[주2]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052,439	1,216,532	1,064,110	△164,093	△13.5	△11,671	△1.1
소유분	642,485	616,400	635,998	26,085	4.2	6,487	1.0
주행분	409,954	600,132	428,112	△190,178	△31.7	△18,158	△4.2

주1) 2023년도 세입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목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됨

- 다만, **소유분 자동차세**(6,424억 8,500만원)의 경우, SUV나 고가차량 판매 확대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선납액 제도에 대한 이용 증가로 일부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 고효율 저배기량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행 배기량에 따른 과세는 장기적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4〉 소유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 전망[주2)]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632,191	615,065	616,400	642,485
징수액	610,123	624,140	635,998	
결산율	96.51	101.5	103.2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주행분 자동차세**(4,099억 5,400만원)의 경우에는 '22년도(6,001억 3,200만원)보다 △31.7%, △1,901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 인상,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가로 세수감소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장기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5〉 주행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 전망[주2)]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632,191	615,065	616,400	642,485
징수액	610,123	624,140	635,998	
결산율	96.51	101.5	103.2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승마(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목으로 '22년도 예산(298억 9,100만원)보다 255.1%, 762억 4,200만원 증액된 1,061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바, 코로나19 거

리두기 해제 및 경기 재개로 세입 회복을 전망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6〉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도주1)	'20년도주1)	'21년도주1)	'22년도 전망주2)	'23년도 추계주3)
예산액	131,021	124,873	42,702	29,891	106,133
징수액	128,189	22,924	4,439	100,296	
결산율	97.8	18.4	10.4	335.5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을 고려하여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으로 시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규모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시세수입의 실제수납액 변동성 또한 발생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 월별 수납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감 조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400만원 감액된 1조 2,997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1조 4,238억 8,900만원)보다 △40.7%, △5,800억 500만원 감액된 8,438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42억 3,400만원)보다 7.9%, 121억 5,000만원 증액한 1,663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세목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1,639억 3,100만원)보다 △96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어 회계연도중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428억 3,200만원) 대비 6.4%, 91억 7,900만원 증액한 1,520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도로사용료(893억 2,700만원), 하천사용료(66억 2,200만원), 입장료수입(140억 5,100만원), 주차요금수입(83억 4,100만원), 기타사용료(336억 6,900만원)로 구성됨

▪ 아울러 지난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도로점용료 △155억 4,600만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일부 증·감 조정이 발생 가능한 세입과목으로 판단됨

- **수수료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446억 1,600만원)대비 △13.0% △58억 1,700만원 감액한 387억 9,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22년도보다 △58억 2,600만원 감액된 것이나 ’23년도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코로나19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교부될 가능성이 있어 결산시점에는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9,495억 5,100만원)보다 △62.9%, △5,970억 500만원 감액된 3,525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1,896억원), SH공사 이익 배당금(200억원)이 주요 수입 내역으로 확인됨

▪ 다만,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경우, 지난 ’20년도 본예산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매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용지가 매각 수입에 있어 허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212억 7,100만원)보다 1.2%, 14억 7,500만원 증액한 1,227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 이자수입이 '22년도(92억 7,900만원)보다 23억 1,700만원 증액된 115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이자수입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가적인 이자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4,564억 9,600만원)보다 △1.8%, △82억 1,900만원 감액된 4,482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서울시 공유재산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대금인 **재산매각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528억 3,500만원)보다 △39.0%, △206억 800만원 감액된 32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출됨

○ '21년도부터 분리·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78억 8,400만원)보다 △3.2%, △2억 4,900만원 감액된 76억 3,500만원이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매년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있으나 백신접종 완료자가 증가하고 있고,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중 세원관리, 변동요인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 수입은「지방교부세법」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23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300만원 감액된 2,018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 ’23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2,205억 7,900만원)보다 △21.7%, △479억 7,500만원 감액된 1,726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금년 12월 중 보통교부세 확정 교부액을 통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22년도 최초 교부액과 동일한 1,726억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아울러 ’22년도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최초 교부액(1,726억 400만원)을 교부 받고, 추가로 정부 추경분(326억 3,000만원), ’21년 정산분(153억 4,600만원)을 교부받아 최종예산은 2,205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어 ’23년도 보통교부세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교부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21억 8,100만원)보다 △9.2%, △29억 5,700만원 감액된 29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된 바,

- 보통교부세의 편성사례처럼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22년도 예산에 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따라 ①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과 ②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직 인건비분의 합계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 12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액이 통보될 예정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고 정부예산 확정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액 등이 통보되고 있어

▪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밀성과 안정적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임

- '22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간주처리를 통해 108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집행된 사례가 있어 '23년도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안중 특별교부세 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임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이 감액된 6조 3,30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금년도 최종예산(6조 1,392억 5,500만원)보다 △2.2%, △1,374억 6,900만원 감액된 6조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391억 5,400만원)보다 193.7%, 758억 5,000만원 증액된 1,15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기금**의 경우, 166개 사업에 금년도 최종예산(2,827억 5,800만원)보다 △24.3%, △688억 200만원 감액된 2,139억 5,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세입과목으로 '23년도에도 일반회계 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8,103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578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54억 6,7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억 4,700만원을 편성한 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부거래**는 7,525억 5,600만원으로 전입금 2,722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조 6,807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9.0%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임

❍ ’23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7〉 2023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7,205,227	100.0%	52,223,324	100.0%	△5,018,096	△9.6%
일 반 회 계	33,524,517	71.0	37,987,877	72.7	△4,463,360	△11.7%
특 별 회 계	13,680,710	29.0	14,235,447	27.3	△554,736	△3.9%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	3.8	1,754,767	3.4	61,632	3.5%
수도사업 특별회계	930,000	2.0	817,380	1.6	112,619	13.8%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6,400	1.9	937,386	1.8	△50,986	△5.4%
기타특별회계	11,864,310	25.1	12,480,679	23.9	△616,369,	△4.9%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2조 4,806억 7,900만원)보다 △4.9%, △6,163억 6,900만원 감액된 11조 8,64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표 2-18〉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		증감	
	예산안	구성비	최종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1,864,310	100%	12,480,679	100%	△616,369	△4.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72,025	16.6%	2,145,323	17.2%	△173,298	△8.1%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	13.9%	2,207,225	17.7%	△555,605	△2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764	2.6%	265,501	2.1%	40,263	15.2%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	25.1%	2,982,493	23.9%	△3,116	△0.1%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	15.5%	1,956,554	15.7%	△122,827	△6.3%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	1.4%	162,616	1.3%	5,932	3.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386	0.2%	29,214	0.2%	172	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2,895	16.1%	1,752,274	14.0%	160,620	9.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5,791	0.3%	33,704	0.3%	2,087	6.2%
소방특별회계	975,173	8.2%	945,771	7.6%	29,402	3.1%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1,453억 2,300만원)보다 △8.1%, △1,732억 9,800만원 감액된 1조 9,72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 세입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338억 8,600만원 증액편성되고, 지방채도 금년도보다 1,425억 7,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4,970억 9,400만원)은 △2,225억 1,000만원 감액편성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2,072억 2,500만원)보다 △25.1%, △5,556억 500만원 감액된 1조 6,516억 1,9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전입금을 금년도보다 △3,614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도 금년보다 △1,125억 2,1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655억 100만원)보다 15.1%, 402억 6,300만원 증액된 3,057억 6,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378억 9,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이 1,076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9,824억 9,300만원)보다 △0.1%, △31억 1,600만원 감액된 2조 9,79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92억 4,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351억 6,400만원 감액편성 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9,565억 5,400만원)보다 △6.2%, △1,228억 2,700만원 감액된 1조 8,337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626억 1,600만원)보다 3.6%, 59억 3,200만원 증액된 1,685억 4,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92억 1,400만원)보다 0.6%, 1억 7,200만원 증액된 293억 8,6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7,522억 7,400만원)보다 9.1%, 1,606억 2,000만원 증액된 1조 9,128억 9,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37억 400만원)보다 6.2%, 20억 8,700만원 증액된 357억 9,1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9,457억 7,100만원)보다 3.1%, 294억 200만원 증액된 9,751억 7,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9〉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5,667,899	6,059,022	△391,123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97,095	719,605	△222,510	‣ 도시철도 부족재원 전출
	교 통 사 업	849,394	1,207,865	△358,471	
	(주차장관리계정)	221,625	219,441	2,184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교통관리계정)	265,649	333,114	△67,465	‣ 주행세 세입 중 유가보조금 보전분 감소
	(교통관리계정)	362,120	655,310	△293,19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재원부족분 전출
	광역교통시설	127,584	19,888	107,696	
	주 택 사 업	610,249	676,260	△66,011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221,625	219,441	2,184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도정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21,625	219,441	2,184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재촉계정)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167,000	237,378	△70,378	‣ 임대주택건설 등 국민주택사업계정 재원 부족분 지원
	도 시 개 발	1,551,372	1,536,086	15,286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7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소 방	939,891	893,165	46,726	
	(지역자원시설세계정)	332,731	312,487	20,244	‣ 지방세 세입중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증액 (소방분 100%)
	(소방안전교부세계정)	24,439	26,592	△2,153	‣ 소방안전교부세 75%(법정전출)
	(소방안전일반지원)	582,721	554,087	28,634	‣ 소방특별회계 재원 부족분 지원
	의료급여기금	952,626	867,986	84,640	‣ 법정시비부담금(국비50%, 시비50%) 증가
	균 형 발 전	128,491	93,236	35,255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지방채 규모 감소에 따른 전출금 증가
	공기업하수도사업	7,194	5,730	1,464	‣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분 증액
	수 도 사 업	4,003	39,201	△35,198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분 감소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표 2-20〉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6,605	43,505	3,100	
공기업하수도사업	수 도 사 업	22,000	21,200	800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
공기업하수도사업	한강수질개선	200	212	△12	‣ 지출잔액 발생
한강수질개선	수 도 사 업	4,054	4,318	△264	‣ 정수비용 지원금 감소
한강수질개선	공기업하수도사업	20,351	17,775	2,576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증가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표 2-21〉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		증감	
	예산안	구성비	최종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766,872	100.0	10,189,422	100.0	△422,550	△4.1
자체수입	1,228,707	12.6	1,077,198	10.6	151,509	14.1
경상적세외수입	649,681		565,468		84,213	14.9
임시적세외수입	94,349		126,817		△32,468	△25.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4,677		384,913		99,764	2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45,117	69.1	7,604,595	74.6	△859,478	△11.3
보전수입등	378,286		605,041		△226,755	△37.5
순세계잉여금	350,375		573,476		△223,101	△38.9
전년도이월금	7,034		7,166		△132	△1.8
융자금원금수입	18,849		24,399		△5,550	△22.7
보조금등반환금	2,028		0		2,028	순증
내부거래	6,366,831		6,999,554		△632,723	△9.0
전입금	5,656,902		6,167,323		△510,421	△8.3
예탁금및예수금	709,929		832231		△122,302	△14.7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0	0.0	680	0.01	△680	△100.0
공채및차입금	1,793,048	18.4	1,506,949	14.8	286,099	19.0
국고보조금 등	0	0.0	0	0.0	0	0.0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4.1% 증액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11.3%)는 감액편성한 것이나 공채 및 차입금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9% 증액편성된 것임

❍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2,860억 9,900만원 증액된 1조 7,930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22〉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2023 (예산안)	2022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계	1,793,048	1,506,949	286,099	1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77,252	1,134,675	142,577	12.6%
매출공채	777,252	810,675	△33,422	△4.1%
모집공채	500,000	324,000	176,000	54.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85,000	121,000	△36,000	△29.8%
주택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395,000	70,000	325,000	464.3%
도시개발특별회계	35,796	181,274	△145,478	△80.3%
정부자금채	25,796	20,274	5,522	27.2%
모집공채	10,000	161,000	△151,000	△93.8%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비용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도시철도매출공채 7,772억 5,200만원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1,000억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1,500억원), 9호선 4단계 건설(4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 2,900억원을 차입하고,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2,100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할 예정으로 금년도(1조 1,346억 7,500만원)보다 1,425억 7,700만원 증액된 1조 2,772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등 광역철도 건설비를 부담하고자 지방채 85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210억원)보다 △360억원 감액된 85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 사업과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고자 일반 매입임대(800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450억원), 청년 매입임대(30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800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6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700억원)보다 3,250억원 증액된 3,950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0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하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257억 9,600만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812억 7,400만원)보다 △1,454억 7,800만원 감액된 357억9,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2,912억 5,400만원)보다 △1,938억 1,900만원 감액된 2조 974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3〉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2023 (예산안)	2022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계	2,097,435	2,291,254	△193,819	△8.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1,060	117,173	33,886	28.9
교통사업특별회계	36,665	183,086	△146,421	△8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662	17,517	△6,855	△39.1
주택사업특별회계	771,413	906,578	△135,164	△14.9
도시개발특별회계	127,713	128,602	△888	△0.7
균형발전특별회계	11,160	33,167	△22,007	△6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2,626	867,985	84,640	9.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382	30,151	2,231	7.4
소방특별회계	3,754	6,995	△3,241	△46.3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되어 있는 바, 결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인잔액(세입-세출)에서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4〉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주1)]	2023 예산안 편성 (순세계잉여금)	2022 결산상잉여금 (예상액)	결산상 잉여금 잔액
합계	372,740	372,740	-
교통사업특별회계	78,349	78,349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313	9,313	-
주택사업특별회계	157,636	157,636	-
도시개발특별회계	74,789	74,78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35	4,135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71	871	-
소방특별회계	25,282	25,282	-
수도사업특별회계	22,365	22,365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⑴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94개 사업, 3조 8,923억원이며, 일반회계(267개)와 기타 특별회계(22개)의 예산사업으로 3조 8,910억 7,900만원, 기금사업(5개)으로 12억 2,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2조 2,963억 1,700만원(128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7,888억 8,400만원(119개 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8,071억 500만원(4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5〉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294	3,892,306	3,828,226	64,080	1.67
예 산	289	3,891,079	3,825,980	65,099	1.70
일 반 회 계	267	3,608,344	3,528,283	80,062	2.27
특 별 회 계	22	282,735	297,697	△14,963	△5.03
기 금	5	1,227	2,247	△1,020	△45.38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7 재구성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39개 실·본부·국에 294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가족정책실 84개 사업(1조 7,101억 8,000만원), 복지정책실 42개 사업(1조 3,214억 900만원), 경제정책실 22개 사업(2,581억 9,600만원), 주택정책실 6개 사업(1,558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8.5%, 3조 4,456억 6,700만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본부·국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6〉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 감 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94개 사업	3,892,306	100.0	3,828,226	100.0	64,080	1.67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주1)]	807,105	20.7	912,540	23.8	△105,435	△11.55
	성별영향평가사업[주2)]	788,884	20.3	616,166	16.1	172,718	28.0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주3)]	2,296,317	59.0	2,299,520	60.1	△3,203	0.14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8 재구성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80)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시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표 2-27〉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총 계	**294**	**3,892,306**	**100**	**3,828,226**	**100**	**64,080**	**1.67**
대변인	-	-	0.000	136	0.004	△136	순감
홍보기획관	3	6,029	0.15	7,563	0.20	△1,534	△20.29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	0.00	407	0.01	△407	순감
여성가족정책실	84	1,710,180	43.94	1,887,644	49.31	△177,464	△9.4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8	52,487	1.35	41,676	1.09	10,812	25.94
비상기획관	2	265	0.007	115	0.00	150	129.95
디지털정책관	4	2,291	0.06	2,947	0.08	△657	△22.28
민생사법경찰단	-	-	0.00	29	0.001	△29	순감
미래청년기획단	9	81,402	2.091	78,665	2.055	2,737	3.48
기획조정실	1	596	0.02	85,398	2.23	△84,802	△99.30
소방재난본부	5	2,679	0.07	2,089	0.05	591	28.28
경제정책실	22	258,196	6.63	187,338	4.89	70,858	37.82
복지정책실	42	1,321,409	33.95	1,041,195	27.20	280,214	26.91
도시교통실	6	88,832	2.28	81,042	2.12	7,790	9.61
기후환경본부	4	7,684	0.20	7,493	0.20	190	2.54
문화본부	12	20,607	0.53	11,771	0.31	8,837	75.07
관광체육국	7	41,096	1.06	51,789	1.35	△10,693	△20.65
평생교육국	8	55,460	1.42	47,713	1.25	7,746	16.24
시민건강국	22	61,616	1.583	67,080	2	△5,465	△8.15
행정국	10	7,388	0.19	18,900	0.49	△11,512	△60.91
재무국	-	-	0.00	19	0.00	△19	순감
미래공간기획관	2	2,191	0.06	2,850	0.07	△659	△23.12
디자인정책관	1	3,468	0.09	4,052	0.11	△584	△14.40
기술심사담당관	1	46	0.00	64	0.00	△18	△28.43
안전총괄실	2	1,132	0.029	2,629	0.069	△1,498	△56.96
주택정책실	6	155,882	4.00	187,103	4.89	△31,221	△16.69
도시계획국	1	120	0.00	153	0.00	△33	△21.47
균형발전본부	3	1,157	0.03	3,878	0.10	△2,720	△70.16
푸른도시여가국	3	1,395	0.04	940	0.02	455	48.37
물순환안전국	1	339	0.01	534	0.01	△195	△36.54
인재개발원	-	-	0.00	122	0.00	△122	순감
도시기반시설본부	-	-	0.00	14	0.00	△14	순감
한강사업본부	2	6,696	0.17	1,293	0.03	5,402	417.71
서울역사박물관	2	617	0.0159	603	0	14	2.30
시립미술관	2	261	0.01	242	0.01	20	8.19
의회사무처	-	-	0.00	1,871	0.05	△1,871	순감
감사위원회	5	591	0.02	812	0.02	△221	△27.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78	0.00	59	0	20	33.64
자치경찰위원회	2	117	0.00	-	0.00	117	순증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10 재구성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바, ’23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25개 정책사업목표, 53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22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41개 실·본부·국에 대해 41개 전략목표, 222개 정책사업목표, 522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3년도에는 정책사업 및 성과계획 지표를 세분화함에 따라 정책사업목표와 지표 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8〉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9	225	430	537	45,388,828	42,535,553	2,853,275
대변인	1	1	2	2	1,660	1,523	138
홍보기획관	1	6	13	12	83,854	93,222	△9,36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2	3	3	2,656	407	2,249
여성가족정책실	1	7	13	20	3,088,722	2,931,787	156,93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9	12	21	324,103	454,052	△129,948
비상기획관	1	1	2	6	2,861	2,998	△137
디지털정책관	1	8	15	19	146,605	133,793	12,813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103	1,090	13
미래청년기획단	1	1	2	3	111,969	104,257	7,712
기획조정실	1	10	18	20	1,048,164	909,809	138,355
소방재난본부	1	9	23	19	1,915,065	1,812,405	102,659
경제정책실	1	11	22	25	679,654	619,518	60,136
복지정책실	1	8	13	25	9,946,784	8,984,793	961,991
도시교통실	1	10	19	22	3,786,994	3,017,775	769,219
기후환경본부	1	8	12	23	518,145	464,303	53,842
문화본부	1	10	13	34	573,337	573,630	△293
관광체육국	1	5	9	18	239,027	238,780	247
평생교육국	1	6	9	14	4,460,417	4,438,654	21,763
시민건강국	1	12	30	26	627,336	701,536	△74,200
행정국	1	9	14	14	4,491,413	4,172,062	319,351
재무국	1	6	12	12	3,418,182	3,196,030	222,153
미래공간기획관	1	3	6	4	14,534	22,614	△8,080
디자인정책관	1	3	5	5	60,646	42,678	17,968
기술심사담당관	1	2	4	4	2,157	1,924	233
안전총괄실	1	10	15	29	1,268,517	1,339,499	△70,983
주택정책실	1	12	24	32	4,382,267	4,114,909	267,358
도시계획국	1	6	6	9	20,091	13,266	6,825
균형발전본부	1	10	17	18	1,669,317	1,532,684	136,633
푸른도시여가국	1	13	18	35	470,362	518,811	△48,449
물순환안전국	1	3	5	8	211,084	159,646	51,438
인재개발원	1	1	3	4	16,794	14,019	2,775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0	6	1,594,638	1,724,927	△130,288
한강사업본부	1	2	6	10	119,180	107,610	11,570
서울역사박물관	1	1	3	5	15,000	14,821	180
시립미술관	1	1	6	4	19,605	14,780	4,825
의회사무처	1	3	24	9	32,973	38,173	△5,200
감사위원회	1	6	11	8	2,336	2,887	△55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509	496	13
자치경찰위원회	1	3	6	5	20,764	19,387	1,377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성과계획서 p.149 재구성

3) 참여예산

❑ 참여예산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음

〈표 2-29〉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 유형

구분	시민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
대상사업	신규사업	신규·계속사업
참여방식	신규사업 제안(공모)	참여자 숙의를 통한 신규사업 제안
사업기간	단년도 사업	단년도·다년도 사업
운영부서	재정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
집행부서	실·본부·국	미래청년기획단, 실·본부·국
정책대상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23년도 예산안부터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시민제안형예산**중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광역단위 사업’은 광역단위 기획제안형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3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개선 현황

<table>
<tr><th colspan="3">기 존 (2022년)</th><th colspan="2">개 선 안 (2023년)</th></tr>
<tr><td colspan="3">시민숙의형</td><td>시민숙의형</td><td>미반영</td></tr>
<tr><td rowspan="4">시민제안형</td><td rowspan="2">광역
단위</td><td>광역제안형</td><td rowspan="4">시민제안형</td><td rowspan="2">광역
단위</td><td rowspan="2">기획제안형
(서울시 운영)</td></tr>
<tr><td>민주주의서울제안형</td></tr>
<tr><td rowspan="2">지역
단위</td><td>구단위계획형</td><td rowspan="2">지역
단위</td><td rowspan="2">자치구 자율 운영</td></tr>
<tr><td>동단위계획형</td></tr>
</table>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과-22956 (’22. 7.15)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구성

❑ ’23년도 참여예산은 총 21개 사업, 127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업유형별로 시민제안형 사업은 56억 600만원(9개 사업), 청년자율예산은 70억 9,400만원(12개 사업)을 편성하고, ①시정제안형 62억 5,700만원(11개 사업), ②자치구제안형 8억 3,700만원(1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1〉 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3년도 예산안		'22년도 본예산		증감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계(①+②)	21	12,700	344	1,077,866	△323	△1,065,166
①시민참여예산[주1]	9	5,606	334	1,069,422	△325	△1,063,816
시민숙의형사업	-	-	137	1,044,775	△137	△1,044,775
시민제안형사업	9	5,606	197	24,647	△188	△19,041
기획제안형(광역단위)	9	5,606	-	-	9	5,606
광역제안형	-	-	14	7,962	△14	△7,962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	-	2	1,010	△2	△1,010
구단위계획형	-	-	181	15,675	△181	△15,675
②청년자율예산[주2]	12	7,094	10	8,444	2	△1,350
시정제안형	11	6,257	9	4,750	2	1,507
자치구제안형	1	837	1	3,694	0	△2,857

※ 자료근거 : 주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215 ('22.11. 7)

주2)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30055 ('22.11. 7)

청년자율예산 명칭변경 : 시정숙의형('22)→시정제안형('23), 자치구숙의형('22)→자치구제안형('23)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102개 세부사업, 3,453억 6,237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2〉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2022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22→2023)	2023년도 예산액
총 계	102	(X180,254) 1,066,668	(X45,764) 345,362	(X169,310) 1,030,885
일반회계	46	(X44,162) 208,660	(X26,343) 97,908	(X28,149) 147,998
특별회계	56	(X136,092) 858,007	(X19,422) 247,454	(X141,160) 882,88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	(X36,753) 246,063	(X578) 11,981	(X65,953) 416,494
교통사업 특별회계	10	(X8,090) 36,180	(X2,858) 18,242	(X-) 24,616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	(X13,000) 105,675	(X3,000) 11,033	(X5,562) 109,003
주택사업 특별회계	5	(X11,310) 59,233	(X10,095) 36,679	(X6,420) 30,287
도시개발 특별회계	29	(X66,909) 403,487	(X2,891) 166,388	(X63,195) 278,537
균형발전 특별회계	4	(X30) 7,369	(X-) 2,680	(X30) 23,951

5)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1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52조 3,507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재정규모**를 50조 4,701억원으로 전망한 바,

-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79조 9,287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35조 9,857억원으로 전망하며, **특별회계**도 총 재정규모를 72조 4,221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14조 4,844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3〉 재정규모(총계규모)[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7	규모	비중	증가율
계	2,523,507	472,052	484,476	504,386	521,403	541,190	504,701	100.0	3.5
일반회계	1,799,287	335,245	342,722	358,800	373,407	389,113	359,857	71.3	3.8
특별회계	724,221	136,807	141,754	145,586	147,997	152,077	144,844	28.7	2.7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2.11), p.16 재구성

○ **세입전망**의 경우, 총 규모 252조 3,507억원, 연평균 규모 50조 4,701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지방세수입**의 경우, 총 규모 135조 8,842억원, 연평균 규모 27조 1,768억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세외수입**의 경우, 총 규모 21조 7,175억원, 연평균 규모 4조 3,435억원으로 연평균 0.1%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이전재원**의 경우, 총 규모는 57조 206억원, 연평균 규모는 11조 4,041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총 규모 37조 7,284억원, 연평균 규모 7조 5,457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34〉 세입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7	규모	비중	증가율
계	2,523,507	472,052	484,476	504,386	521,403	541,190	504,701	100.0	3.5
지방세수입	1,358,842	248,818	259,634	271,140	283,291	295,959	271,768	53.8	4.4
세외수입	217,175	42,208	44,641	44,970	43,044	42,312	43,435	8.6	0.1
이전재원	570,206	104,241	110,708	115,086	117,990	122,181	114,041	22.6	4.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7,284	76,784	69,493	73,191	77,079	80,737	75,457	15.0	1.3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18 재구성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252조 3,507억원, 연평균 규모 50조 4,701억원으로 전망하고

- 회계 간 내부거래(총 30조 3,890억원, 연평균 6조 778억원)를 제외한 **순계규모** 총 221조 9,616억원, 연평균 규모 44조 3,923억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5〉 세출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7	규모	증가율
총 계 규 모	2,523,507	472,052	484,476	504,386	521,403	541,190	504,701	3.5
회계간전출	303,890	57,145	56,041	59,610	63,619	67,475	60,778	4.2
순 계 규 모	2,219,616	414,907	428,434	444,776	457,784	473,715	443,923	3.4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22 재구성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의 경우, 순계규모(221조 9,61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11조 1,734억원)와 재무활동(13조 3,011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총 197조 4,870억원으로,

- ①**사회복지** 86조 5,248억원(39.0%), ②**자치구지원** 36조 7,336(16.5%), ③**교육청지원(법정의무)** 21조 3,969억원(9.6%), ④**도로·교통** 12조 7,790억원(5.8%), ⑤**공원·환경** 12조 3,547억원(5.6%) 등으로 배분 계획한 것임

〈표 2-36〉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주1)]

(단위 : 억원, %)

구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순계규모	2,219,616 (100.0)	414,907 (100.0)	428,434 (100.0)	444,776 (100.0)	457,784 (100.0)	473,715 (100.0)
사 업 비	1,974,870 (89)	365,984 (88.2)	379,635 (88.6)	393,427 (88.5)	408,787 (89.3)	427,037 (90.1)
사회복지	865,248 (39)	160,575 (38.7)	164,445 (38.4)	169,387 (38.1)	179,175 (39.1)	191,666 (40.5)
도로·교통	127,790 (5.8)	25,810 (6.2)	26,026 (6.1)	26,993 (6.1)	24,711 (5.4)	24,250 (5.1)
공원·환경	123,547 (5.6)	21,825 (5.3)	23,974 (5.6)	25,272 (5.7)	25,970 (5.7)	26,506 (5.6)
도시안전관리	97,511 (4.4)	17,126 (4.1)	18,688 (4.4)	19,834 (4.5)	20,876 (4.6)	20,987 (4.4)
문화관광	44,702 (2.0)	8,103 (2.0)	8,674 (2.0)	8,783 (2.0)	9,296 (2.0)	9,846 (2.1)
산업경제	48,315 (2.2)	9,709 (2.3)	9,846 (2.3)	9,987 (2.2)	9,483 (2.1)	9,290 (2.0)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8,217 (1.3)	3,593 (0.9)	5,633 (1.3)	5,981 (1.3)	6,821 (1.5)	6,189 (1.3)
일반행정	51,429 (2.3)	10,001 (2.4)	10,051 (2.3)	10,133 (2.3)	10,398 (2.3)	10,846 (2.3)
자치구지원	367,336 (16.5)	67,735 (16.3)	69,970 (16.3)	73,141 (16.4)	76,494 (16.7)	79,996 (16.9)
교육청지원(법정의무)	213,969 (9.6)	39,660 (9.6)	41,085 (9.6)	42,678 (9.6)	44,338 (9.7)	46,208 (9.8)
예 비 비	6,806 (0.3)	1,847 (0.4)	1,243 (0.3)	1,238 (0.3)	1,225 (0.3)	1,253 (0.3)
행정운영경비	111,734 (5.0)	21,269 (5.1)	21,997 (5.1)	22,436 (5.0)	22,860 (5.0)	23,172 (4.9)
재 무 활 동	133,011 (6.0)	27,654 (6.7)	26,803 (6.3)	28,912 (6.5)	26,136 (5.7)	23,506 (5.0)

※ ( ) 안의 수치는 전체 순계규모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36 재구성

○ 관련 법령에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 수립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지난 '22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의견수렴의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8개 분야, 총 4문항에 대해 투표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총 1,47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89명이 관련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민주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위하여 '22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시민 의견 표본수(1,477명)가 과소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기후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 지난 ’21년 9월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2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22년도부터 기후예산제를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125개 사업(3,725억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기후예산제)’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21년 6월에 의결되었으나

○ 관련 법령 개정안은 ’21년 7월에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어 현재 예산안·결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 서울시는 관련 조례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23년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22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예산 적용대상을 전체 실·본부·국의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207개 사업(3조 1,068억 7,600만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사업 3조 764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304억 6,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7〉 기후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제출안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07	3,106,876	122	328,076	2,778,800	847.0
예산	199	3,076,412	122	328,076	2,748,336	837.7
일반회계	77	529,547	115	283,882	245,665	86.5
기타특별회계	122	2,546,864	7	44,194	2,502,671	5,663.0
기금	8	30,464	-	-	30,464	순증

※ 행정안전부의 기준 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제외(’22년도 3개 사업, ’23년도 2개 사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 기후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감축사업 1조 4,711억 9,700만원(85개 사업), 배출사업 1조 2,515억 7,200만원(95개 사업), 혼합사업 3,841억 700만원(2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기후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사업	2023년도 제출안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07	3,106,876	100.0	122	328,075	100.0	2,778,800	847.0
감축사업	85	1,471,197	47.3	120	326,065	99.4	1,145,132	351.2
배출사업	95	1,251,572	40.3	2	2,010	0.6	1,249,561	61,154.9
혼합사업	27	384,107	12.4	-	-	-	384,107	순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 기후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20개 실·본부·국에 20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도시교통실 28개 사업(8,672억 7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7개 사업(6,333억 2,200만원), 주택정책실 23개 사업(3,198억 900만원), 기후환경본부 36개 사업(3,153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기후예산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기후예산서 작성 및 평가를 위한 대상·범위 확정, 성과지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량 계량방법 등 다수의 선결 사안이 있어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39〉 실·본부·국별 기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명	2023년도 제출안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07	3,106,877	100.0	122	328,076	100	2,778,802	847.0
디자인정책관	1	1,578	0.1	-	-	-	1,578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7	59,773	1.9	-	-	-	59,773	순증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	118,175	3.8	-	-	-	118,175	순증
미래청년기획단	1	15,300	0.5	-	-	-	15,300	순증
소방재난본부	3	43,140	1.4	-	-	-	43,140	순증
경제정책실	7	63,242	2.0	-	-	-	63,242	순증
복지정책실	11	66,004	2.1	-	-	-	66,004	순증
도시교통실	28	867,207	27.9	-	-	-	867,207	순증
문화본부	15	95,074	3.1	-	-	-	95,074	순증
기후환경본부	36	315,358	10.1	72	252,068	76.8	63,290	25.1
평생교육국	3	14,235	0.4	-	-	-	14,235	순증
관광체육국	4	17,521	0.6	-	-	-	17,521	순증
시민건강국	3	16,954	0.5	-	-	-	16,954	순증
안전총괄실	20	283,574	9.1	-	-	-	283,574	순증
주택정책실	23	319,809	10.3	-	-	-	319,809	순증
균형발전본부	3	58,112	1.9	-	-	-	58,112	순증
푸른도시여가국	24	85,801	2.8	42	62,328	19.0	23,473	37.7
물순환안전국	2	8,200	0.3	8	13,680	4.2	△5,479	△40.1
도시기반시설본부	7	633,322	20.4	-	-	-	633,322	순증
한강사업본부	3	24,498	0.8	-	-	-	24,498	순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3~2027)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1년 4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 또한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 수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3~2027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건 인쇄하여 제출한 바,

○ 소관부서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명시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지난 ’21년 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 자산관리과가 이미 지난 7월 6일,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회 자료」에 “매년 5회계연도 이상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으로 정하여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이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⑵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별설명서 p.19)

○ 동 사업은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원이 포함된 5,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2,900만원은 약자동행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1,600만원)과 회의 운영비(1,3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4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29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
- 본위원회 200,000원*30명*2회	12	
- 분과위원회 200,000원*5명*4회	4	
◦ 회의 운영비 및 자료 제작 등		13
- 본위원회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4,000,000원*2회	8	
- 분과회의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1,300,000원*4회	5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약자동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2,900만원)는 근거 조례가 마련된 이후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가칭)「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23년 2월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先 예산 편성, 後 근거 조례 마련'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소요예산 승인여부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업 추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한 1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1억 200만원)와 **포상금**(3,400만원)은 '22년 8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 추진 우수기관을 포상하고자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46
사무관리비	102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 등	58
◦ 자치구 및 관련 기관 협력 모델 발굴 추진	44
포상금	34
◦ 우수기관 포상	3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약자와의 동행사업 의제 발굴	10

○ 그러나 **포상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②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④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지출계획하는 **포상금**의 경우,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의 성격일 수밖에 없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지난 8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23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및 목표를 “약자와의 동행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가 미비되어 있어 조례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별설명서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인 (가칭)「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23년 2월중 제출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어 동 소요예산이 편성요청한 **포상금**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의결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8)

○ 동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금**(11억 8,80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3억 1,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499
민간위탁금		1,188
◦ 인건비		706
- 센터장	42	
- 팀장급	33	
- 매니저	343	
- 행정인력	46	
- 제수당	239	
◦ 사업비		351
- 찾아가는 발달지원 서비스(조기 발견 및 진단)	137	
- 가정양육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조기 발견 및 진단)	33	
- 영유아 가구 맞춤 검사·상담 서비스(야간·휴일)	100	
- 애착, 놀이 단체 치료 등	80	
◦ 관리운영비		130
- 출장여비	21	
- 상담활용 교재교구	18	
- 자산취득비	**34**	
- 자문비	9	
- 교육훈련비	3	
- 관리비	1	
- 일반 수용비	28	
- 특근매식비 등	14	
민간위탁사업비		310
◦ 센터 수선비		310

○ **민간위탁금**중 편성요청된 자산취득비(3,400만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구입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교육 지원**
(사업별설명서 p.503)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편성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보호종료 전 1년 이내 200명 내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법률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 금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신규 위탁사무의 경우 예산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특히, 관련 조례의 ①항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지난 ’20년 12월, 관련 법령이 가결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중 위·수탁사무에 포함된 사무로써 신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일뿐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지난 '20년 12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3년도 예산안중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 편성요청 되는 사안까지 미리 예상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1월 1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일체 표시하지 않았으나, 11월 22일 오류기재된 내역을 수정한 바, 예산안 제출이후 20여일이 경과되도록 사업부서가 오류기재된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888)

○ 동 사업은 1인가구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주는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와 '퇴원 후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표 2-4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1,811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811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퇴원한 1인가구에게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23년도 예산안의 제출시점('22.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별설명서 p.169)

○ 동 사업은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명소상권 강화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4억 6,100만원이 포함된 75억 3,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4〉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461**
① 명소상권 강화지원 - 200,000,000원×5개소	1,000
②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 200,000원×11명×15회	33
③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홍보 - 150,000,000원	150
④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108,100,000원	108
⑤ 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조정 가이드 컨설팅 용역 - 70,000,000원	70
⑥ 로컬크리에이터 후속 컨설팅 - 100,000,000원	100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①명소상권 강화지원명소상권 강화지원(10억원), ②지역상권위원회 운영(3,300만원), ③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홍보(1억 5,000만원)의 경우,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④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1억 800만원), ⑤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조정 가이드 컨설팅 용역(7,000만원), ⑥로컬크리에이터 후속 컨설팅(1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한 예산과목에 해당되나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편성 및 지출사례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하여 회신한 사례가 있어

- 동 소요예산의 **사무관리비**중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을 단순용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연구용역과 밀접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디지털정책관

❑ **서울서베이** (사업별설명서 p.89)

○ 동 사업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00개 지표) 조사 및 분석, 패널기반 서울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21억 4,400만원)로 편성하고, 서울 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1억 5,100만원)도 편성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21억 4,400만원은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①서울서베이 현장조사(19억 6,000만원), ②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1억 8,4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는 일반용역을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사무관리비** 편성을 통해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출과목의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지난 '21년 9월, 행정안전부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기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중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하여 회신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회신결과를 고려하면, 민간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 계획한 ①서울서베이 현장조사(19억 6,000만원), ②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1억 8,400만원)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과는 용역의 내용이나 용도가 구분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하는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일 사유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예산편성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된 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2,296
사무관리비		1,960
◦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58
- 노무비	164	
- 유인물비	14	
- 조사경비(면접원 수당)	668	
- 자료처리비(입력, 검증 등)	78	
- 회의비	4	
- 답례품 등	734	
- 교통통신비	14	
- 일반관리비	50	
- 이윤	51	
- 부가가치세	178	
◦ 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		184
- 노무비	99	
- 유인물비	53	
- 재료비	2	
- 교통통신비	2	
- 조사비 등	11	
- 회의비	15	
공공운영비		151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151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109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상용SW 유지관리	42	

❑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8)

○ 동 사업은 스마트 불편신고 앱(AOS, IOS)과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포함한 1억 5,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59
사무관리비	1
○ 평가위원 자문 수당 200,000원*8명*1회	1
공공운영비	113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유지관리 113,750,000원	113
연구용역비	44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44,000,000원	44

○ 관련 법령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로 편성요청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바, 지난 '22년 9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 금년도 예산안중 주택정책실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및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추

진의 소요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중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소요예산 4,4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최근 3년간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2021년도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52
2022년도	서울 청년포탈(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전산개발비	67
2023년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전산개발비	92
2023년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111
2023년도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64
2023년도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연구용역비	44

5)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요식업 분야 창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임

〈표 2-4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541
○ 임차료 5,280,000원*12개월	63
○ 전문가 회의수당 등 200,000원*8명*5회	8
○ 일반용역비 470,593,000원*1식	470

○ 산출내역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중 일반용역비(4억 7,000만원)를 편성하고, 청년 요식업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용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 등 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49〉 일반용역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541
일 반 용 역 비	470
○ 노무비	155
- 센터장	63
- 프로그램 매니저	37
- 운영관리 직원 1	16
- 운영관리 직원 2	7
- 공간관리 직원	22
- 공유주방 직원	9
○ 경비	214
- 보험료	16
- 운영비	25
- 창업교육, 지원	**170**
- 홍보	3
○ 이윤, 부가세 등	100

❍ 사업부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만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 지원목적에 따라 금융, 기술, 창업, 인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화, 창업공간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①신설하거나 ②기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청년 요식업 창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창업자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사례에 포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협의를 완료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는 “(미래청년기획단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이행을 촉구하려면 서울시 전체 창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 사업부서의 의견 또한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가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사업의 중복성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료되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한 모든 대상사업과 개별 사업에 대한 이행여부가 전수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기획조정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87)

○ 동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공립대학운영비 57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시립대는 서울시의 사업소로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15년 3월,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16년도부터 서울시는 **공립대학운영비**를 편성하여 시립대의 대학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 '23년도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875억 3,300만원)보다 △298억 6,800만원 감액된 576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이 금년도보다 △269억 3,600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난 '12년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학기당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등록금 수입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립대학운영비**를 편성하여 대학회계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시립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매년 증감폭은 있으나, 대학회계 시행 이전부터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회계연도의 경우, 미래융합관 건립이라는 증액요인이 있지만, 최종예산 기준 87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공립대학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2-50〉 시립대 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
2012	48,625	48,728	103
2013	44,150	44,150	0
2014	43,986	43,986	0
2015주1)	76,659	40,463	△36,195
2016주2)	49,889	49,889	0
2017	73,566	73,566	0

년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
2018	58,341	61,887	3,546
2019	53,616	53,616	0
2020	66,133	66,433	300
2021	65,819	66,819	1,000
2022	84,411	87,533	3,122
2023	57,655	-	-

※ 주1) 서울시 실·본부·국 조직의 일부인 사업소로서 세부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2) 대학회계 시행에 따른 공립대학운영비로 단일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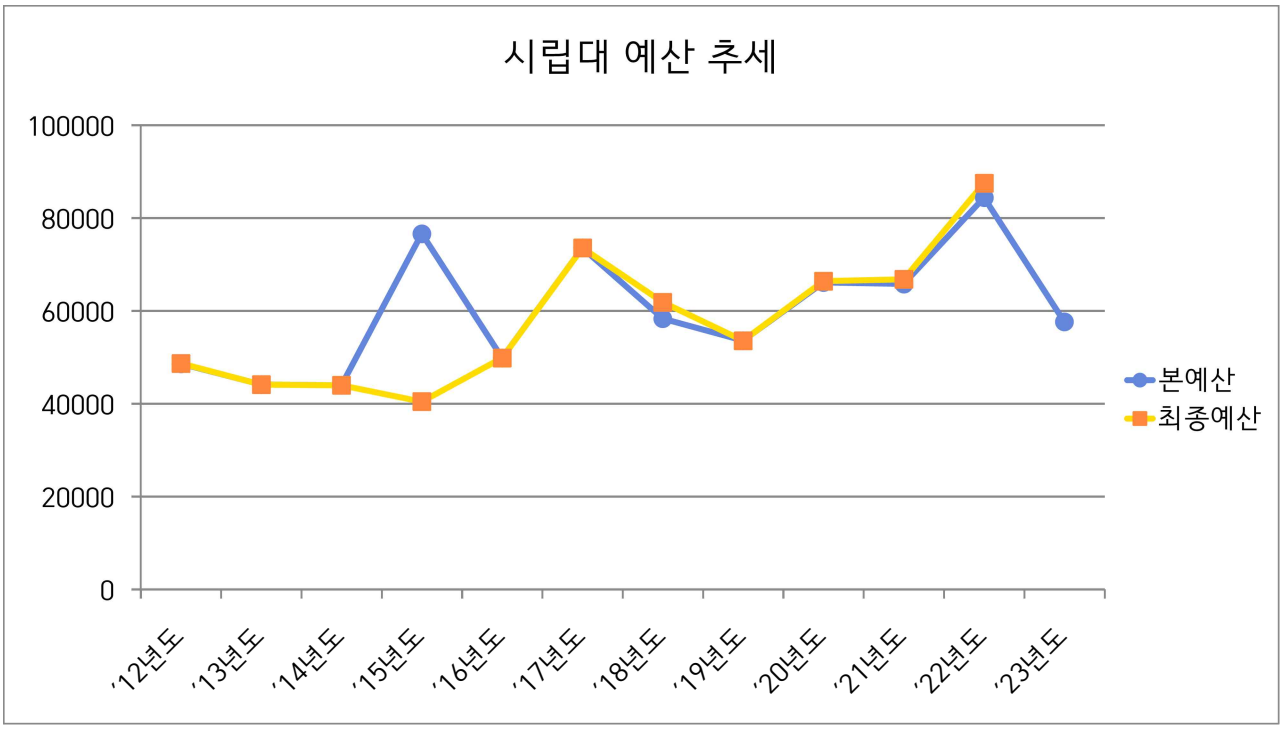

- 더욱이 현행 관련 법령에는 국립대학(공립대학 포함)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시립대의 경우, 489억원이 투입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시에도 발전기금 35억원만 동문회비 등의 자체재원으로 내부 시설을 조성한 바 있고, 미래융합관 등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제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별설명서 p.90)

○ 동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①인구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구변화대응 업무 추진(8,000만원)과 ②도시경쟁력 포럼 운영 등(2,000만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1〉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00**
◦ 인구변화대응 업무 추진	80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회의 등 운영	10
- 인구영향평가 추진	**70**
◦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20
- 도시경쟁력 평가자료 구입 및 분석	10
- 도시경쟁력포럼 운영 및 정책 자문	10

○ **인구영향평가 추진**의 경우, 서울시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열거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과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단순히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연구용역성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제출된 **사무관리비**중 관련 예산(7,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중 용역비용(7,0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5)

○ 동 사업은 '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84
사무관리비	56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15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1
◦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5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	25
기타보상금	120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12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

○ '23년도부터 시행 예정된 관련법령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법령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기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답례품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한도(100분의 30)내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기타보상금**(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하나 해당 답례품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예산은 ①조례 제정, ②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등의 절차가 이행된 이후 기금재원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 · 운용** (사업별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공공토지자원 DB 운용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3〉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00**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 · 운용 방안 구상 용역	100
- DB 운용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제공 방안 마련	1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 에 명시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구용역성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과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업과 같은 연구용역의 경우, 실제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내용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편의가 우선시된 ‘우회편성’ 사례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이행에 한계가 있는 바,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된 용역비용(1억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업별설명서 p.243)

○ 동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6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중 5억 4,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54〉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544,400**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8명×6회	7,200
②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서면 심사수당 - 100,000원×8명×6회	4,800
③ 만족도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 150,000원×10명×1회	1,500
④ 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회 참석수당 - 150,000원×2명×3회	900
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202,000,000원	202,000
⑥ 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용역 - 224,000,000원	224,000
⑦ 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 용역 - 44,000,000원	44,000
⑧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 20,000,000원×3개소	60,000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①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720만원), ②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서면심사수당(480만원), ③만족도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150만원), ④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회 참석수당(90만원)의 경우,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사업내용중 ⑤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2억 200만원), ⑥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용역(2억 2,400만원), ⑦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 용역(4,400만원), ⑧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6,000만원)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회신한 바 있어,

-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까지 무인경비나 전기안전관리대행 등과 유사한 범주의 용역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되나 단순용역보다는 연구용역과 밀접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소방재난본부

❑ 소방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p.64)

○ 동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322억 3,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중 '**배상금등**'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22년 6월,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100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32,238
사무관리비	4,025
◦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3,701
◦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4
◦ 소방공무원 체육행사비	297
◦ 관사 임차료	12
공공운영비	1,188
◦ 관사 난방료(도시가스)	1,188
특정업무경비	18,135
◦ 방호활동비	14,930
◦ 대민활동비	39
◦ 경호활동비	59
◦ 구조구급활동비	2,892
◦ 특사경수사활동비	213
배상금등	10,077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전출, 퇴직자)	10,077

○ 지난 6월 확정된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해자, 미제소자 등(5,882명)에게 지급이 필요한 수당은 519억원으로 그중 301억원은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예산안에는 미지급 수당(퇴직 및 전출자) 100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56〉 예산안중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출과목	소요예산	2023 예산안	2022 제2회 추경	부족분	비고
		(A)	(B)		(A - B)	
인력운영비	보수	35,055	-	21,793	13,262[주1)]	재직자
소방활동지원	배상금등	16,806	10,077	8,282	△1,553[주2)]	퇴직, 전출자 등

※ 주1) '22년도 인력운영비(보수) 집행 잔액으로 지급 예정
주2) 소송중인 퇴직 및 전출자의 배상금 일부 편성

○ 아울러 일부 소송(공동근무 수당분)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항소('22. 6. 9)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나, 타 시·도의 유사 사례가 대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105억원)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7〉 소송자에 대한 수당 지급 소요액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022.11.30)

구분	소송자	
	인원	금액
계	1,248	10,467
재직자	949	7,961
퇴직자	254	2,302
전출자	45	204

8) 경제정책실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89)
- ■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p.93)
-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9)
- ■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사업별설명서 p.228)
-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별설명서 p.403)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드론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5개 계속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해당되나, **사무관리비**는 지자체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 바,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라고 회신한 바 있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됨

❍ **드론산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 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와 지난 ’20년 12월 수립된 방침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드론 아카데미 운영업체를 공모하여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 소독처럼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의 범주와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 **로봇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 운영업체를 공모하여 '23년 2월부터 3월까지 업체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 용역 추진계획」에도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단순히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8〉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드론산업활성화	**500**
◦ 드론 아카데미 운영 용역 인건비 (2,000,000원×6명×5월)	60
◦ 드론 아카데미 교육장비비	198
◦ 드론 아카데미 강사료 (350,000원×25일×4회×2명)	70
◦ 드론 아카데미 행사 및 홍보비	99
◦ 드론 아카데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	71
◦ 드론 아카데미 제안서 평가 및 자문 수당 (200,000원×10명×1회)	2
로봇아카데미운영	**700**
◦ 실습용 로봇장비 임차 (2,000,000원×8종×8개월)	128
◦ 용역인건비 (3,500,000원×4명×10월)	140
◦ 강사비 (2,000,000원×8명×10월)	160
◦ 보조강사비 (600,000원×4명×10월)	24
◦ 교육개발비 및 재료비	47
◦ 시설관리운영비	40
◦ 교육환경 구축비	20
◦ 회의비, 교육지원비 등	20
◦ 홍보비	15
◦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102
◦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자문 등 (200,000원×10명×2회)	4

❍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의 경우,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 용역사 공모 및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계획」에도 ㈜인크루트 등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료되며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이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사무관리비**의 직접지출이 아닌 위탁이나 대행에 유사한 형태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사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2-59〉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700**
◦ 상담컨설턴트 인건비(8명)	308
◦ 구직자 기업탐방·직무체험	250
◦ 매칭 프로그램(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42
◦ 일자리박람회 현장상담실 운영 등	100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700**
◦ 해외교류패션쇼(여성복, 남성복)	350
- 인건비 (30,000,000원×2)	60
- 무대연출 및 조성비 (100,000,000원×2)	200
- 패션쇼 기획 운영 (30,000,000원×2)	60
- 일반 관리비 등 (15,000,000원×2)	30
◦ 서울 대표 브랜드 글로벌 육성지원	350
- 인건비	25
- 전시관 연출 및 조성비	180
- B2B 세일즈 운영	100
- 현장 운영 관리	30
- 일반 관리비 등	15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소요예산 16억 100만원중 **사무관리비** 13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이나,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중 “제안서 평가 회의수당”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9.6%, 13억 2,100만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목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위탁이나 대행에 가까운 사업형태로서 이른바 ‘유사 용역’에 **사무관리비**를 계속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된 편성사례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0〉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326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1,321
- 인건비	231
- 운영비	823
◦ 제안서 평가 회의수당 등	5

❍ 다만, **드론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5개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사업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으로 행정안전부도 이미 지난 ’21년 7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예시한 바,

-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이른바 ‘유사 용역’에 대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의미를 도외시하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9) 복지정책실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70)

○ 동 사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9**
○ 인건비	207
- (법무) 변호사	63
- (일반) 직원	144
○ 운영비	17
- 사무기기(PC, 복합기 등) 물품구입	**15**
- 공과금 등 간접비용	2
○ 사업비	135
- 전문 심리상담 사업(대상자 본인 등)	54
-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20
- 오픈 클래스(강연)	16
- 보훈선양 콘텐츠 제작(영상, 리플릿 등)	20
- 보훈선양 토론회, 포럼, 기념식 등 개최	20
- 사례집, 안내서 발간 등	5

○ 지난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는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지원하고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8조는 상담센터의 운영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상담센터 운영을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상담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로부터 대행사무를 수탁하게 될 서울시복재재단의 설립근거인 관련 법령 제4조 “재단의 사업”에는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현행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안의 경우, 위탁사무를 출연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관련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명시한 관련 조례에는 동 위탁사무를 수행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자회사 규정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아닌 포괄적인 규정만 있는 상태’로 사료되는 바,

- 관련 법령에 비추어 현행 관련 조례 제4조 “재단의 사무”만으로 수탁가능한 사안인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단의 사무”를 구체화시킨 이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 (사업별설명서 p.82)
-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 (사업별설명서 p.86)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은 사회복지사업보조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①인건비(4,465만원), ②운영비 및 사업비(9,000만원), ③대체인력 인건비(3억 9,600만원)를 편성하고,

○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의 경우에는 편성요청된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원에 대해 ①심리지원 상담 및 의료비지원(1억 5,100만원), ②홍보비(300만원), ③회의비(600만원), ④전담인력 인건비(3,700만원), ⑤공공요금, 여비 등 운영비(2,239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 운영비성 경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적정편성 되어야 할 것인 바,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부득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영비성 경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복지정책실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등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실·본부·국이 통일된 예산과목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도시교통실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 (사업별설명서 p.72)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은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을 검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표 2-6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250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25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용역의 과업 주요 내용이 “독자적 서버구축, 분석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정산·배분 시스템 검증”이고, 지난 ’20년도의 경우, 해당 용역입찰 공고 시, ‘학술, 연구용역’ 코드를 등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어 동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관련 법령 등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계약의 방법, 제한사항 등을 법령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부서는 해당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이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라 하나, 입찰공고 할 때에는 ‘학술, 연구용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동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연구용역성 경비임을 인증하는 사례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현시점에 비추어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사무관리비** 편성사례가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한 사례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기후환경본부

❑ 제로웨이스트 홍보관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0)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동구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내에 제로웨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240
◦ 전시 공간 기획 및 조성(철거비 포함) - 100,000,000원×1식	100
◦ 체험프로그램 운영 - 30,000,000원×1식	30
◦ 운영 인건비(9월) - 20,500,000원×2인	41
◦ 홍보비 - 30,000,000원×1식	30
◦ 이윤, 일반운영비, 부가세 등 - 39,000,000원×1식	39

○ 사업별설명서에는 33m^2 규모의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인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제로웨이스트 홍보관 조성 및 운영하는 용역의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등의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문화본부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사업별설명서 p.72)
-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사업별설명서 p.77)
-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p.209)

○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로써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임

〈표 2-6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563**
◦ 사무관리비	100
- 교통유발부담금 1회	9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대행용역	554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282**
◦ 사무관리비	282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대행용역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3,196**
◦ 사무관리비	3,196
- 전문가 자문수당	10
- 교통유발부담금	10
- 노들섬 운영대행용역	3,046
- 노들섬 재구조화 기본구상안 3D모델링 작업	10
- 문화예술중심 디자인도시 홍보	120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3년도부터 "시직영(운영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 민간위탁 수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1년 단위로 새로운 전문운영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시직영 운영대행용역'으로 기존 위탁운영과 대행운영의 차이점이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 물론 회계적 측면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의 교부 및 정산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예산의 통제적 측면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위탁운영성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스스로 회계적 사각지대를 만드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위탁운영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의 경우, '22년 4월, 기존 민간위탁사무에서 시직영으로 전환하고, '23년도 예산안중 **사무관리비**로 "**노들섬 운영대행용역**" 30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30억원이 넘는 대행용역이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 명시한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적정규모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상 고유사업' 에 대해 위탁금 추가 편성**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별설명서 p.176)

■ **연극창작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285)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3)

○ 동 사업은 소요예산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단체간 예술단 교류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연극창작시설 운영**은 성북구 소재 연극창작지원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프로그램 및 공연기획 등을 '23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23년 6월 개관예정인 강북구 소재 동북권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공연(연극, 뮤지컬) 중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23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 **출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심도있게 심사하는 절차가 있으나,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아닌 위탁운영비성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편성사례라 할 것인 바,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부득이한 특수사례에 대해 단기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연극창작시설 운영**과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의 경우, 해당 시설을 '23년도에 한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닌 '23년 5~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출연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수 년간 장기간에 걸쳐 출연기관에 위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세종문화회관의 고유사업 범위내로 사료됨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내용인지, **출연금**을 증액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내용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실태 및 조성 수요조사** (사업별설명서 p.727)

○ 동 사업은 문화시설 분포, 수급실태, 조성 수요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5〉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00
◦ 용역비	100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용역의 과업 주요 내용이 ①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②서울시 공공기여 현황 및 계획조사, ③문화시설 수급 실태 분석·진단 및 문화소비 행태 변화·예측, ④지역별 적정 문화시설 도출·제안으로 확인되는 바, 동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 또한 향후 서울시 문화시설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연구용역비**의 경우,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현시점에 비추어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동 **사무관리비** 편성사례가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한 사례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관광체육국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사업별설명서 p.79)

■ **서울 도보 관광 코스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12)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은 **사무관리비** 4억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으로 ①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1억 3,600만원)과 ②프리미엄관광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2억 9000만원)를 계획하는 것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에 계획한 사업내용과 '22년도에 추진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22년도의 경우, **사무관리비**(3억 3,500만원)중 영문번역(5,000만원)을 제외하고, 대행용역비로 지출원인행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3년도에 계획한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대행용역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등과 같은 경상적 활동에 지출되어야 하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편성사례로 확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일한 맥락에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서울 도보 관광 코스 활성화** 사업의 경우, ①온라인 도슨트 도보코스 개발(9,000만원), ②도보코스 체험 콘텐츠 제작(6,000만원), ③서울 뷰티로드 개발 및 홍보(1억원)를 계획한 것으로 대행용역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목이나, 사실상 대행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된 편성사례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과목의 부적절 편성**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89)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p.112)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은 소요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소재 여행업체에 대해 ①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추진, ②관광콘텐츠 컨설팅 지원, ③여행업체 맞춤형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부서 또한 동 사업의 지원 검토대상이 되는 업체현황을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로 회신하고 있는 바,

-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는 민간사업체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예산안대로 예산과목을 지출계획할 경우,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로 직접지원할 수 없고,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나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교부한 이후 해당 기관이 민간여행사로 다시 교부하는 우회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 단계에서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제출된 세출과목(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을 수정하게 되면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되어 세출과목을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경우에는 ①해외 핵심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홍보와 ②해외 관광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대상을 해외 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19개국 39개사)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부서 또한 동 사업의 지원 검토대상이 되는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현황을 “19개국 39개 협력 핵심여행사”로 회신한 바,

- 편성요청한 예산과목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해외 핵심여행사 등이 공기관일 수는 없어 서울시가 해외 핵심여행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중 추진일정에는 ’23년 2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한국관광공사나 서울관광재단 등의 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핵심여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은 편성요청된 예산과목과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대상, 그리고 추진일정에 명시된 추진세부내용(대행기관 선정)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내용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8)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1)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4)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58)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61)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별설명서 p.6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67)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법정전출금과 관련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을 합하여 총 3조 9,863억 4,0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66〉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3년도 예산안	'22년도 본예산	'22년도 최종예산	증감 (최종예산대비)
합계		3,986,340	3,911,817	4,734,223	△747,883
법정전출금	소계	3,958,761	3,859,833	4,682,239	△723,478
	지방세전출	1,761,108	1,626,814	2,166,628	△405,520
	담배소비세 전출	261,992	257,188	281,201	△19,209
	지방교육세 전출	1,926,002	1,966,277	2,224,856	△298,854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전출	7,629	7,516	7,516	112
	지방이양사무 지원	43	43	43	0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1,987	1,995	1,995	△7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 (조례상 전출금)	27,579	51,984	51,984	△24,405

○ 서울시가 편성한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 등 6개 사업, 3조 9,587억 6,100만원으로

- **지방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1,666억 2,800만원)보다 △4,055억 2,000만원 감소한 1조 7,611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이는 서울시의 ’23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이 ’22년도 본예산(16조 2,681억원)보다 1조 3,907억원 증가한 18조 2,713억원으로 ’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보통세 추가세수분이 반영됨에 따른 것인 바,

  ■ 지방세 전출금은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12조 8,915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을 이전받는 기관이 교육재정운영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전출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2,812억 100만원)보다 △192억 900만원 감소한 2,619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2,248억 5,600만원)보다 △2,988억 5,400만원 감소한 1조 9,260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은 지난 ’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의 4.5%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25%, 자치구 2.25%)가 부담하고 있는 바,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 경비 3,390억 6,800만원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76억 2,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61)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 이내)을 포함한 비법정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초,중·고 입학준비금 172억 6,800만원, ②대안교육기관 지원 70억원 등 총 275억 7,900만원(보통세의 0.15% 수준)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진초 외 2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경비중 1/2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19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이양사무 지원**은 지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한 지방이양사무지원 예산을 '22년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지원분 4,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7〉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내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	2023 예산(안) ⓑ	증 감 ⓑ-ⓐ	추진목표
계		51,984	27,579	△24,405	
일반교육경비		**46,786**	**27,304**	**△19,482**	
1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600	0	80개교
2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660	0	1개원
3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1,000	0	50개교
4	입학준비금	17,080	17,268	188	213천명
5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	776	순증	330개교
6	대안교육기관 지원	-	7,000	순증	70개소
	학교체육관 건립	2,400	0	△2,400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7,300	0	△7,300	
	학교CCTV 교체 지원	1,535	0	△1,535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46	0	△1,346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1,080	0	△1,080	
	미래형 교실 구축	940	0	△940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2,000	0	△2,000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0	△700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4,000	0	△4,000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100	0	△2,100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1,125	0	△1,125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	500	0	△500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2,000	0	△2,000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420	0	△420	
특별교육경비		5,198	275	△4,923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313)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2,033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2,183억 600만원)보다 △149억 5,600만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인상, 과일급식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급식인원을 당초 825,122명에서 809,759명으로 △15,363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대상인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68〉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일, 원)

학교급별	변동내역('22년도→'23년도)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단가		
	'23	'22	증감	'23	'22	증감	'23	'22	증감
공립초	371,237	373,782	△2,545	192	192	-	3,778	3,948	△170
국사립초	23,054	22,400	654	192	192	-	5,466	5,151	315
공립중	154,475	213,073	△5,423	180	173	7	4,153	5,911	△1,758
국사립중	53,175			180	173	7	6,200	5,911	289
공립고	68,646	211,423	△7,891	173	173	-	4,343	6,091	△1,748
국사립고	134,886			173	173	-	6,519	6,091	428
공립특수	1,644	4,444	△158	192	192	-	4,369	5,696	△1,327
국사립특수	2,642			192	192	-	6,057	5,696	361

※ ① 2023년부터 공립학교 급식단가의 인건비는 지자체와 재원 분담하는 급식보조인력 인건비만 계상(공립 각급학교 조리(실무)사 인건비 전액 교특회계로 지원)
② 급식인원 '22년도 827,144명 '23년도 809,759명총 △17,385명 감소
③ 자료근거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313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330)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238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65,378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794억 1,000만원중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과 동일한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30%에 해당하는 238억 2,300만원을 편성한 것인 바,

- 전년대비 13.5%, 28억 5,200만원 증가한 것은 원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사업기간이 확대(10개월→12개월)됨에 따라 지원일수도 증가하여 소요예산 증액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됨

〈표 2-69〉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개원, 명, 일, 백만원)

구 분	유치원수	유 아 수	기준일수	급 식 비 단 가 (원)				소 요 액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합 계	
합 계	767	65,378	-	-	-	-	-	23,823
공 립	296	16,271	182	3,165	162	667	3,994	3,547
사 립	471	49,107	217	3,165	162	3,018	6,345	20,275

※ 공립유치원 △ 2,259명 감소, 4일 증가, 283원 증가
※ 사립유치원 △ 4,239명 감소, 23일 증가(지원기간 2개월 증가), 773원 증가
※ 자료근거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331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p.70)

■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별설명서 p.74)

■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p.77)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83)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소요예산(119억 8,1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117억 1,100만원), ②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5,000만원), ③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2,000만원), ④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9,000만원)에 지출계획한 것으로

〈표 2-70〉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1,971
◦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11,711
◦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50
◦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	20
◦ 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90

- ②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5,000만원), ③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2,000만원), ④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9,000만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가능한 사업내용으로 사료되나

- 117억 1,100만원을 지출계획한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도록 정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에 준하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경우, 소요예산의 사업방식을 고려하면,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소규모 용역과는 차이가 있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은 **사무관리비** 3억원을 편성하여 ①인문·과학·사회문화 등 소양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7,500만원), ②자기계발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7,500만원), ③학습법·진학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5,000만원)에 지출계획한 것으로

〈표 2-7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300**
◦ 인문·과학·사회문화 등 소양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5개	75
◦ 자기계발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5개	75
◦ 학습법·진학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10개	150

❍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여 ①진로·진학 맞춤형 서비스 지원(1억원), ②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1억원)에 지출계획한 것이나,

〈표 2-7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200
◦ 진로·진학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5,000,000원×5개	100
◦ 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50,000,000원×2개 과정	100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콘텐츠나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등에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시민이나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콘텐츠나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한 관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금년도의 경우,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상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소요예산(63억 2,400만원)중 **사무관리비** 5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①멘토링 홍보 및 모니터링 등(2,000만원), ②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2,600만원)과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를 위한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52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인 바,

〈표 2-73〉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5,326
◦ 멘토링 홍보 및 모니터링 등	20
◦ 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26
◦ 서울형 멘토링 운영 -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	5,280

-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에 지출계획하고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비 52억 8,000만원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적시하고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2월중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규모와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15) 시민건강국

❑ 감염병 등 대비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196)

○ **감염병 등 대비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감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사업 운영(1억 500만원), 대시민 강좌 및 건강포럼 운영(1,500만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20
○감염병 등 대비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	120

-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용역사업을 공모·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방침상 추진 방법도 전문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건강포럼 개최 및 감염병 대시민 강좌 등을 운영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서울시 출연기관

등을 통해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편성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사업별설명서 p.425)

○ 동 사업은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전문가를 파견하여 모유수유마사지를 제공하고 교육상담 지원, 신생아 마사지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임

〈표 2-7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0**
◦산모 유방 마사지 지원 등 - 100,000원×2회×4,900명	98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회보장 제도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관련 방침에도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23년도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597)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기획제안형)으로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1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및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 일부 어르신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청기 지원금 사업은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한계가 있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 예산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이 갖는 한시성으로 단년도에 한정되는 사업이라 하여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편성이 추진되는 절차적 요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별설명서 p.916)

○ 동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유도를 위하여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터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8억원을 포함하여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810
사무관리비	10
◦ 운영회의, 평가심의 및 홍보 - 10,000,000원	10
기타보상금	800
◦ 공공의료서비스 우수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 800,000,000원	8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산과목 중 **기타보상금**을 ①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②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 근거를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로 기재하고 있으나, 동 법에는 **기타보상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 ’22년 10월 17일 시행된 관련조례 제14조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근거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한 것임에도 사업별 설명서에는 사업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타보상금**(8억원) 편성 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의 사례처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별도의 수혜를 받는 부수적 이익 성격으로 포상금이 지출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동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에도 사업별 설명서에 해당 사업의 달성 목표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 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기준에는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해당 사업의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달성목표를 누락하고 있어 예산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 행정국

❑ 시청어린이집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3)

○ 동 사업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육아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17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주방, 실외놀이터 등 노후 시설물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78〉 소요 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민간위탁금	1,766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766
- 인건비	916
- 운영비	609
- 시설비, 시설조성비, 자산취득비	240

※ 증감 사유 : 노후 시설물(주방, 실외놀이터 등) 보수비용, 도시가스 공공요금 상승분반영 등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민간위탁금**을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시설물 보수비용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편성·지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적절한 세출과목 편성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과목 숙지미숙으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오류나 정정요인에 대해 예산부서가 총괄조정하여 검수하는 과정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별설명서 p.358)

○ 동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억 4,700만원이 포함된 12억 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20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7**
◦ 관리인 인건비 - 8개소 운영 인건비 - 피복비 - 퇴직금	747 698 1 47
사무관리비	**238**
◦사무관리비 238,377,000원	238
공공운영비	**169**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169,804,000원	1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 관련기관 업무협의 3,645,000원	3
시설비	**40**
◦ 노후시설 개보수 - 캠핑장 시설 개보수 40,000,000원	40
자산및물품취득비	**10**
◦ 캠핑장 운영 집기구매 10,000,000원	10

○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등으로 정하고 있고, '23년도 생활임금을 11,157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직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 생활임금(11,157원)이 아닌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여 소요예산(7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가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관련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보다 부족편성 하는 것은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소요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3년도에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에도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방침서가 수립되지 않아 '22년도(1억 4,100만원)보다 68% 증액된 **사무관리비**(2억 3,8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확인되어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12억 9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제출안에 대해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 재무국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별설명서 p.97)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같은 법에 따라 그 납세조합에게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납세조합이 포함된 11개 외국기관 근로 납세조합과 노량진농수산물 납세조합이 포함된 2개 수·해산물 납세조합 그리고 가락축산물 납세조합과 한국화훼 납세조합 등 10개구 총 15개 납세조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를 재교부하고 있음

〈표 2-80〉 기타보상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기 타 보 상 금	248
◦ 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징수교부금	248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조합이 징수·수납한 세액중 일부를 재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이라는 점에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기타보상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0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09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자치구가 납세조합으로 재원이 전달되는 이동경로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인 "기타보상금"이 자치구로 교부될 수 있는 세출과목으로 사료되지 않음

- 그러나 사업부서가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자치구가 최종목적지인 민간 납세조합에게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기확정된 '**징수교부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재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 개선되기 전까지 현행과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으나, 동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동 법정교부금

을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이 시행 근거인 관련 법령에 맞도록 행정안전부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별설명서 p.123)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무관리비**로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를 편성하면 아니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의 편성 및 지출과 관련된 기준은 준수한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5,000만원의 연찬회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100명)와 자치구(1,400명)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기적 일체성 등을 확립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세무공무원만큼이나 각 실·본부·국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정보공유, 직무역량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23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3,912개 세부사업중 동 사업이 유일하게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 소요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 소요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디자인정책관

❑ 학술용역사전심사 부적정 결정사업의 우회편성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별설명서 p.85)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p.105)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도래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98
◦ 용역인건비 109,404,000원*1식	109
◦ 경비(유인물, 전산처리, 회의비 등) 46,855,000원*1식	46
◦ 기타 운영경비 42,241,000원*1식	42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4억 4,200만원)중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442**
◦ 제안서평가 참석 수당(디자인거버넌스, 디자인 행정서비스)	3
◦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	88
◦ 디자인거버넌스 사업기획 및 운영	180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170**

❍ 관련 조례 및 기준에 따른 학술용역은 예산편성 전 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과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여부를 심의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학술용역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부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결과 “부적정” 결정된 사례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학술용역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이른바 ‘우회편성’한 사례로 소요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에는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가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만 학술용역예산이 승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110
사무관리비	200
○ 제안서평가위, 자문위 참석수당 200,000원*8명*10회	16
○ 수요조사용역 60,000,000원*1식	60
○ 사업관리 용역 124,000,000원*1식	1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시책업무추진비 10,000,000원*1식	10
민간경상사업보조	900
○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지원 30,000,000원*30개사	900

❍ 동 사업은 디자인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근거는 관련조례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사업부서는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근거 외에도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을 사업추진의 근거로 판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

○ 관련 법령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근거를 관련 조례로 인정한다 하여도 명문상 불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신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예산편성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지난 11월 22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협의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구체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결과 또한 확인되어야 소요재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1)

○ 동 사업은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비(1,000만원)와 전문 분과 운영비(900만원)를 **사무관리비**(1,900만원)로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9**
◦ 전문 분과 운영비	10
- 2,000,000원×5개 이슈	10
◦ 자문단 운영비	9
- 200,000원×15명×3회	9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에는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한 이후 사무관리비(1,900만원)가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부서 또한 '22년 8월, 신설되어 조례제정을 통한 사업근거 마련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예산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사전에 제·개정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의결되어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어 동 편성사례의 경우에도 사업부서 신설,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등임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7)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0**
○ 지원대상기업(제품.서비스) 선정심사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	4
○ 디자인 컨설팅 제공 및 디자인 개선 지원	110
○ 국내 판로개척 지원(오프라인 전시.매장)	150
○ 홍보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	35

○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 근거를 관련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동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만일 동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신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며 예산안 제출(’22.11. 1) 시점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로, ’18년 12월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지침은 협의가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①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인프라 조성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협의 후 예산을 편성요청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부서가 예산안 제출('22.11. 1) 이후 지난 11월 22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협의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근거 외에 동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조례는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다른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입법예고의 단계의 조례안의 경우에도 동 사업이 사업부서의 고유사무라는 근거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탁에 대한 규정 역시 입법이 미비된 상태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고 ②사업시행 및 사업위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③공기관(서울디자인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협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별설명서 p.153)

○ 동 사업은 주거취약지구 내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1,610등)으로 교체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1,578**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980,000원*1,610등	1,578

○ 관련 방침에 따르면 2025년까지 주거안심구역 54개소 전역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1인가구 밀집 안전취약지역의 야간보행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00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451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88〉 연차별 추진목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2022 이전	2023	2024	2025
추진목표	20,451등	6,441등	4,000등	4,500등	5,510등
소요재원	20,042	6,312	3,920	4,410	5,400

○ 관련 규칙 등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투자심사 결과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시·구 사업비 분담을 검토하도록 “조건부”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자치구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문을 25개 자치구로 발송하였으나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는 “스마트보안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서울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관련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 일부개정규칙안에도 스마트보안등과 관련된 기준보조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 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 스마트보안등 관련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시·구 매칭비율에 맞게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사업별설명서 p.206)

○ 동 사업은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탄천의 4대지천 야간경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야간명소를 개발하고자 **시설비** 9억 1,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000
시 설 비	910
○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910
감 리 비	90
○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공사 감리	90

❍ 동 사업은 지난 ’21년 3월 시작한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기반하여 지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2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확인되어, 계획 수립 용역준공 후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된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어 편성요청된 시설비가 적정한 규모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0〉 4대지천 경관개선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소요예산	추진세부내용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1차)	'21. 5~'21.12	100	종합계획 수립 (1차)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2차)	'22. 1~'22.12	135	종합계획 수립 (2차)
사업방침수립	'23. 1~'23. 3	-	사업시행 방침 수립 및 공사계약
사업시행	'23. 3~'23.12	1,000	지천 야간경관 조성공사 시행 (중랑천, 홍제천)

※ 자료근거 : '21년도~'22년도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23년도 디자인정책관 사업별설명서

○ 아울러 동 사업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확인됨에도 사업별설명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재하여 제출된 바, 동 사업 이외에도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은 전액 국비로 기재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2-91〉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구분 오기 사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2021 이전	2022	2023	2024 이후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	(x2,351)	(x100)	(x91)	(x1,160)	(x-)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x1,234)	(x99)	(x135)	(1,000)	(x-)

※ 자료근거 : 디자인정책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03
디자인정책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06

19) 안전총괄실

❑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재난관리기금) (사업별설명서 p.73)

○ 동 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고자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억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지난 '20회계연도부터 '22회계연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6,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에도 동 지방채를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확인됨

- '23년도에는 차입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22년도에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직전 회계연도(89억 1,800만원)보다 25억 8,500만원 증가된 115억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발행	150,000	300,000	200,000	-	-	-	-
상환	-	-	-	-	150,000	350,000	150,000

○ 관련 조례는 재난계정에서 재원을 조성하고자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 경계를 넘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 전출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가 상환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억 300만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그와 연동하여 '23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별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지난 '18년도부터 '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조 9,839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노원구 하계동~성동구 송정동)과 영동대로(강남구 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에 대한 지하화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

〈표 2-9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5,200
시설비	13,600
◦ 공사비(실시설계비 포함)	13,100
- 실시설계비	5,799
- 공사비	7,301
◦ 각종 영향평가비(지하안전영향평가등)	500
감리비	1,600
◦ 감리비	1,600

- ’23년도 소요예산은 15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영동대로 구간(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검토되는 바, 사업별설명서에는 영동대로 구간을 “터널 왕복 4차로, 연장 2.1㎞”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구간이 지하화 구간으로 사료되나,

- 사업부서는 ①동부간선 지하도로 2.1㎞(영동대교 남단~삼성역사거리)는 지하화 구간으로 추진하고, ②영동대로 연결로 0.88㎞(삼성역 주변~대치IC)는 1차로, 2개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나 ③삼성역 사거리~일원터널까지 3.0㎞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회신한 바,

- 영동대로 구간중 ③삼성역 사거리~일원터널까지 3.0㎞ 구간을 이른바 ‘단절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어 과거 동부간선도로를 지상구간으로만 조성한 결과 상시 도로이용량 폭증에 따른 매연, 분진, 소음 등의 민원은 물론 해당구간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은 민자구간과는 달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구간으로 서울시의 재정으로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고, 영동대로 구간중 이른바 ‘단절구간’은 여전히 지상구간으로 조성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만일 해당 ‘단절구간’을 차후 지하화할 경우, 교통정체와 발생가능한 매몰비용은 현저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 영동대로 구간 전체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15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해당 단절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최종확정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 편의적 편성**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사업별설명서 p.406)

■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업별설명서 p.438)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은 도로 점용료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포상금	22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	22

○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운영자 외 운영 등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3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04
사무관리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운영	1
포상금	0.3
○ 시민 신고 포상금	0.3
시설비	102
○ 시설물 이전 공사비	20
○ 시설물 유지 관리비	30
○ 전기 안전점검	52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포상금**”을 ①모범공무원 산업시찰, ②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④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음

○ 지출과목인 포상금은 지급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이 지출계획하는 **포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에도 일괄하여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포상금)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중 **포상금**의 경우에도 민간인을 포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주택정책실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사업별설명서 p.373)

○ 동 사업은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시 설 비	400
○ 용역비 ※ 추진일정 2023. 3 ~ 2024. 2	400

- 동 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당초 사업부서가 요청한 4억원에서 △700만원 감액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당초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당시와 동일한 규모로 확인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용역비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3년도 추진일정”에는 동 용역을 ’24년 2월에 준공할 것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 사례로 사료됨

〈표 2-97〉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진방법 : 용역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자료근거 : 주택정책실,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37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조정된 △700만원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중 '23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7)

❍ 동 사업은 전월세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를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8〉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00
◦ 물량예측 데이터 분석	50
- 인건비 (30,000천원×1식)	30
- 직접경비 (15,000천원×1식)	15
- 일반관리비 (5,000천원×1식)	5
◦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 개발	50
- 인건비 (30,000천원×1식)	30
- 직접경비 (15,000천원×1식)	15
- 일반관리비 (5,000천원×1식)	5

- 사업별설명서와 관련 방침에는 동 사업이 전월세 물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여도 정보화사업에 해당됨

- 서울시의 기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화사

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관련 방침은 물론 사업별설명서에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부서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적정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우회편성한 사안으로 사료됨

21) 도시계획국

❑ 청량리역 新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69)

○ 동 사업은 청량리역 일대 저이용부지의 고밀화 및 복합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9〉 소요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300
○ 기술용역비	300
- 인건비	109
- 직접경비	3
- 제경비	120
- 기술료	39
- 부가가치세	27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 심사결과 “적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2년 10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3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사업별설명서의 “사업내용”과 “2023년도 추진일정”에는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3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소요예산의 증감조정이 없어 10월 19일에 제출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자료와 11월 1일 제출된 사업별설명서간 열흘 남짓한 시차가 있어 용역기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용역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단축되어 용역의 실제 추진기간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2) 균형발전본부

❑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지난 ’22년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관리·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5,300만원을 포함한 14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1,47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9**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9
사무관리비	**153**
○ 사무관리비	153
- 피복비	0.9
- 재설 및 수방자재	18
- 재설대책비(급량비 등)	2
- 일/숙직비	30
-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45
- 공무직 피복비	3
- 공공안전관 피복비	2
-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	51
공공운영비	**1,151**
○ 공공운영비	1,151
- 공공요금(수도, 전기, 정화조 등)	463
- 분수저수조청소	117
- 유지보수자재	64
- 승강기보수용역, 제설용역, 소방용역	84
- 시설수리비	360
- 동상 유지보수	40
- 영조물배상공제	21
공무원교육여비	**0.4**
○ 공무원 교육여비	0.4
- 공무직 교육여비	0.4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협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5,100만원)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 이전**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중 보증금(2,0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 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01〉 협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53
협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	51
○ 보증금	20
○ 임차료	25
○ 관리비	6

23) 푸른도시여가국

❑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별설명서 p.83)

❍ 동 사업은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160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986년 1월부터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운영 하였으나 '17년 1월 서울시설공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중인 바, '23년도의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136억 7,800만원)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3억 9,2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2〉 소요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6,07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678
◦ 인건비	7,376
◦ 경비	5,434
◦ 간접비	867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92
◦ 어린이대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등	2,392
- 구의문주차장 보수	590
- 물놀이장 화장실 증축	500
- 노후 시설물 보수	500
- 놀이동산 유기기구 노후 부품교체	140
- 노후 전력설비 정비	242
- 위험수목 정비 및 녹지경관 개선	160
- 음악분수 노후 설비 개선	110
- 노후포장 및 노면 정비	150

- 관련 조례는 서울시의 사업을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난 '08년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통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관리대행을 제출할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편성여부와는 별개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7년 1월,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위탁사무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대행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대행사무 관리방안을 보완하도록 한 바,

-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중 교통위원회 소관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등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 지난 '08년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부칙으로써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행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 강화차원에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 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100)
-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184)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375)
-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별설명서 p.131)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다른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음

○ 「2023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소요예산이 확정된 이후 ’23년도중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표 2-103〉 시설비를 편성요청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500**
◦ 시설비 (북악하늘길정비) ※ ’23.01~0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500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1,000**
◦ 시설비 (무장애 산책로 조성) ※ ’23.01~0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1,000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2,500**
◦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 ’23.01~02 : 세부추진계획수립 ’23.03~06 : 실시설계용역	2,500

-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총괄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 대상이나, 시민참여 예산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이행 시기는 용역발주 전”으로 회신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 기준에는 시민참여 예산은 ‘예산편성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한다는 예외적용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이라 하여도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인 바,

- 동 편성사례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특수성이 예외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권으로 작용될 경우에는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 편성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 편성요청 된 시설비에 대한 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는 시공원의 노후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시설비 32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23년 1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3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술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은 시공원 내 체육시설 15개소(실내 5, 실외 10)에 대해 노후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중 우선순위 대상지와 연차별 대상지를 공모하여 ’23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예산안 편성 시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결과 해당 시설별 소요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설비를 편성함에 있어 수반되는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대상인지조차 가늠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4〉 시설비를 편성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필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시 공 원 내 체 육 시 설 현 대 화	**3,200**
◦ 시설비 (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① '23.01~01 : 대상지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② '23.01~04 : 기술용역	3,200

❑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별설명서 p.275)

○ 동 사업은 문화비축기지 시설을 재정비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시 설 비	**300**
◦ 기본계획 용역	300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23년도 4월부터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10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2021)	2 0 2 2	2 0 2 3	2024 이후
계	40,000	0	0	300	39,700
시설비	40,000	0	0	300	39,700

※ 자료근거 : 푸른도시여가국,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76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요청하고 있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제출일('22.11. 1)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용역시행의 타당성이나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별설명서 p.526)

○ 동 사업은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9,500만원을 포함한 10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하여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추진 방식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5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사업부서는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예시 사례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회신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즉,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사무관리비**가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용도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사업추진방식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를 통한 용역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 하나 사실상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일 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소요예산 편성사례가 기준 에 부합되는 편성사례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미이행한 사업**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813)

■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856)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양천구 소재 서서울호수공원에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0억원(시비 100%)을 투입하여 가족 중심의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9억 1,500만원을 포함한 9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사비 27억 3,500만원과 용역비 2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됨

○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은 강북구 소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 '22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21억원을 투입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사비 19억 1,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3,600만원, 건축기획비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됨

○ '19년 12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년 2월,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시장방침 제68호,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 관련 법령에는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준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더욱이 서울시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와 방침에도 '23년 1월 이후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업부서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미이행"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편성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24) 한강사업본부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28)

○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업중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소요예산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107〉 소요예산안중 시설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시 설 비	3,704
◦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1,778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주1)]	1,925

※ 주1) 공사비(1,836,500천원)+설계비(88,900천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설계(상반기) 및 공사(하반기)

- 동 시설비의 경우, 공사비 18억 3,600만원과 설계비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서울시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는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시설비와 설계비를 편성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의 경우, 11월 14일, 해당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이 진행되자 예산안 편성은 물론 예산안 제출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시의회의 확인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사후적으로나마 이행하도록 하는 순기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에 승인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후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요청한 사업**

■ **한강 이색 축제** (사업별설명서 p.193)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204)

○ 행정안전부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 신규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행사성 사업중 계속사업은 '22년도중 '21년도 행사성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23년도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행사성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 공연 축제 등"을 대상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고, ①'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②'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③'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등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108〉 사후평가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예시

평가결과	우수	미흡	매우 미흡
예산반영	증액 또는 유지	△10%	미반영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11.13), p.3

-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기준 등을 통해 '21년도에 기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23년도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강 이색 축제**의 경우, 행사성 사업의 사후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오히려 금년도(8,000만원)보다 125.0%, 1억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은 '21년도에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22년도에도 동일 규모인 8,0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의 95%를 지출원인행위 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9〉 '23년도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평가등급	'21년 행사운영비	'22년 행사운영비 (A)	'23년 행사운영비 (B)	증감 (B-A)
한강사업본부	한 강 이 색 축 제	매우미흡	80	80	180	1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8979 ('22.11.15),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축제를 전면 취소하여 집행부진 등을 사유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우미흡' 등급의 경우 재평가 후 개선이 없을시 사업 일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기준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적용을 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는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2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 **행사운영비**(8,000만원)보다 50.0%, 4,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0〉 '23년도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평가등급	'21년 행사운영비	'22년 행사운영비 (A)	'23년 행사운영비 (B)	증감 (B-A)
한강사업본부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매우미흡	40	80	120	4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8979 ('22.11.15),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 동 사업의 경우에도 '22년도 평가결과, '매우미흡'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일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 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요 예산 승인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⑶ 기타 검토의견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93)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70)
-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42)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08)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46)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26)
-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홍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0)

○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7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안중 출연금 편성을 위해 재무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행정국 소관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도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도 지난 8월, 개별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홍보기획관 소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경우에도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11〉 출연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출연금	출자동의안 제출일	심사일
재 무 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	'22. 8.29	'22.11.28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330	'22. 8.29	'22.11.25 (가결)
평생교육국	서 울 장 학 사 업 추 진	9,758	'22. 8.29	'22.11.24 (가결)
〃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운 영	9,428	'22. 8.29	'22.11.24 (가결)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321	'22. 8.29	'22.11.24 (가결)
복지정책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6,884	'22. 8.29	'22.11.21 (가결)
홍보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23,217	'22. 8.29	'22.11.22 (가결)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관련 출연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 및 미상정 된 바 있으나, 금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 상정예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외한 6건의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3년도 예산안중 편성요청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관련「출연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출연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민간위탁동의)가 필요한 사업**

- **영상산업 지원**(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5)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573)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779)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827)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미래청년기획단 사업별설명서 p.80)
-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60)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878)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28)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95)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47)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401)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도시교통실 사업별설명서 p.325)

○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2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안중 민간위탁금 편성을 위해 경제정책실 소관 **영상산업 지원**,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은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복지정책실 소관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

영, 도시교통실 소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12월 19일 상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4건을 제외한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3년도 예산안중 편성요청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4건의 민간위탁금은 관련「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민간위탁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12〉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동의안 제출일	심사일
경제정책실	영상산업 지원	3,054	'22.10.17	'22.11.25 (가결)
경제정책실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450	'22.10.17	'22.11.25 (가결)
경제정책실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777	'22.10.17	'22.11.25 (가결)
경제정책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1,201	'22.10.17	'22.11.25 (가결)
미래청년기획단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2,203	'22.10.17	'22.11.29
복지정책실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342	'22.10.17	'22.11.21 (가결)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3,337	'22.10.17	'22.11.28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188	'22.10.17	'22.11.24 (가결)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196	'22.10.17	'22.11.24 (가결)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39,497	'22.10.21	'22.11.21 (가결)
기후환경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756	'22.10.17	'22.11.21 (가결)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	1,491	'22.10.17	'22.12.19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아울러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은 민간위탁금 22억 9,300만원이 포함된 37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에는 4개소의 서울청년센터중 서울청년센터(금천오랑, 동대문오랑) 운영을 위한 11억 7,4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10월, 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11월 29일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2년 9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29일 심의 예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적정"으로 제출한 것은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와 별개로 예산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부서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은 민간위탁금 14억 9,100만원을 포함한 18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교통위원회는 관련 의안을 12월 19일 상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 **사업별 설명서 부실 작성 사례**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39)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41)
-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54)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09)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09)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91)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일 수 밖에 없어 다음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개 세부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추진실적”을 누락한 것으로

- 서울시의 기준에는 계속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은 예산안 편성 전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인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의 심의일자를 ’23년 9월 16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 또한 “예산조정” 임에도 “적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 사전절차 임에도 그에 대한 심의일자를 회계연도 개시 이후로 작성한 것은 단순 오기일 수 있으나,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결과 ‘예산조정’으로 통보받아 3,3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사실과는 다르게 ‘적정’으로 명시한 것은 사업별설명서를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은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에도 의회동의 결과를 '22년 10월 6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 또한 "적정"으로 사실아닌 내용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정책실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제출 이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업별설명서에 대한 수정 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9개 세부사업 24건을 수정한 바 있음

- 주택정책실은 사업별설명서중 24건을 수정하였음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중 품질점검단 운영 예산(사무관리비)은 1,6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 일정에는 동 점검단 운영 예산을 1,000만원으로 오류 기재 된 상태로 현재까지 오류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13〉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6
○ 품질점검단 점검수당(분쟁시) 151,510원*11인*9.6회	16

〈표 2-11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소요예산	추진세부내용
품질점검단 운영	'23. 3~'23.12	10	품질점검단 운영 지원

※ 자료근거 : '23년도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법정서류요건으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시켜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주택정책실은 4회에 걸친 공문으로 9개 사업, 24건을 수정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별설명서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 필요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01)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7)

○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은 투자사업 등에 대해 ①'22년도중 '21년도의 추진내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②'보통'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②'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③'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등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환경본부 소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확인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시설비 27억 8,800만원)보다 39.8%, 11억 1,200만원 증액된 39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

〈표 2-115〉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시설비)	3,900	2,788	1,112	39.8

-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의 경우**에도 서울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통'으로 확인되나, 금년도(7억 3,400만원) 대비 14.8%, 1억 900만원 증액한 8억 4,300만원 편성요청 하고 있음

〈표 2-116〉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서 울 관 광 거 버 넌 스 운 영	843	734	109	14.8

○ 예산안 편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원칙 또한 준수되어야 예산 편성의 기준이 유지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될 것인바,

-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단순히 절차적인 요건이라면 실효성 낮은 행정절차는 폐지되거나 간소화 되어야 할 것이나, 소요 예산의 증·감에 대한 필요성을 가늠하는 측정도구로써 필요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평가 결과 또한 적극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⑷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686억 5,800만원, ②지출 6,468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613억 4,200만원 ②지출 2,831억 8,0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9,3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7〉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930,000	930,000
사 업 예 산	868,658	646,820
자 본 예 산	61,342	283,180

※ 자료근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25 “2023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9,300억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8,173억 8,099만원)보다 13.8%, 1,126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3년(’21~’23년) 간 연간 73.5원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수익을** 금년도 최종예산(6,410억 5,300만원)보다 23.2%, 1,484억 7,900만원 증액된 7,89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최종예산(227억 2,980만원)보다 △1.6%, △3억 6,477만원 감액된 223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18〉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930,000	817,381	112,619	13.8
상수도사업수익	868,658	741,718	126,940	17.1
영 업 수 익	820,909	669,430	151,479	22.6
상수도사용료수익	789,532	641,053	148,479	23.2
급배수공사수익	28,101	25,193	2,908	11.5
기타영업수익	3,276	3,184	92	2.9
영 업 외 수 익	47,749	72,288	△24,540	△33.9
이 자 수 익	1,504	1,167	336	28.8
타회계전입금수입	26,847	61,619	△34,772	△56.4
기타영업외수익	19,398	9,502	9,896	104.1
자 본 적 수 입	61,342	75,663	△14,321	△18.9
유 형 자 산 처 분	8,605	10,866	△2,261	△20.8
재 산 매 각 수 입	8,605	10,866	△2,261	△20.8
자본잉여금수입	20,568	30,065	△9,496	△31.6
시설분담금수입	19,423	27,894	△8,471	△30.4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45	2,170	△1,025	△47.2
유 보 자 금	32,169	34,732	△2,563	△7.4
순세계잉여금	22,365	22,730	△365	△1.6
미 수 금	9,804	12,002	△2,198	△18.3

※ 자료근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31 “세입예산 목별구성”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9,300억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8,173억 8,099만원)보다 13.8% 1,126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2년도 최종예산(5,805억 300만원)보다 10.3%, 597억 2,400만원 증액된 6,40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2년도 최종예산(2,165억 7,000만원)보다 23.6%, 511억 5,800만원 증액된 2,67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56억 2,000만원, (2)자본예산은 36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19〉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최종예산)		증 감	
		%		%		%
계	930,000	100.0	817,381	100.0	112,619	13.8
상수도사업비용	646,820	69.6	589,636	72.1	57,184	9.7
영업비용	640,227	68.8	580,503	71.0	59,724	10.3
영업외비용	973	0.1	973	0.1	-	0.0
예비비	5,620	0.6	8,160	1.0	△2,540	△31.1
자본적지출	283,180	30.4	227,745	27.9	55,435	24.3
유형자산취득	267,728	28.8	216,570	26.5	51,158	23.6
무형자산 및 기타유동자산취득	747	0.1	2,388	0.3	△1,641	△68.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152	0.9	8,487	1.0	△335	△3.9
기타자본적지출	2,873	0.3	300	0.0	2,573	857.7
예비비	3,680	0.4	-	0.0	3,680	-

※ 자료근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45~49 “세출예산 목별조서” 재구성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7,622억 900만원, ②지출 4,713억 4,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1,241억 9,100만원, ②지출 4,150억 5,3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86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0〉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886,400	886,400
사 업 예 산	762,209	471,347
자 본 예 산	124,191	415,053

※ 자료근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총규모는 8,864억원으로 ’22년도 당초예산액 8,654억 800만원보다 2.4%, 209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최근 3년간 결산액(’19~’21)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22년도 당초예산(7,080억 1,700만원)보다 △4.5%, 304억 7,700만원이 감액된 6,775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21〉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주1])	증 감	증 감 률
총 계	886,400	865,408	20,992	2.4
사 업 수 익	762,209	794,786	△32,577	△4.3
영 업 수 익	727,907	763,940	△36,033	△5.0
사 용 료 수 익	677,540	708,017	△30,477	△4.5
기 타 영 업 수 익	50,367	55,923	△5,556	△11.0
영 업 외 수 익	34,302	30,846	3,456	10.1
이 자 수 익	3,500	2,341	1,159	33.1
타회계전입금수입	27,545	25,619	1,926	7.0
기 타 영 입 외 수 익	3,257	2,886	371	11.4
자 본 적 수 입	124,191	70,622	53,569	43.1
투 자 자 산 처 분	43,000	-	43,000	1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3,000	-	43,000	100.0
자 본 잉 여 금 수 입	60,063	45,664	14,399	24.0
시 설 분 담 금 수 입	58,335	43,519	14,816	25.4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7	86	61	41.5
공 사 부 담 금 수 입	1,581	2,059	△478	△30.2
유 보 자 금	21,128	24,958	△3,830	△18.1
순 세 계 잉 여 금	-	-	-	-
미 수 금	21,128	24,958	△3,830	△18.1

주1)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은 "'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당초예산액" 즉, '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을 표기하여 제출함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7~18 "수입예산 총괄표" 재구성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86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8,654억 800만원)보다 20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5,059억 9,900만원)보다 △7.4%, △346억 5,200만원 감액된 4,713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3,594억 900만원)보다 13.4%, 556억 4,400만원 증액된 4,150억 5,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⑴사업예산은 10억원, ⑵자본예산은 1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22〉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본예산[주1])		증 감	
		%		%		%
계	886,400	100.0	865,408	100.0	20,992	2.4
사 업 예 산	471,347	53.2	505,999	58.5	△34,652	△7.4
깨끗한 물관리	0	0.0	115	0.0	△115	-
하수시설 관리	89,565	10.1	129,048	14.9	△39,483	△44.1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73,589	19.6	168,194	19.4	5,395	3.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96,139	10.8	96,190	11.1	△51	△0.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55,713	6.3	57,291	6.6	△1,578	△2.8
행정운영경비 (물재생계획과)	5,854	0.7	5,513	0.6	341	5.8
행정운영경비 (물재생시설과)	65	0.0	65	0.0	0	0.0
행정운영경비 (중랑물재생센터)	15,463	1.7	15,952	1.8	△489	△3.2
행정운영경비 (난지물재생센터)	11,959	1.3	11,431	1.3	528	4.4
재무활동	22,000	2.5	21,200	2.4	800	3.6
예비비(사업)	1,000	0.1	1,000	0.1	0	0.0
자 본 예 산	415,053	46.8	359,409	41.5	55,644	13.4
깨끗한 물관리(자본)	0	0.0	1,600	0.2	△1,600	-
하수시설관리(자본)	295,427	33.3	233,821	27.0	61,606	20.9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68,431	7.7	70,923	8.2	△2,492	△3.6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3,241	1.5	11,820	1.4	1,421	10.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6,731	1.9	13,793	1.6	2,938	17.6
재무활동	21,056	2.4	27,212	3.1	△6,156	△29.2
예비비(자본)	167	0.0	240	0.0	△73	△43.7

주1)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은 "'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당초예산액" 즉, '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을 표기하여 제출함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9~64 "지출예산 총괄표" 재구성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22. 12. 6(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3명)

- 위 원 장 : 이성배(주택공간)
- 부위원장 : 강동길(주택공간), 김영옥(보건복지)
- 위　　원 : 송경택(행정자치), 김지향(기획경제),
  이영실(환경수자원), 이종배(문화체육관광),
  박칠성(도시안전건설), 김영철(도시계획균형),
  김용일(도시계획균형), 경기문(교통),
  김혜영(교육), 박강산(교육)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6(화) 10:00 ~ 12: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원칙(심사기준 등) 마련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8(목) 10:00 ~ 19: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9(금) 10:00 ~ 19: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0(토) 14:00 ~ 19: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2(월) 10:00 ~ 21: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3(화) 10: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 제7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3(화) 19:00 ~ 12. 14(수) 02: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 제8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4(수) 11:00 ~ 18: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 **제9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14(수) 20:00 ~ 12. 15(목) 10: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발의

○ 일　　시 : 2022. 12. 15(목) 20:00 (제5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이성배 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기타내용 : 서울특별시 각 사업부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집행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부대의결 등)를 준수할 것

Ⅷ. 수정안의 요지 : 「생략」

Ⅸ. 부대의견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막대한 시민 혈세가 대학 지원금으로 추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수생 증가로 인한 면학 분위기 저해, 교육 개선 및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경쟁력 하락 등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1조제1항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등록금 정상화를 통한 대학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심사보고서 중 부대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대학(공립대학 포함)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립대가 추진중인 각종 제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 **업무추진비** 감액요구 건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시민들의 가계부담은 매일 커지고 있기에 서울시 공무원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중 일정비율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요구 하였으나,

- 공무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수정안에는 감액하지 않았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감액가능한 적정범위를 검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공유하는 편성이 되도록 개선할 것으로 요구함

❍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감액요구 건의 경우, 서울시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서울시가 매년 합리적이지 않은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청사를 임대하고 있고, 이를 관행화시키고 있어 지도·감독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향후 청사임대료에 대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 임차계약 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함

Ⅹ. 심사결과 : 수정가결(2022. 12. 15.)

◇ 첨 부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 정 안

1. 예산총칙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출 안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7,205,227,895	600,000,000
일 반 회 계	33,524,517,158	500,000,000
특 별 회 계	13,680,710,737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100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3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6,400,10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1,864,310,637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72,025,449	
(4)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870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764,678	
(6)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53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218	
(8)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686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386,746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2,895,432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5,791,603	
(12) 소방특별회계	975,173,425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306,05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39,306,05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 이 하 생 략 -

수 정 안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7,190,512,274	600,000,000
일 반 회 계	33,466,084,358	500,000,000
특 별 회 계	13,724,427,916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100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3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6,400,10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1,908,027,816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11,991,449	
(4) 교통사업특별회계	1,670,325,020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964,678	
(6) 주택사업특별회계	2,963,622,505	
(7) 도시개발특별회계	1,831,991,468	
(8) 균형발전특별회계	169,685,490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386,746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2,895,432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5,791,603	
(12) 소방특별회계	976,373,425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122,946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08,122,946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 이 하 생 략 -

2. 세입·세출 총괄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47,205,227,895	△14,715,621	227,622,014	△242,337,635	47,190,512,274
일 반 회 계	33,524,517,158	△58,432,800	7,377,539	△65,810,339	33,466,084,358
특 별 회 계	13,680,710,737	43,717,179	220,244,475	△176,527,296	13,724,427,916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100	-	36,521	△36,521	1,816,400,100
수도사업특별회계	930,000,000	-	-	-	93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6,400,100	-	36,521	△36,521	886,400,100
기타특별회계	11,864,310,637	43,717,179	220,207,954	△176,490,775	11,908,027,81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972,025,449	39,966,000	39,966,000	-	2,011,991,449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870	18,705,150	18,705,150	-	1,670,325,02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05,764,678	200,000	200,000	-	305,964,678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530	△15,755,025	159,000,000	△174,755,025	2,963,622,505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218	△1,735,750	-	△1,735,750	1,831,991,468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686	1,136,804	1,136,804	-	169,685,49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9,386,746	-	-	-	29,386,7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12,895,432	-	-	-	1,912,895,432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5,791,603	-	-	-	35,791,603
소방특별회계	975,173,425	1,200,000	1,200,000	-	976,373,425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47,205,227,895	△14,715,621	846,933,396	△861,649,017	47,190,512,274
일 반 회 계	33,524,517,158	△58,432,800	340,876,241	△399,309,041	33,466,084,358
특 별 회 계	13,680,710,737	43,717,179	506,057,155	△462,339,976	13,724,427,916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100	-	18,302,457	△18,302,457	1,816,400,100
수도사업특별회계	930,000,000	-	6,072,457	△6,072,457	93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6,400,100	-	12,230,000	△12,230,000	886,400,100
기타특별회계	11,864,310,637	43,717,179	487,754,698	△444,037,519	11,908,027,81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972,025,449	39,966,000	45,863,000	△5,897,000	2,011,991,449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870	18,705,150	57,391,150	△38,686,000	1,670,325,02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05,764,678	200,000	385,100	△185,100	305,964,678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530	△15,755,025	301,950,594	△317,705,619	2,963,622,505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218	△1,735,750	75,495,000	△77,230,750	1,831,991,468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686	1,136,804	2,688,054	△1,551,250	169,685,49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9,386,746	-	-	-	29,386,7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12,895,432	-	-	-	1,912,895,432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5,791,603	-	4,800	△4,800	35,791,603
소방특별회계	975,173,425	1,200,000	3,977,000	△2,777,000	976,373,425

3. 세부 수정내역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총계				47,205,227,895	47,190,512,274	△14,715,621	[+ 37건 227,622,014 △ 24건 △242,337,635
일반회계				33,524,517,158	33,466,084,358	△58,432,800	[+ 27건 7,377,539 △ 19건 △65,810,339
세외수입				1,299,797,602	1,299,928,984	131,382	[+ 3건 613,354 △ 2건 △481,972
	경상적세외수입			843,884,573	844,015,955	131,382	
		재산임대수입		166,384,768	166,955,720	570,952	
			공유재산임대료	166,384,768	166,955,720	570,952	(100-211-02) 공유재산임대료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 카페테리아 등 서울식물원 임대료 902,158 → 1,473,110 (570,952)
		사용료수입		152,012,163	151,572,593	△439,570	
			입장료수입	14,051,626	13,581,849	△469,777	(100-212-07) 입장료수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 서울식물원 입장료 2,512,395 → 2,042,618 (△469,777)
			기타사용료	33,669,132	33,699,339	30,207	(100-212-09) 기타사용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삼일로 창고극장 대관수입 0 → 30,207(30,207)
	임시적세외수입			448,277,442	448,277,442	0	
		보조금반환수입		224,406,956	224,406,956	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76,035,584	176,035,584	0	(100-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12,195 → 0 (△12,195)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시비보조금 반환금 16,106,305 → 16,118,500 (12,195)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지방교부세				201,828,905	184,631,905	△17,197,000	[+ 0건 △ 1건 △17,197,000
	지방교부세			201,828,905	184,631,905	△17,197,000	
		지방교부세		201,828,905	184,631,905	△17,197,000	
			보통교부세	172,604,000	155,407,000	△17,197,000	(100-311-01) 보통교부세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분) 172,604,000 → 155,407,000 (△17,197,000)
보조금				6,330,747,588	6,329,980,406	△767,182	[+ 24건 6,764,185 △ 15건 △7,531,367
	국고보조금등			6,330,747,588	6,329,980,406	△767,182	
		국고보조금등		6,330,747,588	6,329,980,406	△767,182	
			국고보조금	6,001,786,000	6,002,721,470	935,470	(100-511-01) 국고보조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보조금 2,160 → 1,440 (△72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64,516 → 0 (△64,516)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943,000 → 389,216 (△553,78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지원 0 → 75,600 (75,6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 0 → 416,000 (416,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046,000 → 7,046,000 (△2,000,00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557,000 → 4,557,000 (△1,000,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69,497 → 718,682 (△50,81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132,922 → 363,502 (230,580)

예 산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9,750,000 → 10,916,392(1,166,39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전기굴착기 보급 0 → 100,000 (10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0 → 1,000 (1,000)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보급 7,200,000 → 5,400,000 (△1,8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건립 0 → 800,000(800,000)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75,000 → 150,000 (75,00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089 → 55,000 (45,91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416,790 → 234,729 (△182,06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3,905,703 → 3,855,703 (△50,00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261,000 → 2,448,000 (1,187,000)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740,000 → 1,830,000 (90,000)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865,985 → 1,120,100 (254,115)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산림재해발생시 긴급복구비 0 → 2,195,768 (2,195,768)

예 산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5,005,747	113,024,319	△1,981,428	(100-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194,335 → 959,044 (△1,235,29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3,233,068 → 2,184,313 (△1,048,75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28,410 → 128,000 (△41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212,325 → 1,515,353 (303,028)
			기금	213,955,841	214,234,617	278,776	(100-511-03) 기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68,214 → 70,400 (2,18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1,400,328 → 1,387,602 (△12,726)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자치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560,000 → 490,000 (△7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부기명 수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장애인체육지도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503,828 → 1,527,888 (24,060) ◦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1,423,963 → 1,443,558 (19,595)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548,772 → 554,376 (5,604)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109,028 → 3,268,445 (159,417)

예산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장	관	항	목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797,373 → 1,818,033 (20,660) ◦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103,068 → 109,605 (6,537) ◦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108,894→ 110,644 (1,75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29,400 → 28,600 (△800)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모바일 헬스케어 345,424 → 467,620 (122,196)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인력운영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 3,694 → 3,991 (2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0,359,063	769,759,063	△40,600,000	[+ 0건 [△ 1건 △40,600,000
	내부거래			752,556,879	711,956,879	△40,600,000	
		예탁금및예수금		480,300,000	439,700,000	△40,600,000	
			예수금수입	480,300,000	439,700,000	△40,600,000	(100-722-01) 기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80,300,000 → 439,700,000 (△40,6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6,400,100	886,400,100	0	[+ 1건 36,521 [△ 1건 △36,521
세외수입				815,855,235	815,818,714	△36,521	[+ 0건 [△ 1건 △36,521
	경상적세외수입			729,393,662	729,357,141	△36,521	
		이자수입		3,500,000	3,463,479	△36,521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000	3,463.,479	△36,521	(303-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00 → 3,463,479 (△36,521)

예 산 과 목 장 관 항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544,865	70,581,386	36,521	[+ 1건 36,521 △ 0건
내 부 거 래	70,544,865	70,581,386	36,521	
예탁금및예수금	43,000,000	43,036,521	36,521	
예탁금이자수입	0	36,521	36,521	(303-722-04) 예탁금이자수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0 → 36,521 (36,5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972,025,449	2,011,991,449	39,966,000	[+ 1건 39,966,000 △ 0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 1건 39,966,000 △ 0건
내 부 거 래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전 입 금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기타회계전입금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201-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 일반회계 전입금 497,094,512 → 537,060,512 (39,966,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651,619,870	1,670,325,020	18,705,150	[+ 1건 18,705,150 △ 0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1,561,237	1,160,266,387	18,705,150	[+ 1건 18,705,150 △ 0건
내 부 거 래	1,057,756,251	1,076,461,401	18,705,150	
전 입 금	849,393,515	868,098,665	18,705,150	
기타회계전입금	849,393,515	868,098,665	18,705,150	(202-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362,120,015 → 380,805,165 (18,705,15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764,678	305,964,678	200,000	[+ 1건 200,000 △ 0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898,022	137,098,022	200,000	[+ 1건 200,000 △ 0건
내 부 거 래	127,584,427	127,784,427	200,000	

예산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장	관	항	목				
			전입금	127,584,427	127,784,427	200,000	
			기타회계전입금	127,584,427	127,784,427	200,000	(210-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27,584,427 → 127,784,427(2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979,377,530	2,963,622,505	△15,755,025	**[+ 3건 194,692,594 △ 3건 △210,447,619**
보조금				771,413,636	763,658,611	△7,755,025	**[+ 2건 35,692,594 △ 2건 △43,447,619**
	국고보조금등			771,413,636	763,658,611	△7,755,025	
		국고보조금등		771,413,636	763,658,611	△7,755,025	
			기금	759,560,636	751,805,611	△7,755,025	(204-511-03) 기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47,303,253 → 4,249,964 (△43,053,289)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0 → 35,298,264 (35,298,264)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7,589,655 → 7,195,325 (△394,330)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공공임대주택) 0 → 394,330 (394,3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0,743,633	1,272,743,633	△8,000,000	**[+ 1건 159,000,000 △ 1건 △167,000,000**
	내부거래			1,104,676,570	1,096,676,570	△8,000,000	
		전입금		610,249,000	443,249,000	△167,000,000	
			기타회계전입금	610,249,000	443,249,000	△167,000,000	(204-721-03) 기타회계전입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국민) 167,000,000 → 0 (△167,000,000)
		예탁금및예수금		494,427,570	653,427,570	159,000,000	
			예수금수입	465,200,000	624,200,000	159,000,000	(204-722-01) 예수금수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국민) 465,200,000 → 624,200,000 (159,000,000)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도시개발특별회계				1,833,727,218	1,831,991,468	△1,735,750	[+ 0건 △ 1건 △1,735,750
보조금				127,713,633	125,977,883	△1,735,750	[+ 0건 △ 1건 △1,735,750
	국고보조금등			127,713,633	125,977,883	△1,735,750	
		국고보조금등		127,713,633	125,977,883	△1,735,7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48,333	14,012,583	△1,735,750	(205-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7,424,550 → 5,688,800 (△1,735,750)
균형발전특별회계				168,548,686	169,685,490	1,136,804	[+ 2건 1,136,804 △ 0건
보조금				11,160,087	11,160,614	527	[+ 1건 527 △ 0건
	국고보조금등			11,160,087	11,160,614	527	
		국고보조금등		11,160,087	11,160,614	5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10,973	5,211,500	527	(215-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078,473 → 4,079,000(5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674,604	132,810,881	1,136,277	[+ 1건 1,136,277 △ 0건
	내부거래			131,622,104	132,758,381	1,136,277	
		전입금		128,491,104	129,627,381	1,136,277	
			기타회계전입금	128,491,104	129,627,381	1,136,277	(215-722-01) 기타회계전입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28,491,104 → 129,627,381 (1,136,277)
소방특별회계				975,173,425	976,373,425	1,200,000	[+ 1 건 1,200,000 △ 0 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9,197,289	970,397,289	1,200,000	[+ 1 건 1,200,000 △ 0 건

예 산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내 부 거 래			941,115,200	942,315,200	1,200,000	
		예탁금및예수금		1,224,000	2,424,000	1,200,00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수 입	1,200,000	2,400,000	1,200,000	(214-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200,000 → 2,400,000(1,200,000)

세 출 예 산

☐ 대변인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변인			1,660,455	1,720,455	60,000	┌ + 1건 60,000천원 └ △ 0건
(언론담당관)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1,436,501	1,496,501	60,000	
	(일반회계)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566,860	626,860	60,000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31,275	191,275	6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해외출장 취재 지원 0 → 60,000 (60,000)

▢ 홍보기획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홍보기획관			83,853,941	87,091,941	3,238,000	┌ ＋ 5 건 3,238,000천원 └ △ 0 건
(홍보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38,649,483	40,352,483	1,703,000	
	(일반회계)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28,936,200	30,439,200	1,503,00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5,718,892	7,221,892	1,503,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방송협력 3,610,000 → 4,060,000 (450,000) · 지상파TV 기획방송 및 시정광고 1,500,000 → 1,800,000 (300,000) · 케이블, 종편, IPTV 등 기획방송 및 시정광고 1,450,000 → 1,600,000 (150,000) ◦ 인쇄매체 광고 2,043,000 → 3,096,000 (1,053,000) · 신문광고 1,503,000 → 2,376,000 (873,000) · 잡지, 정보지 등 광고 540,000 → 720,000 (180,000)
	(일반회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9,050,360	9,250,360	200,000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5,015,175	5,215,175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시민밀착사업 시정종합안내 625,000 → 825,000 (200,000)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8,991,879	9,991,879	1,000,000	
	(일반회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5,431,467	6,431,467	1,0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320,739	1,320,739	1,0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0 → 1,000,000 (1,000,000) ※ 부기명 수정 : 웹사이트 → 누리집 (100-201-02) 공공운영비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누리집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서울브랜드담당관)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			5,172,100	5,672,100	500,000	
	(일반회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5,172,100	5,672,100	500,000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2,350,000	2,850,000	500,000	※ 부기명 수정 및 금액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해외 현지프로모션 포함) · 해외 도시 프로모션 - 남미·중동·유럽권 등 한류문화 연계 마케팅 → 미주·중동·유럽권 등 한류문화 연계 마케팅 - 동남아시아 등 지역홍보 마케팅 0 → 200,000 (200,000) · 국제회의 프로모션 → 국제회의·박람회 등 프로모션 400,000 → 700,000 (300,000)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2,179,600	2,179,600	-	※ 부기명 수정 : 홈페이지 → 누리집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시정 및 도시매력 확산 마케팅 · 외국어 온라인 매체 활성화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외국어 누리집 운영 · 외국어 홈페이지 등 콘텐츠 번역 → 외국어 누리집 등 콘텐츠 번역 (100-201-02) 공공운영비 ◦외국어 홈페이지 유지 보수 → 외국어 누리집 유지 보수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민원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9,246,211	29,281,211	35,000	
	(일반회계)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28,108,991	28,143,991	35,000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26,709,699	26,744,699	35,000	※ 사업명 변경: 120다산콜재단 운영 →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100-306-01) 출연금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26,709,699 → 26,744,699 (35,000) · 운영비 5,845,168 → 5,880,168 (35,000) ‣ 포상금 75,000 → 110,000 (35,000)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계획 확립 후 집행 조건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655,959	3,100,959	445,000	[+ 2건 445,000 [△ 0건
(동행정책담당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1,343,894	1,488,894	145,000	
	(일반회계) 약자와의동행 가치 확산 제고		1,289,694	1,434,694	145,000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560,694	705,694	145,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토크콘서트 → 동행콘서트 70,000 → 215,000 (145,000)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1,184,400	1,484,400	300,000	
	(일반회계) 약자와의 동행 기반 조성		1,184,400	1,484,400	300,000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146,000	146,000	-	(100-201-01) 사무관리비 ◦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회의 등 58,000 → 0 (△58,000)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 등 0 → 58,000 (58,000) ※ 부기변경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1,007,000	1,307,000	3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모사업 운영 1,000,000 → 1,300,000 (300,000)

☐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여성가족정책실			(×1,137,173,869) 3,088,722,235	(×1,137,163,329) 3,088,068,504	(×△10,540) △653,731	+ 23건 (×2,186)4,719,737 △ 9건 (×△12,726)△5,373,468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18,930,407) 95,859,397	(×18,932,593) 97,122,083	(×2,186) 1,262,686	
	(일반회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11,232,127) 58,210,407	(×11,232,127) 59,420,907	(×-) 1,210,500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050,187	4,100,187	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 여성인력발기관 인센티브 260,000 → 310,000 (50,000)
		여성발전센터 운영	6,570,226	7,094,726	524,500	(100-307-05) 민간위탁금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1,685,907 → 1,735,907 (50,000)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1,055,817 → 1,105,817 (50,000)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 1,155,819 → 1,205,819 (50,000)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1,175,829 → 1,225,829 (50,000)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992,054 → 1,042,054 (50,000) (110-402-03) 민간위탁사업비 ◦PC교체 및 SW구매 0 → 164,500 (164,500) ◦서부여성발전센터 노후시설개선 0 → 110,000 (110,000)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556,826	6,098,826	542,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임차료 추가지원 0 → 182,000 (182,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0 → 360,000 (360,000)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879,306	1,973,306	94,000	(100-307-05) 민간위탁금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613,210 → 644,540 (31,330)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556,628 → 587,958 (31,330)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526,191 → 557,531 (31,340)
	(일반회계) 성평등 인권보호		(×7,634,075) 33,240,518	(×7,636,261) 33,292,704	(×2,186) 52,186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68,214) 68,214	(×70,400) 70,400	(×2,186) 2,186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센터(2개소) 운영 지원 (x68,214)68,214 → (x70,400)70,400 (2,18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3,133,157	3,183,157	50,000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0 → 50,000 (50,000)
(영유아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679,143,767) 1,901,616,920	(×679,143,767) 1,901,181,471	(×-) △435,449	
	(일반회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672,355,653) 1,870,436,196	(×672,355,653) 1,869,948,747	(×-) △487,449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3,704,754	54,797,754	1,09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0 → 643,000 (643,000)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 지원 0 → 450,000 (450,000)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5,675,000) 24,234,792	(×5,675,000) 21,257,792	(×-) △2,977,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대체교사(파견지원) (x3,925,616)19,628,080 → (x2,667,632)13,338,390 (x△1,257,984)△6,289,69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체교사(직접채용) (x1,749,384)4,606,712 → (x3,007,368)7,919,402 (x1,257,984)3,312,690
		특화보육 지원(자체)	45,856,718	46,106,718	2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호봉인상 0 → 250,000 (250,000)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2,476,310	2,476,310	-	(100-307-05) 민간위탁금 ◦관리운영비 176,705 → 173,705 (△3,000) (100-201-02) 공공운영비 ◦보험금 0 → 3,000 (3,000)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349,876	4,395,427	45,55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4명) 1,582,163 → 1,616,937 (34,774) · 상담전문요원(1명) 490,063 → 500,840 (10,777)
		보육주간 운영	49,000	100,000	51,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보육 유공자 표창 1,000 → 7,000 (6,000) (100-201-03) 행사운영비 ◦보육주간 행사 개최 25,000 → 70,000 (4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아이 발달 지원 센터 운영	1,499,910	1,499,910	-	(100-307-05) 민간위탁금 ◦관리운영비 130,745 → 96,745 (△34,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0 → 34,000 (34,000)
		어린이집 보육 교사 연수지원	-	1,050,000	1,0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0 → 1,050,000 (1,050,000)
	(일반회계) 보육시설 확충		(×702,000) 1,803,000	(×702,000) 1,855,000	(×-) 52,000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750,000	802,000	5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지원 0 → 52,000 (52,000)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32,158,556) 147,869,775	(×32,158,556) 147,365,245	(×-) △504,530	
	(일반회계)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23,578,504) 60,290,151	(×23,578,504) 60,054,371	(×-) △235,780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1,514,000	1,278,220	△235,780	※세부사업명 변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및 부모 자조모임 지원 →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100-307-05) 민간위탁금 ◦부모 자조모임 지원 115,780 → 0 (△115,7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모 자조모임 지원 120,000 → 0 (△120,000)
	(일반회계)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7,447,552) 79,846,068	(×7,447,552) 80,128,568	(×-) 282,50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5,740,560) 34,421,752	(×5,740,560) 34,704,252	(×-) 282,5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종사자 복지포인트 0 → 282,500 (282,50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1,132,500) 7,733,556	(×1,132,500) 7,182,306	(×-) △551,25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102,500) 5,087,454	(×1,102,500) 4,536,204	(×-) △551,25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일반형 · 리모델링비 (x382,500) 2,011,746 → (x382,500) 1,565,496 (△446,25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융합형 · 리모델링비 (x90,000) 768,708 → (x90,000) 663,708 (△105,000)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317,812,207) 670,436,194	(×317,812,207) 670,779,194	(×-) 343,000	
	(일반회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312,652,870) 655,262,642	(×312,652,870) 655,605,642	(×-) 343,0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8,474,740	98,737,740	263,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생활환경개선 지원(도배, 장판 등) 0 → 39,000 (39,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생활환경개선 지원(도배, 장판 등) 0 → 224,000 (224,000)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4,384,043	4,464,043	8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멘토링 지원 0 → 80,000 (80,000) ▸보육원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0 → 10,000 (10,000)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사업 0 → 70,000 (70,000)
(가족다문화담당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89,023,726) 251,638,518	(×89,011,000) 251,642,667	(×△12,726) 4,149	
	(일반회계)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3,711,403) 14,975,932	(×3,698,677) 14,954,722	(×△12,726) △21,210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1,400,328) 5,652,626	(×1,387,602) 5,631,416	(×△12,726) △21,21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족상담인력 (×610,848)1,018,080 → (×598,122)996,870 (△21,210)
	(일반회계)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5,713,636	5,638,995	△74,641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149,282	74,641	△74,641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글로벌인턴 인건비 130,762 → 65,381 (△65,381) (100-201-01) 사무관리비 ◦글로벌인턴 선발 및 교육 운영 18,520 → 9,260 (△9,260)
	(일반회계) 다문화 건강가정		(×5,938,832) 23,780,867	(×5,938,832) 23,880,867	(×-) 1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성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	100,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결혼이민자 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등 0 → 55,000 (55,0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프로그램 0 → 45,000 (45,000)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31,704) 16,009,717	(×31,704) 14,593,130	(×-) △1,416,587	
	(일반회계)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11,866,541	10,619,954	△1,246,587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3,061,042	1,814,455	△1,246,587	(100-201-01) 사무관리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2,952,042 → 1,705,455 (△1,246,587)
	(일반회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31,704) 4,143,176	(×31,704) 3,973,176	(×-) △170,000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2,770,200	2,600,200	△1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2,248,900 → 2,308,900 (60,000) ◦중장년 1인가구 '동행상담사' 운영 230,000 → 0 (△230,000)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73,502) 895,383	(×73,502) 988,383	(×-) 93,000	
	(일반회계) 아동복지센터운영		(×73,502) 895,383	(×73,502) 988,383	(×-) 93,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736,379	829,379	93,000	(100-401-01) 시설비 ◦시설 기능보강 0 → 93,000 (93,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x54,938,986) 324,103,463	(x54,938,266) 336,476,936	(x△720) 12,373,473	+ 36건 13,641,300 △ 5건 1,267,827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x70,250) 28,195,146	(x70,250) 28,320,039	(×-) 124,893	
	(일반회계) 노동자 복지 증진		(x50,000) 16,840,621	(x50,000) 16,236,514	(×-) △604,107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 290,138	(×-) 400,138	(×-) 11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노동복지 프로그램 사업비 187,188 → 293,738 (106,550) ※ 재취업아카데미 사업 확대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시설개보수비 21,000 → 24,450 (3,450) ※ 재취업아카데미 교육기자재 구입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347,182	240,000	△107,182	(100-370-05) 민간위탁금 ◦강북 노동자 복지관 운영 343,182 → 236,551 (△106,631)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집기 및 도서관 장서구매 등 4,000 → 3,449 (△55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5,590,486	(×-) 6,040,486	(×-) 4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도심권 및 동남권 센터 운영 1,176,151 → 1,367,787(191,636) ◦서남권 및 동북권 센터 운영 1,440,544 → 1,698,908(258,36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5,080	2,478,000	△597,080	(100-370-05) 민간위탁금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5,080 → 2,478,000 (△597,08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4,295,971	(×-) 4,395,971	(×-)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형 유급병가 대시민 홍보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 등 75,000 → 175,000 (100,000)
		전태일기념관 운영	1,227,845	668,000	△559,845	(100-370-05) 민간위탁금 ◦전태일기념관 운영 1,212,845 → 653,000 (△559,845)
	(일반회계)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x20,250) 1,321,525	(x20,250) 2,050,525	(×-) 729,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967,000	(×-) 1,696,000	(×-) 729,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967,000 → 1,696,000 (729,000)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47,166,563	(×-) 47,764,563	(×-) 598,000	
	(일반회계) 소상공인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		(×-) 47,166,563	(×-) 47,764,563	(×-) 598,0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16,821,876	(×-) 17,021,876	(×-) 2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 500,000 → 700,000 (200,00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 1,491,506	(×-) 1,889,506	(×-) 398,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자문회의 및 푸드트럭 풀 운영비 3,000 → 1,000 (△2,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516,548 → 916,548 (400,000)
(상권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x15,760,220) 55,469,868	(x15,760,220) 66,290,668	(×-) 10,773,300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 지원		11,156,500	19,305,800	8,149,300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502,000	2,082,800	1,580,8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자치구 지원 500,000 → 2,080,800 (1,580,800)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0	4,068,500	4,068,500	(100-201-01) 사무관리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0 → 10,000 (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0 → 4,058,500 (4,058,50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0	2,500,000	2,50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25개 자치구) 0 → 2,500,000 (2,500,000)
	(일반회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x15,760,220) 44,313,368	(x15,760,220) 46,937,368	(×-) 2,624,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1,821,758	13,821,758	2,0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2023년 추가공모분(컨설팅, 현장실태조사 등) 0 → 13,000 (1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23년 추가 공모분 0 → 1,987,000 (1,987,00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x928,266) 1,283,938	(x928,266) 1,667,938	(×-) 38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283,938 → 1,667,938 (384,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975,000	1,215,000	24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년 디지털 전통시장(계속 2년차) 0 → 240,000 (240,000)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	209,000	209,000	-	※ 상임위 지적에 따른 사업명 변경 : 전통시장 육성사업 →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x253,259) 2,474,321	(x253,259) 2,471,321	△3,000	
	(일반회계) 소비자 권익 보호		(×253,259) 2,474,321	(×253,259) 2,471,321	△3,00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22,900) 890,780	(×222,900) 887,780	△3,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 4,500 → 1,500 (△3,000)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9,981,000) 18,831,564	(×9,981,000) 19,515,564	(×-) 684,000	
	(일반회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9,981,000) 18,103,564	(×9,981,000) 18,787,564	(×-) 684,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12,971	2,996,971	684,000	(100-401-01) 시설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이전비용 0 → 130,000 (13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시설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0 → 554,000 (554,000) ※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재산관리관 변경(뷰티패션산업과→공정경제담당관)에 따른 증액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x28,634,597) 97,282,420	(x28,634,597) 97,479,420	(×-) 197,000	
	(일반회계) 도시농업육성 지원		(×204,797) 5,938,651	(×204,797) 6,135,651	(×-) 197,000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	(×-) 0	(×-) 50,000	(×-) 5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비 0 → 50,000 (50,000)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 0	(×-) 147,000	(×-) 147,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운영비 0 → 147,000 (147,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서울농업 육성			(x239,660) 2,560,179	(x238,940) 2,559,459	(x△720) △720	
	(일반회계)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x136,775) 1,283,157	(x136,055) 1,282,437	(x△720) △720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	80,000	80,000	-	※ 상임위 지적에 따른 사업명 변경 :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X2,160) 2,160	(x1,440) 1,440	(x△720) △720	(100-202-01) 국내여비 ◦ 소득조사자 출장여비 360 → 240 (△120) ※ 내시액변경 : 국비 가내시 변경 반영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2500(2022.11.10.)호] (100-301-14) 기타보상금 ◦ 경영기록장 기록보상금 1,800 → 1,200 (△600) ※ 내시액변경 : 국비 가내시 변경 반영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2500(2022.11.10.)호]

▢ 비상기획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상기획관			(x734,944) 2,860,829	(x734,944) 3,185,629	(×-) 324,800	[+ 3건 324,800 [△ 0건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x734,944) 2,714,934	(x734,944) 3,039,734	(×-) 324,800	
	(일반회계)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 662,430	(×-) 987,230	(×-) 324,8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 65,200	(×-) 310,000	(×-) 244,800	(100-201-03) 행사운영비 ◦서울수복기념행사 ·장비전시 등 시민문화행사 30,000 → 239,800 (209,800) ◦주한미군 가족친화행사 0 → 35,000 (35,000)
		시민 안보의식 함양	(×-) 175,410	(×-) 255,410	(×-) 8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 ·전후세대 안보견학 104,810 → 184,810 (80,000) - 버스임대료 32,760 → 59,150 (26,390) - 이용료, 체험비 등 31,250 → 63,550 (32,300) - 식비, 도서구입비 32,500 → 49,200 (16,700) - 안전요원 인건비 6,300 → 10,300 (4,000) - 현수막, 초청장, 팜플렛 등 2,000 → 2,610 (610)

▢ 디지털정책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디지털정책관			(×716,251) 146,605,283	(×716,251) 158,786,283	(×-) 12,181,000	+ 13건 12,181,000 △ 0건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18,566,391	21,370,391	2,804,000	
	(일반회계)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15,439,140	18,243,140	2,804,000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7,797,247	7,997,247	200,000	(100-306-01) 출연금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7,797,247 → 7,997,247 (200,000) 인건비 200,000 ※ 예비비로 편성 조건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1,308,502	1,608,502	300,000	(100-401-01) 시설비 ◦스마트폴 특화서비스 추진 0 → 300,000 (300,000)
		메타버스 서울 추진	1,009,953	2,813,953	1,804,000	(100-207-02) 전산개발비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 700,296 → 2,340,850 (1,640,554)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 감리 49,657 → 213,103 (163,446)
		주요기반시설 EMP 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	0	500,000	5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 등 0 → 20,000 (20,000) (100-201-01) 연구용역비 ◦주요기반시설 EMP 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 0 → 480,000 (480,000)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15,050,302	15,617,302	567,000	
	(일반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2,498,683	3,065,683	567,000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1,805,450	2,081,450	276,000	(100-201-02) 공공운영비 ◦기존 민관융합데이터 공급 및 운영 854,000 → 1,130,000 (276,000)
		디지털 시장실 운영	693,233	984,233	291,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서비스 안정화, 기능개선, 콘텐츠 개발/개선(5종), 상용SW관리(5종) 690,633 → 981,633 (291,000)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8,286,948	8,606,948	320,000	
	(일반회계)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6,614,483	6,934,483	32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드론공간정보 운영	212,000	532,000	3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및 자문수당 2,000 → 6,000 (4,000) ◦보행약자를 위한 실감형 공간정보 구축 200,000 → 216,000 (16,000) ◦드론 신기술 및 실증사업 추진 0 → 100,000 (100,000) (100-207-02) 전산개발비 ◦S-Map 플랫폼 기반 3차원 드론길 시범 구축 0 → 200,000 (200,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30,622,964	38,372,964	7,750,000	
	(일반회계)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17,125,759	24,455,759	7,330,000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3,393,411	3,693,411	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0 → 300,000 (300,000) ※ 공모사업 추진 조건
		지능형 CCTV 고도화	2,174,800	9,204,800	7,03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등(추가분) 0 → 855,000 (855,000) 관악구 285,000 노원구 570,000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등(추가분) 0 → 6,175,000 (6,175,000) 종로구 475,000 성동구 200,000 중랑구 750,000 성북구 950,000 강북구 475,000 도봉구 675,000 강서구 475,000 마포구 475,000 동작구 475,000 송파구 1,225,000 ※ 시구 5:5 매칭, 설치장소 서울시와 사전 협의 조건
	(일반회계) 정보보호체계 구축		5,562,040	5,661,040	99,000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2,431,390	2,530,390	99,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구축 0 → 99,000 (99,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7,935,165	8,256,165	321,000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7,935,165	8,256,165	321,000	(100-401-01) 시설비 ◦와이파이 설치(동작구) 0 → 321,000 (321,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716,251) 53,553,587	(×716,251) 54,293,587	(×0) 740,000	
	(일반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12,158,287	12,648,287	490,000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3,674,332	4,164,332	49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데이터센터 간 전용통신망 구축 0 → 240,000 (24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데이터센터 전용 DNS시스템 신규 구축 0 → 250,000 (250,000)
	(일반회계) 청사유지관리		12,969,853	13,219,853	250,000	
		데이터센터 청사 시설 유지관리	3,254,213	3,504,213	250,000	(100-401-01) 시설비 ◦구조진단 용역 0 → 100,000 (100,000)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0 → 150,000 (150,000)

▢ 미래청년기획단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미래청년기획단			111,969,469	113,719,469	1,750,000	+ 5건 1,750,000 △ 0건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111,817,631	113,567,631	1,750,000	
	(일반회계)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2,330,061	12,480,061	150,000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85,193	685,193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522,500 → 622,500 (100,000) ◦청년정책 소통 활성화 298,500 → 398,500 (100,000)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250,000	300,000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미래인재 인재풀 확대 및 역량강화 등 230,000 → 280,000 (50,000)
	(일반회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96,867,568	98,467,568	1,600,000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030,000	1,530,000	5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립은둔청년 프로그램 운영 1,000,000 → 1,500,000 (500,000)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3,702,264	4,702,264	1,000,000	(100-401-01) 시설비 ◦서울 성북청년센터(오랑) 조성비 0 → 977,008 (977,008) (100-401-02) 감리비 ◦서울 성북청년센터(오랑) 조성비 0 → 22,992 (22,992)
		천호지하차도 공간조성	0	100,00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천호지하차도 활용 수요조사 및 기본구상 등 0 → 100,000 (100,000)

▢ 기획조정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획조정실			1,048,164,311	988,399,734	△59,764,577	+ 4건 1,566,277 △ 6건 61,330,854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102,410,009	92,690,009	△9,720,000	
	(일반회계) 시정 연구기능 강화		59,254,606	49,284,606	△9,970,000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94,940	124,940	30,000	(100-202-03) 국외업무여비 ◦해외 현장시찰 0 → 30,000 (30,00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57,665,674	47,665,674	△10,000,000	(100-201-05) 공립대학운영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57,665,674 → 47,665,674 (△10,000,000)
	출연(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43,155,403	43,405,403	25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	250,000	250,000	(100-306-01) 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0 → 250,000 (250,000)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3,877,000	2,277,000	△1,600,000	
	(일반회계) 시정성과주의제고		3,877,000	2,277,000	△1,600,000	
		기관운영경비	3,600,000	2,000,000	△1,6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긴급현안 업무추진 급량비 등 2,000,000 → 450,000 (△1,550,000) (100-202-01) 국내여비 ◦부서별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지원 100,000 → 50,000 (△50,000)
(예산담당관) 일반예산(예비비)			166,313,690	135,082,836	△31,230,854	
	(일반회계) 예비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59,306,050	128,122,946	△31,183,104	
		예비비(일반회계)	159,306,050	128,122,946	△31,183,104	(100-801-01)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139,306,050 → 108,122,946 (△31,183,104)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도시개발)		6,013,346	5,965,596	△47,750	
		예비비	6,013,346	5,965,596	△47,750	(205-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6,013,346 → 5,965,596 (△47,75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담당관)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417,574,361	400,210,638	△17,363,723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142,974,361	144,110,638	1,136,277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28,491,104	129,627,381	1,136,277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28,491,104 → 129,627,381 (1,136,277)
	(도시개발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도시개발특별회계)		274,600,000	256,100,000	△18,5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274,600,000	256,100,000	△18,500,000	(205-704-01) 예탁금 ◦여유자금 예탁 274,600,000 → 256,100,000 (△18,500,000)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342,672,715	342,822,715	150,000	
	(일반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573,681	723,681	150,00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88,200	238,200	150,000	(100-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관리 컨설팅 0 → 150,000 (150,000)

☐ 소방재난본부

(단위 : 천원)

과목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실본부국명			(소24,439,131) (x3,754,377) 1,915,064,625	(소24,439,131) (x3,754,377) 1,916,264,625	(소0) (x0) 1,200,000	┌ + 13건 3,977,000 └ △ 2건 △2,777,000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x868,527) 71,885,758	(x868,527) 72,958,758	(x0) 1,073,000	
	(소방특별회계) 직무환경 개선		31,280,378	32,353,378	1,073,000	
		가산119안전센터 신설	0	100,000	100,000	(214-401-01) 시설비 ◦가산119안전센터 유치관련 타당성 조사 0 → 100,000 (100,000)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11,277,580	12,803,580	1,526,000	(214-401-01) 시설비 ◦소방청사 환경개선 1,852,071 → 3,227,071 (1,375,000) ‣청사재배치 등(서대문) 778,000 ‣수직공간 증축공간재구성(서대문) 319,000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서대문) 98,000 ‣정문 및 민원실 청사재배치(도봉) 180,000 (214-401-02) 감리비 ◦청사재배치 감리비 0 → 16,000 (16,000) ‣청사재배치 등(서대문) 10,000 ‣수직공간 증축공간재구성(서대문) 6,0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청사 환경개선 161,647 → 296,647 (135,000) ‣청사재배치 등(서대문) 55,000 ‣정문 및 민원실 청사재배치(도봉) 20,000 ‣개인장비보관함 교체(구로) 60,000 ※ 청사재배치등(서대문) - 공유재산심의 조건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행정용품 구입	585,598	735,598	150,0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집기류 교체 427,505 → 577,505 (150,000) ‣출동대원 노후 집기비품 교체(광진)150,000
		예비비	2,863,751	2,160,751	△703,000	(214-801-01) 예비비 ◦예비비 2,863,751 → 2,160,751 (△703,000)
(재난대응과)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x86,500) 24,911,237	(x86,500) 25,816,237	(x0) 905,000	
	(소방특별회계)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		(x86,500) 13,206,476	(x86,500) 14,111,476	(x0) 905,000	

(단위 : 천원)

과목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3,987,488	4,017,488	30,000	(214-401-01) 시설비 ◦다목적 훈련장 구조안전진단(관악) 0 → 30,000 (30,000) ‣다목적 훈련장 구조안전진단(관악) 30,000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4,857,142	5,732,142	875,0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급장비 보강(18종 1,004점) 2,113,530 → 2,988,530 (875,000) ‣가슴압박장치 25대 구매 35,000*25대 875,000
(예방과)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x8,100) 3,410,837	(x8,100) 3,560,837	150,000	
	(소방특별회계)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x8,100) 3,410,837	(x8,100) 3,560,837	150,000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285,160	1,435,160	150,000	(214-207-01) 연구용역비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 저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0 → 150,000 (150,000) ※ 사전절차 이행조건
(안전지원과) 소방활동기반 강화			(x2,242,000) 83,640,660	(x2,242,000) 82,712,660	(x0) △928,000	
	(소방특별회계)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강화		(x332,000) 47,655,229	(x332,000) 45,881,229	(x0) △1,774,000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8,612,035	16,538,035	△2,074,0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진압장비 등 교체 및 보강 3,978,033 → 1,904,033 (△2,074,000) ‣질식소화덮개 구매(15개*500 75,000) ‣관통식 관창 구매(13개*15,440 200,000) ‣대원탈출장비 감액(1,620개*1,450 △2,349,000)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관리	(x258,000) 941,060	(x258,000) 1,241,060	(x0) 300,000	(214-201-01)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516,000 → 816,000 (300,000)
	(소방특별회계) 재난교육 및 훈련		742,451	1,588,451	846,000	
		시민안전교육 강화	587,425	1,433,425	846,000	(214-401-01) 시설비 ◦소방안전교실 증축개선(강남) 0 → 492,600 (492,600) (214-401-02) 감리비 ◦소방안전교실 증축개선(강남) 0 → 7,400 (7,4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심폐소생교육 장비 구매 0 → 346,000 (346,000)

☐ 경제정책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제정책실			(×7,430,146) 679,653,596	(×6,194,855) 684,895,792	(×△1,235,291) 5,242,196	ㄱ + 26건 8,394,500천원 ㄴ △ 4건 △3,155,304천원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135,497,405	136,977,405	1,480,000	
	(일반회계)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67,185,001	68,665,001	1,480,000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76,400	3,726,400	6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1,300,000 → 1,650,000 (350,000) ◦중소기업 관련 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0 → 300,000 (300,000)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645,600	56,475,600	830,000	(100-306-01) 출연금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55,645,600 → 56,475,600 (830,000) ‣금천의류제조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0 → 480,000 (480,000)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인턴십 지원 0 → 150,000 (150,000) ‣중소기업 ESG 컨설팅 0 → 200,000 (200,000)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4,361,335) 254,569,283	(×3,126,044) 252,947,979	(×△1,235,291) △1,621,304	
	(일반회계) 사회적 일자리 제공		(×4,361,335) 179,324,806	(×3,126,044) 177,153,502	(×△1,235,291) △2,171,304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86,200,000	86,200,000	-	※ 통계목 신설, 금액 변경, 부기명 수정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안심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73,652,208 → 56,754,256 (△16,897,952) ‣ 자치구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 자치구 안심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투출기관 안심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0 → 16,897,952 (16,897,95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194,335) 4,010,275	(×959,044) 1,838,971	(×△1,235,291) △2,171,30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수행사업 사업비 (×2,194,335) 4,010,275 → (×959,044) 1,838,971 ((×△1,235,291) △2,171,304)
	(일반회계)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57,961,179	58,311,179	3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757,707	19,107,707	35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 남부캠퍼스 이전 타당성 용역 0 → 100,000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직업훈련비 14,606,389 → 14,856,389 (250,000)
	(일반회계)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17,283,298	17,483,298	200,000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1,900,000	1,900,000	-	※ 부기명 수정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금 1,900,000 → 1,900,000(-) ‣ 공무직(46명)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금 →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금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2,245,000	2,445,000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광역일자리카페 운영(7개소) 1,070,000 → 1,270,000 (200,000) ‣ 마포구 광역일자리카페 - 청년취업지원 188,000 → 388,000 (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창업정책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80,000) 41,188,739	(×80,000) 41,508,739	(x-) 320,000	
	(일반회계)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80,000) 41,188,739	(×80,000) 41,508,739	(×-) 320,000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504,220	16,704,220	2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창업허브 운영 16,040,220 → 16,240,220 (200,000) ▸서울청년IT기업인 포럼 0 → 200,000 (200,000)
		서울창업카페 운영	152,550	152,550	-	**※ 통계목 신설 및 금액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창업카페 임차료 등 32,550→ 23,130 (△9,420) (100-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납부 0 → 9,420 (9,42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1,430,185	1,550,185	12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추진 650,000 → 750,000 (100,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780,185 → 800,185 (20,000)
(뷰티패션산업과) 뷰티패션산업 활성화			46,223,917	46,789,917	566,000	
	(일반회계) 뷰티패션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46,223,917	46,789,917	566,000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2,022,517	2,322,517	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 0 → 300,000 (3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745,840	1,745,840	-	**※ 부기명 수정** (100-201-01) 사무관리비 ◦홍보 및 회의 운영 등 28,500 → 28,500(-) ‣거버넌스 운영 → 홍보 및 회의 운영 등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5,321,879	5,621,879	30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운영 4,643,879 → 4,943,879 (300,000) ‣서울형 산업 디지털전환(IDX) 추진 0 → 300,000 (300,000)
		스마트앵커 운영	8,190,115	7,676,115	△514,000	(100-307-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 688,000 → 134,000 (△554,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스마트앵커 자치구 협동화 사업비 300,000 → 340,000 (40,000) ‣패션봉제 상인역량 강화(중랑구) 0 → 40,000 (40,000)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4,207,500	4,807,500	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2,000,000 → 2,600,000 (600,000)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63,094	63,094	-	**※ 통계목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브랜드 육성 관리비 10,000 → 15,000 (5,000) (100-401-01) 시설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원상복구비 53,094 → 48,094 (△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뷰티도시 서울 추진	3,360,000	3,640,000	28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뷰티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 180,000 → 430,000 (250,000) ◦ 뷰티도시서울 홍보 90,000 → 68,000 (△22,000)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18,000 → 10,000 (△8,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 2,320,000 → 2,470,000 (150,000) (100-401-01) 시설비 ◦ 뷰티허브 조성 설계비 0 → 60,000 (6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뷰티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250,000 → 100,000 (△150,000)
		뷰티산업육성 행사 추진	1,500,000	1,100,000	△4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서울뷰티위크 개최 1,480,000 → 1,080,000 (△400,000)
		DDP 쇼룸	365,434	365,434	-	**※ 통계목 신설, 금액 변경, 부기명 수정**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DDP 쇼룸 운영 등 365,434 → 145,923 (△219,511) ‣ DDP 쇼룸 운영 → DDP 쇼룸 운영 등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DDP 쇼룸 구축 설계비 0 → 219,511 (219,51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 구축			32,706,337	35,043,837	2,337,500	
	(일반회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21,098,937	23,436,437	2,337,50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002,000	2,189,500	1,187,5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1,000,000 → 2,187,500 (1,187,500)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국가직접지원)	350,000	500,000	1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서울드라마어워즈 지원 350,000 → 500,000 (1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285,916	3,285,916	1,00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e스포츠 활성화 및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2,285,916 → 3,285,916 (1,000,000)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1,277,800	1,277,800	-	**※ 통계목 변경**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상상비즈 아카데미 시설 및 교육 운영 1,083,000 → 1,065,800 (△17,2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교육용 집기 구매 112,500 → 129,700 (17,200)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협력 추진			8,533,007	8,753,007	220,000	
	(일반회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6,860,314	6,980,314	120,000	
		도시외교 역량강화	373,600	493,600	1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도시외교자문단, 도시외교 아카데미 운영 9,600 → 29,600 (20,000) ◦통역부스 운영, 통번역비 등 35,000 → 85,000 (50,000) ◦국제교류 업무추진 관련 물품제작 등 15,000 → 65,000 (50,000)
	(일반회계) 세계도시와 우수정책 공유		1,672,693	1,772,693	100,000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55,400	155,400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 국제협력페스티벌 0 → 100,000 (100,000)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활성화			(×1,412,000) 39,378,329	(×1,412,000) 41,078,329	1,7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캠퍼스타운 조성		(×1,412,000) 36,573,329	(×1,412,000) 38,273,329	1,700,000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081,303	2,281,303	200,000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낙성대동 거점센터Ⅰ 운영 198,000 → 348,000 (150,000) ◦창업 연계 성장지원 프로그램 192,000 → 212,000 (20,000) ◦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 397,763 → 427,763 (3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1,500,000	3,000,000	1,500,000	**※ 금액 변경, 부기명 수정**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운영 1,200,000 → 2,400,000 (1,200,000) ◦기타 운영비용 등 300,000 → 600,000 (300,000) ‣기타 운영비용, 전담직원 인건비 등 → 기타 운영비용 등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 추진	250,000	250,000	-	**※ 부기명 수정** (205-201-01) 사무관리비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 250,000 → 250,000(-)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 추진 →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
		이화여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600,000	1,600,000	-	**※ 통계목 변경**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all-set 창업패키지 300,000 → 0 (△300,000)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창업공간 조성 600,000 → 900,000 (300,000)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8,863,426	9,103,426	240,000	
	(일반회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8,863,426	9,103,426	240,000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1,149,680	1,199,680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글로벌 미래도시 산업단지 경제활성화 포럼 0 → 50,000 (50,000)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97,200	237,200	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G밸리 홍보마케팅 추진 80,000 → 120,000 (40,000)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1,076,630	1,226,630	15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시설개선 0 → 150,000 (150,000)

☐ 복지정책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복지정책실			(x5,207,202,813) 9,946,783,962	(x5,203,207,123) 9,897,739,515	(x△3,995,690) △49,044,447	+ 41건 25,964,689 △ 21건 75,009,136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x1,719,762,274) 3,272,922,776	(x1,719,697,758) 3,263,083,604	(x△64,516) △9,839,172	+ 4건 689,860 △ 3건 10,529,032
	(일반회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x10,187,346) 139,078,648	(x10,122,830) 139,524,616	(x△64,516) 445,968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x64,516) 129,032	(x-) -	(x△64,516) △129,032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x64,516)129,032 → (x0)0 [(△x64,516)△129,032]
		보훈단체 지원	3,487,000	3,912,000	42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활동 지원 2,489,400 → 2,769,400(280,000)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10,000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50,000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30,000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30,000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50,000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20,000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10,000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30,000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50,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530,800 → 645,800(115,000)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23,000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23,000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23,000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23,00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특별시지부 2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9혁명 국민문화제 240,000 → 270,000(30,000)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359,600	509,600	15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건비 207,600 → 255,600(48,000) ◦운영비 17,000 → 27,000(1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사업비 135,000 → 227,000(92,000)
	(일반회계)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x751,860) 23,439,265	(x751,860) 13,088,125	(x-) △10,351,140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919,209	968,069	48,86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 202,194 → 251,054(48,860) 사회복지법인 지원 사업 48,86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x751,860) 16,884,844	(x751,860) 6,884,844	(x-) △10,000,000	(100-306-01) 출연금 ◦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x751,860)16,884,844 → (x751,860)6,884,844[(x0)△1,0000,000)]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601,039	3,201,039	△4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40,553 → 575,750(△64,803) ◦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1,272 → 148,050(△33,222) ◦ 사회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779,214 → 2,477,239(△301,975)
	(일반회계)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76,329,227	76,395,227	66,000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5,788,567	75,854,567	66,000	(100-306-01) 출연금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5,788,567 → 75,854,567(66,000) 정책연구 예산 100,000 찾동공공복지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4,000 통합사례관리활성화 지원 △30,000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1,000,842,969	1,005,574,609	4,731,640	┌ + 1건 4,731,640 └ △ 0건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000,730,969	1,005,462,609	4,731,64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7,816,425	52,548,065	4,731,640	(100-702-01) 기금전출금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법정 전출금 47,816,425 → 52,548,065(4,731,64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적립금				
(안심소득추진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1,277,400	1,265,800	△11,600	+ 0건 △ 1건 11,600
	(일반회계)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1,277,400	1,265,800	△11,600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346,200	334,600	△11,6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정책홍보 268,000 → 256,400 (△11,600)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x32,440,056) 308,324,510	(x32,440,056) 311,281,767	(x-) 2,957,257	+ 4건 4,485,457 △ 4건 1,528,200
	(일반회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99,810,807	104,225,451	4,414,644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669,721	6,688,365	3,018,64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998,373 → 5,017,017 (3,018,644)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4,000천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옥상데크 (22,000천원)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1,000천원) 화원종합복지관-태양광 구조물 보수공사 (16,290천원) 화원종합복지관-팽창탱크 교체공사 (1,932천원) 궁동종합복지관 (64,601천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143,000천원) 중계종합사회복지관 (55,000천원) 공릉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 (130,000천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50,000천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차량지원 (15,000천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외벽STO공사 (186,631천원)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 (48,719천원)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8,665천원) 번5단지종합사회복지관 (16,519천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10,484천원) 자양종합사회복지관 (159,000천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100,000천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000천원)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강남종합사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리모델링 공사(1,540,000천원) 화원종합사회복지관-EHP냉난방기 공사 (189,599천원)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50,000천원) 태화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54,000천원)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8,504천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74,700천원) ※ 복지재단 타당성 이행 및 구비·법인자부담 확보조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5,293,310	96,689,310	1,396,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962,996 → 1,034,000 (71,00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34,313,785 → 34,934,019 (620,234) ·인건비 28,889,858 → 29,446,092 (556,234) ·기능특화사업비 384,000 → 448,000 (64,000) ◦임대아파트 외 복지관 57,663,185 → 58,367,947 (704,762) ·인건비 48,390,511 → 49,063,273 (672,762) ·기능특화사업비 448,000 → 480,000 (32,000)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인건비 (1,300,000천원)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노인기능특화 사업비 (32,000천원)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노인기능특화 사업비 (32,000천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노인기능특화 사업비 (32,000천원) ※ 기능특화사업 지원조건 충족 조건부
	(일반회계)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522,893	3,583,706	60,813	
		기부식품제공 사업 운영지원	2,901,054	2,961,867	60,81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1,905,995 → 1,966,808 (60,813)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초푸드뱅크,마켓 인건비 1,841,383 → 1,902,196 (60,813)
	(일반회계)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x32,440,056) 204,990,810	(x32,440,056) 203,472,610	(x-) △1,518,200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1,172,170	1,067,170	△10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350,300 → 245,300 (△105,000)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지원	99,931,947	99,941,947	1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찾동 복지분야 매뉴얼 제작,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10,000 → 20,000 (10,000)
		스마트플러그 지원	300,000	120,000	△18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스마트플러그 구매·설치 비용 300,000 → 120,000 (△180,000)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	6,940,800	5,897,600	△1,043,200	(100-201-01) 사무관리비 ◦고독사 예방 사업실태 및 만족도 조사 0 → 20,000 (2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6,652,800 → 5,702,400 (△950,400)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비 288,000 → 175,200 (△112,800)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지원	864,000	664,000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AI 대화서비스 이용료 및 전화 통신비, 운영비 등 864,000 → 664,000 (△200,00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x2,839,042,592) 3,757,090,033	(x2,837,993,837) 3,709,909,405	(x△1,048,755) △47,180,628	┌ + 10건 5,068,127 └ △ 4건 52,248,755
	(일반회계)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x3,288,068) 298,820,336	(x2,239,313) 271,971,581	(x△1,048,755) △26,848,755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248,858,000	223,858,000	△25,000,000	(100-301-01)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248,858,000 → 223,858,000 (△25,0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x3,233,068) 7,570,687	(x2,184,313) 5,521,932	(x△1,048,755) △2,048,755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X106,091)212,182 → (X83,785)167,570 [(△X22,306)△44,612]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X2,179,292)5,425,133 → (X1,194,765)3,503,834 [(△X984,527)△1,921,299]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X947,685)1,894,372 → (X905,763)1,811,528 [(△X41,922)△82,844]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129,000	4,229,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지교환 추진 200,000 → 300,000 (100,000) · 구로세무서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용역 0 → 100,000 (100,000) ※ 기술용역타당성 이행 조건부
		어르신 놀이터 조성	-	100,000	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어르신 놀이터 설치 1개소 0 → 100,000 (100,000) ※ 공모 조건부
	(일반회계)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 육성 등		(x2,713,319,279) 3,071,069,480	(x2,713,319,279) 3,046,569,480	△24,500,000	
		기초연금 지급	(x2,713,319,279) 3,068,664,427	(x2,713,319,279) 3,043,664,427	(x-) △25,0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x2,713,319,279)3,068,664,427 → (x2,713,319,279)3,043,664,427 [(△x-)△25,000,00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405,053	2,905,053	5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어르신 생활정보 매체 제공 100,000 → 200,000 (1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 115,000 → 315,000 (200,000) ◦ 어르신 선진지 견학 0 → 200,000 (200,000)
	(일반회계)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x35,591,348) 66,382,555	(x35,591,348) 66,402,555	(x-) 20,0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4,442,890	4,462,890	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만족도 조사 0 → 20,000 (20,000)
	(일반회계)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x3,000,000) 36,110,597	(x3,000,000) 36,310,597	(x-) 200,000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9,560,597	29,760,597	200,000	(100-308-11)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시립장사시설 관리 29,494,649 → 29,694,649 (200,000) ※ 고양시 매칭용역비 확보 조건부
	(일반회계)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x83,843,897) 284,707,065	(x83,843,897) 288,655,192	(x-) 3,948,12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2,569,424	42,709,424	14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지원 0 → 140,000 (140,000)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7,338,270	38,160,270	82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조리사 인건비 등 0 → 522,000 (522,000) ◦ 건강형 식사지원 200,088 → 500,088 (300,000)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0,183,885	11,455,885	1,27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7,250,099 → 8,459,699 (1,209,600)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249,600 → 312,000 (62,400) · 어르신 사회활동참여자(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49,600 → 312,000(62,40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6,405,065	8,249,192	1,844,127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등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확충				1,275,787 → 2,982,398 (1,706,611)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립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등 98,076 → 235,592 (137,516)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812,711	882,711	7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지원 200,000 → 250,000 (50,000) ※ 서울시 거주노인 대상 한정 및 공모 조건부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30,000 → 50,000 (20,000)
		VR 활용 독거어르신을 위한 경험디자인	200,000	-	△20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험디자인 공모사업 200,000 → 0 (△200,000) ・노인종합복지관 10개소 200,000 → 0 (△200,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46,216,392) 207,978,019	(x46,154,208) 209,190,251	(x△62,184) 1,212,232	[+ 8건 2,669,200 [△ 3건 1,456,968
	(일반회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x46,021,276) 204,466,486	(x45,959,092) 204,893,718	(x△62,184) 427,232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590,959	1,678,959	88,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1,150,959 → 1,238,959 (88,000) ・운영비 124,440 → 212,440 (88,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2,800,000	12,963,000	16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전적행동전문가 배치운영 0 → 163,000 (163,000)
		뇌병변 장애인 비젼센터 운영	1,800,000	1,650,000	△1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센터 운영비 1,500,000 → 1,350,000 (△150,000)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78,000	278,000	2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인식개선 미디어 교육 및 제작 0 → 200,000 (200,000)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X943,000) 2,174,000	(X389,216) 917,032	(X△553,784) △1,256,96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X943,000)2,174,000 → (X389,216)917,032 [(X△553,784)△1,256,968]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x219,000) 868,613	(x219,000) 818,613	(x-) △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2개소) (x219,000)868,613 → (x219,000)818,613 [(△x-)△50,000]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	200,000	200,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0 → 200,000 (200,000)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	-	250,000	2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0 → 250,000 (250,0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지원(지역)	-	(X75,600) 151,200	(X75,600) 151,200	(100-307-05)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지원 0 → (X75,600)151,200 [(X75,600)151,2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	(X416,000 832,000	(X416,000 832,000	(100-307-05)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 0 → (X416,000)832,000 [(X416,000)832,000]
	(일반회계)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3,121,300	3.906.300	785,00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121,300	3.906.300	78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031,000 → 3,816,000 (785,00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x459,626,068) 1,150,932,499	(x456,575,253) 1,148,140,834	(×△3,050,815) △2,791,665	┌ + 12건 6,209,965 └ △ 4건 △9,001,630
	(일반회계)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x20,380,023) 101,945,156	(x20,380,023) 103,685,156	(×-) 1,740,000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48,604,723	50,094,723	1,49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0 → 50,000 (50,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신규 법인시설 운영 0 → 240,000 (240,000) · 인건비 0 → 160,000 (160,000) · 운영비 0 → 80,000 (80,000) ◦종사자 추가지원 0 → 1,200,000 (1,200,000)
		맞춤형 중증장애인	(×306,904) 607,504	(×306,904) 757,504	(×-) 15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AI 데이터 라벨러 양성 사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자리 사업				0 → 150,000 (150,000)
		커리어플러스 센터 운영	3,053,059	3,153,059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3,053,059 → 3,153,059 (100,000) ※ 식물관리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비 조건부
	(일반회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x438,338,992) 1,016,029,514	(x435,338,992) 1,008,728,405	(×△3,000,000) △7,301,109	
		장애인자립 생활지원 및 역량 강화	2,345,359	2,557,359	212,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1,687,920 → 1,899,920 (212,000)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514,656) 15,088,241	(×514,656) 15,248,241	(×-) 16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신규형) 320,000 → 480,000 (160,000)
		장애인체육 시설 운영	4,117,457	4,601,866	484,409	(100-307-05) 민간위탁금 ◦운영비 338,068 → 449,482 (111,414)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영비 873,218 → 1,225,877 (352,65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영비 144,038 → 164,374 (20,336)
		장애인복지관 운영	88,434,599	85,534,599	△2,9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시립복지관 인건비 20,855,352 → 20,754,044 (△101,308) ◦시각장애인 디지털라이프 코디네이터 운영 0 → 100,000 (100,000) ※ 1년 한시지원 조건부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복지관 인건비(구립 및 법인) 55,687,440 → 52,788,748 (△2,898,692)
		장애인수어 통역센터 운영	8,944,566	9,170,159	225,59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아인쉼터 신규 운영(2개소) 0 → 64,593 (64,593)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아인쉼터 신규 조성(1개소) 0 → 161,000 (161,000) ※ 공모 및 지원단가 적용 조건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9,046,000) 18,667,468	(×7,046,000) 14,667,468	(×△2,000,000) △4,0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간활동 지원 바우처(국비사업) (x9,046,000)18,092,000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x7,046,000)14,092,000 [(△x2,000,000)△4,000,00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5,557,000) 11,114,000	(×4,557,000) 9,114,000	(×△1,000,000) △2,0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x5,557,000)11,114,000 → (x4,557,000)9,114,000 [(△x1,000,000)△2,000,000]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	75,084	591,973	516,88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 75,084 → 108,973 (33,889) · 신규 쉼터 운영 0 → 33,889 (33,889)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비(3개소) 0 → 483,000 (483,000)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x907,053) 12,289,268	(x856,238) 14,808,712	(x△50,815) 2,519,44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579,093	3,756,267	2,177,174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법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17개소 24개사업) 1,016,557 → 2,636,865 (1,620,308) ▸ 타당성 검토 완료(17개소 22개사업) 2,349,765 ▸ 타당성 검토 이행 조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0 → 219,600 (219,600) ·기쁜우리복지관 0 → 67,500 (67,5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시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8개소 17개사업) 123,531 → 1,010,104 (886,573) ▸ 타당성 검토 완료(7개소 11개사업) 387,104 ▸ 타당성 검토 이행 조건 ·영등포장애인복지관 0 → 354,000 (354,000)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0 → 100,000 (100,000)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 → 144,000 (144,000) ·시립발달,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 → 25,000 (25,000)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 평가 300,000 → 0 (△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5개소 8개사업) 139,005 → 109,298 (△29,707)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장애인체육 시설 기능보강	1,000,000	1,063,900	63,9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서부재활 체육센터 외 3개소 기능보강 280,000 → 343,900 (63,900)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133,756) 267,512	(×133,756) 647,512	(×-) 38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노후차량 교체(14개) 0 → 380,000 (380,000)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769,497) 1,538,997	(×718,682) 1,437,367	(×△50,815) △101,63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법인시설 기능보강(29개소) (x549,414)1,098,830 → (x475,164)950,330 [(△x74,250)△148,5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시립시설 기능보강(1개소) (x35,860)71,720 → (x21,560)43,120 [(△x14,300)△28,6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시설 기능보강(5개소) (x184,223)368,447 → (x221,958)443,917 [(x37,735)75,470]
	(일반회계)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8,802,561	19,052,561	250,000	
		장애인편의 증진기술지원 센터 운영	3,902,478	4,152,478	25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0 → 250,000 (250,000)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x244,922) 68,389,696	(x475,502) 70,267,185	(x230,580) 1,877,489	+ 2건 2,110,440 △ 2건 232,951
	(일반회계) 노숙인 자활지원		(x112,000) 43,059,950	(x112,000) 44,609,230	(x-) 1,549,280	
		거리노숙인 보호	(x112,000) 10,670,616	(x112,000) 10,570,616	(x-) △10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이동형 목욕차량 구매(1대) 250,000 → 150,000 (△100,00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6,961,734	8,611,014	1,649,280	(100-307-05) 민간위탁금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 3,256,320 → 4,905,600 (1,649,280)
	(일반회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x132,922) 25,329,746	(x363,502) 25,657,955	(x230,580) 328,209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426,813	293,862	△132,951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노숙인 자활시설 등 기능보강 39,095 → 0 (△39,095) ◦법인 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1개소) 0 → 28,030 (28,03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등 기능보강 387,718 → 0 (△387,718)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1개소) 0 → 30,840 (30,840)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1개소) 0 → 220,197 (220,197) ◦따스한채움터 1층 화장실 개보수 0 → 14,795 (14,795)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x132,922) 265,844	(x363,502) 727,004	(x230,580) 461,16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기능보강 (x73,874)147,748 → (x0)0 [(△x73,874)△147,748]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3개소) (x0)0 → (x30,250)60,500 [(x30,250)60,500]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5개소) (x0)0 → (x62,378)124,756 [(x62,378)124,756]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2개소) (x0)0 → (x19,553)39,106 [(x19,553)39,106]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1개소) (x0)0 → (x1,316)2,632 [(x1,316)2,632]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기능보강 (x59,048)118,096 → (x0)0 [(△x59,048)△118,09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3개소) (x0)0 → (x63,526)127,052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2개소) (x0)0 → (x102,205)204,410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1개소) (x0)0 → (x50,124)100,248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1개소) (x0)0 → (x34,150)68,300

☐ 도시교통실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도시교통실			(×121,772,400) 3,786,993,929	(×121,772,400) 3,866,770,229	(×-) 79,776,300	+ 44건, 121,244,400 △ 5건, 41,468,100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4,228,600) 1,666,481,155	(×4,228,600) 1,666,757,155	(×-) 276,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리계정)		(×4,228,600) 17,795,934	(×4,228,600) 18,057,034	(×-) 261,100	
		예비비(교통관리계정)	531,501	792,601	261,100	(202-801-01) 일반예비비 ◦ 교통관리계정 일반예비비 531,501 → 792,601 (261,1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분담금		146,542,635	146,357,535	△185,100	
		예비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7,635	832,535	△185,100	(210-801-01) 일반예비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017,635 → 832,535 (△185,1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1,941,545	2,141,545	200,000	
		5호선 직결화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	200,000	200,000	(201-401-01) 시설비 ◦ 5호선 직결화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0 → 200,000 (200,000)
(교통정책과) 재무활동			989,473,070	1,010,378,200	20,905,15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976,977,942	995,883,092	18,905,15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362,120,015	380,825,165	18,705,15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 362,120,015 → 380,825,165 (18,705,15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7,584,427	127,784,427	200,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27,584,427 → 127,784,427 (2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교통개선분담금계정)		3,600,000	5,600,000	2,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3,600,000	5,600,000	2,000,000	(202-704-01) 예탁금 ◦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3,600,000 → 5,600,000 (2,000,000)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85,107,000) 675,026,143	(×85,107,000) 714,792,143	(×-) 39,766,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85,107,000) 675,026,143	(×85,107,000) 714,792,143	(×-) 39,766,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0,778,000	49,958,000	29,180,000	(201-502-01) 출자금 ◦ 신풍역 6번 출구 E/S 설치 0 → 4,300,000 (4,300,000) ◦ 내방역 8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면목역 1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암사역 1,4번 출구 E/S 교체 0 → 1,000,000 (1,000,000) ◦ 문래역 6번 출구 E/S 설치 0 → 2,000,000 (2,000,000) ◦ 녹번역 3번 출구 E/S 설치 0 → 4,700,000 (4,700,000) ◦ 가산디지털단지역 E/V 설치 0 → 100,000 (100,000) ◦ 수유역 5번 출구 E/S 설치 0 → 3,850,000 (3,850,000) ◦ 노원역 10번 출구 E/S 설치 0 → 1,500,000 (1,500,000) ◦ 노원역 7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E/S 설치 0 → 80,000 (80,000) ◦ 신사역 4번출구 E/S 설치 0 → 1,200,000 (1,200,000) ◦ 길음역 10번 출구 E/S 설치 0 → 150,000 (150,000) ◦ 월곡역 5번 출구 E/S 설치 0 → 150,000 (150,000) ◦ 새절역 3번 출구 E/S 설치 0 → 2,100,000 (2,100,000) ◦ 선릉역 3,4번 출구 E/V 설치 0 → 600,000 (600,000) ◦ 제기역 1,5번 출구 E/S 설치 0 → 200,000 (200,000) ◦ 창동역 2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하계역 6번 출구 E/S 설치 0 → 2,000,000 (2,000,000) ◦ 사당역 12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홍제역 2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왕십리역 6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석계역 5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상봉역 내부 E/S 설치 0 → 100,000 (10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까치산역 4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상봉역 4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대치역 1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0 (1,000,000) ◦ 암사역 2,3번 출구 하부 E/S 설치 0 → 100,000 (100,000) ◦ 학동역 5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신정네거리역 2,4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상계역 내부 E/V 설치 0 → 2,750,000 (2,750,000) ◦ 태릉입구역 5번 출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95,880,783	89,983,783	△5,897,000	(201-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대체투자비 5,897,000 → 0 (△5,897,000)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	3,210,000	3,210,000	(201-502-01) 출자금 ◦ 광흥창역 5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100,000 (100,000) ◦ 암사역 캐노피 설치 0 → 250,000 (250,000) ◦ 장한평역 1,2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500,000 (500,000) ◦ 월드컵경기장역 3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1,230,000 (1,230,000) ◦ 신풍역 3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270,000 (270,000) ◦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200,000 (200,000) ◦ 상수역 2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100,000 (100,000) ◦ 수유역 캐노피 개선 0 → 250,000 (250,000) ◦ 강일역 2,3번 출구 캐노피 보강사업 0 → 10,000 (10,000) ◦ 청담역 12번 출구 캐노피 설치 0 → 300,000 (300,000)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	2,350,000	2,350,000	(201-502-01) 출자금 ◦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 설치 0 → 100,000 (100,000) ◦ 면목역~사가정역 환기구 개량사업 0 → 250,000 (250,000) ◦ 동일로 일대 공릉역~태릉입구역 지하철 환기구 및 출입구 개선공사 0 → 340,000 (34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뚝섬유원지역 고객대기실 설치 0 → 160,000 (160,000) ※ 시범사업 추진(조건부) ◦제기역 리모델링 설계변경 0 → 100,000 (100,000) ◦상계역 외벽 리모델링 0 → 300,000 (300,00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0 → 700,000 (700,000) ◦까치산역 5,6번 출구 신설 타당성 용역 0 → 200,000 (200,000) ◦수서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0 → 100,000 (100,000) ◦장지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0 → 100,000 (100,000)
		1호선 전동차 RFID 자동절환장치 설치	-	800,000	800,000	(201-502-01) 출자금 ◦1호선 전동차 RFID 자동절환장치 설치 0 → 800,000 (800,000)
		서울교통공사 화재 초동진화용 자동 소화패치 도입	-	700,000	700,000	(201-502-01) 출자금 ◦서울교통공사 화재 초동진화용 자동 소화패치 도입 0 → 700,000 (700,000)
		2,3호선 전동차 대용량 콘덴서 교체	-	500,000	500,000	(201-502-01) 출자금 ◦2,3호선 전동차 대용량 콘덴서 교체 0 → 500,000 (500,000)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전력감시시스템 구축	-	900,000	900,000	(201-502-01) 출자금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전력감시시스템 구축 0 → 900,000 (900,000)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	-	500,000	500,000	(201-502-01) 출자금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 0 → 500,000 (500,000)
		군자차량기지 유기용제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	500,000	500,000	(201-502-01) 출자금 ◦군자차량기지 유기용제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0 → 500,000 (500,000)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검지장치(바닥센서) 시스템 시범사업	-	2,500,000	2,500,000	(201-502-01) 출자금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검지장치(바닥센서) 시스템 시범사업 0 → 2,500,000 (2,500,000)
		6호선 IPM 개량사업	-	1,320,000	1,320,000	(201-502-01) 출자금 ◦6호선 IPM 개량사업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1,320,000 (1,320,000)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평가 및 운행지원시스템 개발	-	500,000	500,000	(201-502-01) 출자금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평가 및 운행지원시스템 개발 0 → 500,000 (500,000)
		승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안전문 가동문 감시시스템 구축	-	1,000,000	1,000,000	(201-502-01) 출자금 ◦승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안전문 가동문 감시시스템 구축 0 → 1,000,000 (1,000,000)
		지하철 공기질 관제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	33,000	33,000	(201-502-01) 출자금 ◦지하철 공기질 관제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0 → 33,000 (33,000)
		2호선 280량 객실의자 커버 교체	-	1,400,000	1,400,000	(201-502-01) 출자금 ◦2호선 280량 객실의자 커버교체 0 → 1,400,000 (1,400,000)
		구의~강변고가부 레일코팅	-	270,000	270,000	(201-502-01) 출자금 ◦구의~강변고가부 레일코팅 0 → 270,000 (270,000)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26,054,400) 626,921,666	(×26,054,400) 602,660,766	(×-) △24,260,9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26,054,400) 76,178,017	(×26,054,400) 78,578,017	(×-) 2,400,000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1,420,000	1,720,000	300,000	(202-401-01) 시설비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1,230,000 → 1,530,000 (300,000) ‣중랑구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0 → 300,000 (300,000)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	-	2,100,000	2,100,000	(202-401-01) 시설비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 0 → 2,100,000 (2,100,000)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군자역, 아차산역, 광나루역) 0 → 2,100,000 (2,1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개선		(×-) 540,043,649	(×-) 512,997,649	(×-) △27,046,000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483,810,800	451,664,800	△32,146,000	(202-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83,800,000 → 451,654,000 (△32,146,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29,000,000	31,600,000	2,600,000	(202-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적자업체 지원 25,000,000 → 27,600,000 (2,600,000)
		공항버스 한시 지원	0	2,500,000	2,500,000	(202-307-09) 운수업계보조금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 0 → 2,500,000 (2,500,000) ‣고용 유지를 위한 공항버스 재정지원 0 → 2,500,000 (2,500,000) ※ 1년 한시 조건부 (버스종사자 고용유지 지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 10,700,000	(×-) 11,085,100	(×-) 385,100	
		강변역 등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	185,100	185,100	(210-401-02) 감리비 ◦감리비 0 → 185,100 (185,100)
		상계3구역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용역	-	200,000	200,000	(210-401-01) 시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0 → 200,000 (200,000)
(미래첨단교통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1,050,000) 36,448,216	(×1,050,000) 37,248,216	(×-) 8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1,050,000) 36,447,216	(×1,050,000) 37,248,216	(×-) 800,000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확대	-	800,000	800,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마을버스 BIT 설치비 0 → 800,000(800,000) ※ 시구비 매칭 조건부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	484,400	484,400		※ 부기 수정 ◦감리비(5.5%적용) → 감리비)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4,819,400) 199,924,848	(×4,819,400) 203,154,848	(×-) 3,23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		(×4,819,400) 199,924,848	(×4,819,400) 203,154,848	(×-) 3,230,000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지원	1,826,849	1,926,849	100,000	(202-307-05) 민간위탁금 ◦교통문화교육원 휴게실 리모델링 0 → 100,000 (100,000)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지원	949,326	4,079,326	3,130,000	(202-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등 지원 949,326 → 4,079,326 (3,13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사업명 수정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지원 →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지원 ※ 부기 수정 ◦택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지원 → 택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등 지원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96,967,869	99,867,869	2,9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주차장관리계정)		96,967,869	99,867,869	2,900,000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44,261,999	45,761,999	1,500,000	(202-401-01) 시설비 ◦수서역 만남의 광장 조성 0 → 1,500,000 (1,500,000)
		내집주차장 조성사업(그린파킹)	4,377,550	4,377,550	-	※ 사업명 변경 그린파킹(Green Parking) → 내집주차장 조성사업(그린파킹)
		자치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3,710,000	4,610,000	900,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금호1가동 6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0 → 900,000 (900,000)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3,957,000	24,457,000	500,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모래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1,350,000 → 1,850,000 (500,000)
(주차계획과) 재무활동			200,600,000	197,700,000	△2,9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주차장관리계정)		200,600,000	197,700,000	△2,9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주차장관리계정)	200,600,000	197,700,000	△2,900,000	(202-704-01)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600,000 → 197,700,000 (△2,900,000)
(보행자전거과)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80,584,793	108,179,993	27,592,200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환경 개선		6,521,059	11,187,559	4,666,500	
		차 없는 거리 운영	1,708,059	1,368,059	△3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잠수교 차 없는 다리 운영 816,655 → 476,655 (△340,000)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4,253,000	9,259,500	5,006,500	(202-401-01) 시설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3,121,000 → 8,127,500 (5,006,5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동호로 일대 보행환경개선공사 0 → 475,000 (475,000) ‣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사업(봉우재로 142~180, 상봉로 48~90) 0 → 570,000 (570,000) ‣ 신월로 보행환경개선공사 0 → 475,000 (475,000) ‣ 오목로 보행환경개선 0 → 475,000 (475,000) ‣ 자양4동 양꼬치거리 주변 보행환경개선 0 → 760,000 (760,000) ‣ 자양2동 복개천길 보행환경개선 0 → 532,000 (532,000) ‣ 학교 통학로 보행환경개선 0 → 266,000 (266,000) ‣ 도봉구 해동로 41~덕릉로 51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비 0 → 475,000 (475,000) ‣ 중랑구 동일로 157길 일대 노후보행환경 개선사업 0 → 285,000 (285,000) ‣ 우이천로 332~308 보도확장 사업 0 → 218,500 (218,500) ‣ 곰달래로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0 → 475,000 (475,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관리계정)		27,525,058	48,539,708	21,014,650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8,431,934	29,494,684	11,062,750	(202-401-01)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등) 설치 등 0 → 9,845,848 (9,845,848) (202-401-01) 감리비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등) 감리 등 0 → 1,216,902 (1,216,902) ‣ 강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횡단보도 정비 0 → 475,000 (475,000) ‣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안전유도판, 바닥보행신호등 0 → 475,000 (475,000) ‣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위한 옐로카펫 설치 0 → 190,000 (190,000) ‣ 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475,000 (475,000) ‣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 스마트횡단보도) 0 → 632,700 (632,7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0 → 95,000 (95,000) ▸마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0 → 570,000 (570,000)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동작구2) 0 → 475,000 (475,000)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영등포) 0 → 71,250 (71,250)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0 → 95,000 (95,000) ▸보행신호 바닥신호등 설치 0 → 142,500 (142,500)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0 → 570,000 (570,000)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0 → 380,000 (380,000) ▸어린이보호구역내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 사업 0 → 95,000 (95,000)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성북구) 0 → 190,000 (190,000)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 → 475,000 (475,000) ▸교통안전 시설물 0 → 1,425,000 (1,42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0 → 665,000 (665,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중구) 0 → 475,000 (475,000) ▸중구 LED 바닥신호등 0 → 190,000 (190,000) ▸강북구 음성안내 및 바닥신호등 설치 0 → 285,000 (285,000)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 0 → 285,000 (285,000)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0 → 285,000 (285,000) ▸성북구 바닥형 보행신호등 0 → 285,000 (285,000)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0 → 570,000 (570,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송파) 0 → 526,300 (526,300)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0 → 475,000 (475,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190,000 (190,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000,000	15,901,900	9,901,900	(202-201-01) 사무관리비 ◦보호구역 실태조사·조성 0 → 1,000,000 (1,000,000) ▸서울시 맞춤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조성사업 0 → 1,000,000 (1,000,000) (202-401-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 0 → 8,901,900 (8,901,900)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사업 0 → 427,500 (427,500)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사업 0 → 285,000 (285,000)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 0 → 190,000 (190,000)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후 방호울타리 및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0 → 95,000 (95,000) ▸금나래초 외 5개소 LED 표지판 설치 0 → 95,000 (95,000) ▸은평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0 → 85,500 (85,500) ▸미끄럼 방지 포장(어린이 보호구역) 0 → 475,000 (475,000) ▸은평구 초등학교 주변 노면 디자인 쉬트(어린이 보호구역) 0 → 47,500 (47,500) ▸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유도판 설치 0 → 475,000 (475,000) ▸금천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0 → 665,000 (665,000) ▸성북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0 → 285,000 (285,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미끄럼방지포장 외) 0 → 285,000 (285,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안전유도판 외) 0 → 190,000 (190,000) ▸태양광 LED 안전표지 정비 사업 0 → 475,000 (475,000) ▸보호구역 노후시설정비 0 → 475,000 (475,000)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0 → 172,900 (172,9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미끄럼방지포장 외)(구로구) 0 → 190,000 (190,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안전유도판 외)(구로구)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95,000 (95,000) ‣신중초등학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선 0 → 570,000 (570,000) ‣어린이보호구역 보수사업(금천구) 0 → 142,500 (142,5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미끄럼방지포장 외)(서초구) 0 → 285,000 (285,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과속방지턱 외)(서초구) 0 → 190,000 (190,000)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정비 0 → 950,000 (950,000) ‣LED 발광형표지판 개선사업 0 → 285,000 (285,000) ‣창신초등학교 외 도로 교통안전표지 개선 0 → 285,000 (285,000) ‣LED 도로교통 표지판 0 → 95,000 (95,00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 0 → 114,000 (114,000) ‣미끄럼 방지 포장(어린이 보호구역) 0 → 190,000 (190,000)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0 → 787,000 (787,00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1,292,000	1,342,000	50,000	(202-401-01) 시설비 ◦성동구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0 → 50,000 (5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40,858,676	42,769,726	1,911,050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	3,775,150	5,216,200	1,441,050	(202-401-01) 시설비 ◦광진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0 → 250,800 (250,800) ※ 자치구비 확보 조건 ◦은평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0 → 76,000 (76,000) ◦정릉천 하천변 자전거도로 연결 및 정비 0 → 600,000 (600,000) ◦사평대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0 → 500,000 (500,000) ◦동작구 자전거 거치대 설치 0 → 14,250 (14,250)
		2023년 자전거 축제	100,000	290,000	190,000	(202-201-03) 행사운영비 ◦자전거축제 등 행사개최 100,000 → 290,000 (190,000)
		2023년 자전거 대행진	-	280,000	280,000	(202-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서울 자전거 대행진 행사지원 0 → 280,000 (280,000)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			(×513,000) 61,867,813	(×513,000) 73,335,663	(×-) 11,467,85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39,757,898	50,425,748	10,667,850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신설 및 보수	553,516	1,153,516	600,000	(202-401-01) 시설비 ◦태양광LED도로표지병 설치 0 → 600,000 (600,000) ‣도봉구 시도구간 시인성 개선사업 0 → 200,000 (200,000) ‣중랑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0 → 200,000 (200,000) ‣강북구 태양광 발광형 LED 도로표지병 설치 0 → 200,000 (200,0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8,669,720	28,237,570	9,567,850	(202-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0 → 8,485,000 (8,485,000) (202-401-02) 감리비 ◦감리용역비 1,805,167 → 2,888,017 (1,082,850)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285,000 (285,000) ‣박미삼거리외 10개소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0 → 190,000 (190,000) ‣독산로 구간 등 5개소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0 → 95,000 (95,000)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영등포) 0 → 213,750 (213,750) ‣노해로65길4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285,000 (285,000) ‣바닥신호등 설치(성북 월곡동, 종암동, 돈암1동) 0 → 285,000 (285,000)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묵1,2동, 중화1,2동) 0 → 475,000 (475,000) ‣바닥신호등 설치(송파구 일대) 0 → 475,000 (475,000) ‣바닥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0 → 855,000 (855,000) ‣보행 안전사고 예방 음성안내 횡단보도설치 0 → 475,000 (475,000)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171,000 (171,000) ‣동대문구 횡단보도 음성안내 0 → 475,000 (475,000) ‣동대문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0 → 475,000 (475,000) ‣바닥보행신호등 설치(구로구) 0 → 285,000 (285,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중랑구 음성안내시스템 0 → 190,000 (190,000) ▸횡단보도 안전시설(바닥보행신호등) 설치(서초구) 0 → 475,000 (475,000) ▸노원구 신호등 음성안내 0 → 950,000 (950,000) ▸서초구 바닥형 보행신호등 0 → 190,000 (190,000)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0 → 380,000 (380,000) ▸중앙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음성 안내 0 → 188,100 (188,100) ▸2023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0 → 475,000 (475,000) ▸노원구 바닥신호등 구축사업 0 → 1,000,000 (1,000,000) ▸강동구 LED 바닥신호등 설치 0 → 380,000 (380,000) ▸양천 바닥신호등 0 → 300,000 (300,000) ※ 부기 수정 ◦보행자 안전확보시설 신설 및 교체 → 횡단보도 안전유도시설 설치 및 유지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확충	2,888,800	3,388,800	500,000	(202-401-01) 시설비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신설 2,528,000 → 3,028,000 (500,000)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확충정비 0 → 200,000 (200,000) ▸교대역 1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 설치 0 → 300,000 (3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513,000) 13,520,915	(×513,000) 14,320,915	(×-) 800,000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513,000) 3,630,000	(×513,000) 4,430,000	(×-) 800,000	(202-401-01) 시설비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1.000.000 → 1,800,000 (800,00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조도개선 사업 0 → 500,000 (500,000)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 0 → 300,000 (300,000)

☐ 기후환경본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후환경본부			(×134,851,849) 518,145,253	(×134,248,831) 515,310,613	(×△603,018) △2,834,640	┌ + 13건 4,311,554 └ △ 11건 △ 7,146,194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1,283,000) 7,783,836	(×1,213,000) 7,513,836	(×△70,000) △270,000	
	(일반회계)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1,283,000) 7,783,836	(×1,213,000) 7,513,836	(×△70,000) △270,000	
		자치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560,000) 560,000	(×490,000) 490,000	(×△70,000) △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원 560,000 → 490,000 (△70,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	363,750	283,750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 및 홍보 등 270,000 → 170,000 (△100,00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09,184	1,209,184	-	(100-201-02) 공공운영비 ◦민간위탁 손해보험료 0 → 6,702 (증 6,702)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위탁운영비 1,209,184 → 1,202,482 (△6,702)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300,000	200,000	△100,000	※ 세부사업명 변경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100-201-03) 행사운영비 ◦비건페어 개최 → 저탄소 생활문화 페어 개최 200,000 → 100,000 (△100,000)
(기후환경정책과) 재무활동(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1,100	1,100	
	(일반회계) 보전지출		-	1,100	1,100	
		국고보조금 반환	-	1,100	1,100	(100-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0 → 1,100 (증 1,100)
(친환경건물과)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			(×13,060,400) 32,186,317	(x13,926,792) 33,543,897	(×1,166,392) 1,357,580	
	(일반회계)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12,760,400) 25,383,714	(x13,926,792) 26,741,294	(×1,166,392) 1,357,58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9,750,000) 15,600,000	(×10,916,392) 16,957,580	(×1,166,392) 1,357,5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주비 133,333 → 695,281 (증 561,94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집 등 100개소 그린리모델링 15,466,667 → 16,262,299 (증 795,632)
(친환경차량과) 차량부문 온실가스 감축			(×90,166,500) 158,306,290	(×90,166,500) 155,906,290	(×-) △2,400,000	
	(일반회계) 친환경차량 보급		(×88,683,500) 154,602,490	(×88,683,500) 152,202,490	(×-) △2,400,00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5,649,410	23,249,410	△2,40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 지원 4,200,000 → 1,800,000 (△2,400,000)
(친환경차량과) 일반예산(재무활동)			28,581,000	28,254,000	△327,000	
	(일반회계) 보전지출(친환경차량과)		28,581,000	28,254,000	△327,000	
		국고보조금 반환	28,581,000	28,254,000	△327,000	(100-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전기 굴착기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27,000 → 0 (△327,000)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13,579,789) 29,043,103	(×13,679,789) 29,643,103	(×100,000) 600,000	
	(일반회계)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4,591,666) 9,442,792	(×4,691,666) 10,042,792	(×100,000) 200,000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801,666) 3,243,000	(×1,801,666) 3,243,000	-	※ 부기 변경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 지원	480,000	480,000	-	※ 세부사업명 변경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 지원 ※ 부기 변경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유증기회수설비시설 설치 지원 → 세탁·건조 일체형, 건조 회수형 용제 회수시설 교체 지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	400,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0 → 400,000 (증 4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8,988,123) 19,413,309	(×9,088,123) 19,613,309	(×100,000) 200,000	
		전기굴착기 보급	-	(×100,000) 200,000	(×100,000) 20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전기굴착기 보급 0 → 200,000 (증 200,000)
(대기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10,019,304	10,346,304	327,000	
	(일반회계) 보전지출(대기정책과)		10,019,304	10,346,304	327,000	
		국고보조금 반환	10,019,304	10,346,304	327,000	(100-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전기굴착기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0→ 327,000 (증 327,000)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7,729,000) 57,446,608	(×5,401,000) 54,448,608	(×△1,799,000) △2,998,000	
	(일반회계) 에너지 소비 효율화		(×7,200,000) 12,131,020	(×5,401,000) 9,133,020	(×△1,799,000) △2,998,000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30,020	(×1,000) 32,020	(×1,000) 2,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13,000 → 15,000 (증 2,000)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7,200,000) 12,000,000	(×5,400,000) 9,000,000	(×△1,800,000) △3,000,000	※ 부기 변경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 일반 11,400,000 → 8,040,000 (△3,360,000) · 저소득층 600,000 → 960,000 (증 360,000)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 용역	80,000	80,000	-	※ 세부사업명 변경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 용역 ※ 부기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토 용역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 →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검토 용역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3,130,000) 160,355,412	(×3,130,000) 160,530,912	(×-) 175,500	
	(일반회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109,463,768	109,494,768	31,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97,714,789	97,121,915	△592,874	(100-307-05)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83,429,289 → 82,836,415 (△592,87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166,776	759,650	592,874	(100-201-02) 공공운영비 ◦자원회수시설 손해보험료 0 → 592,874 (증 592,874)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1,069,670	1,100,670	31,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주민편익시설 손해보험료 0 → 31,000 (증 31,000)
	(일반회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3,130,000) 16,630,036	(×3,130,000) 16,774,536	(×-) 144,500	
		서울도시금속 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376,250	3,376,250	-	(100-201-02) 공공운영비 ◦건물보험료 0 → 7,400 (증 7,400) (100-307-05) 민간위탁금 ◦SR센터 운영 2,899,664 → 2,892,264 (△7,40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766,953	4,766,953	-	(100-201-02) 공공운영비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0 → 5,500천원 (증 5,500천원) (100-307-05) 민간위탁금 ◦운영경비 2,057,572 → 2,052,072 (△5,500)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	(×1,000,000) 2,030,000	(×1,000,000) 2,030,000	-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 컵 이용료 지원 0 → 2,000,000 (증 2,00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무인회수기 설치 2,000,000 → 0 (△2,000,000)
		잠수교 플리마켓 운영	810,000	610,000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용역업체 선정 및 홍보물 제작 30,000 → 10,000 (△2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플리마켓 행사 개최 780,000 → 600,000 (△180,000)
		개인컵(텀블러) 세척기 설치지원	115,500	-	△115,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세척기 설치 115,500 → 0 (△115,500)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및 운영	240,000	-	△2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전시 공간 기획 및 조성 240,000 → 0 (△24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	-	600,000	6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커피박 등 수거를 위한 인력, 차량 등 자치구 지원 0 → 600,000 (증 600,000)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개최	-	100,000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개최 0 → 100,000 (증 100,000)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5,903,160) 24,336,387	(×5,902,750) 25,035,567	(×△410) 699,180	
	(일반회계) 도로청소 강화		(×1,850,000) 6,220,884	(×1,850,000) 6,420,884	(×-) 200,000	
		비산먼지 억제 사업	0	200,000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비산먼지 억제 안전성 검증 용역 0 → 200,000 (증 200,000)
	(일반회계)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4,166,205	4,666,205	500,000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1,727,462	1,927,462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환경공무관 사진 전시회 등 운영 0 → 200,000 (증 200,000)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600,000	900,000	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휴게실 개선사업비 지원 600,000 → 900,000 (증 300,000)
	(일반회계)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128,410) 1,104,138	(×128,000) 1,103,318	(×△410) △820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28,410) 256,820	(×128,000) 256,000	(×△410) △8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256,820 → 256,000 (△820)

▢ 문화본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문화본부			(x148,569,760) 573,336,940	(x149,370,287) 596,626,194	(x800,527) 23,289,254	┌ + 143건 27,056,504천원 │ └ △ 7건 △3,767,150천원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36,666,470) 143,375,122	(×37,466,470) 153,806,622	(×800,000) 10,431,500	
	(일반회계) 문화시설 운영지원		61,855,459	62,105,459	250,000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41,017,508	41,267,508	250,000	(100-306-01)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41,017,508 → 41,267,508 (250,000)
	(일반회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1,500,000) 8,719,330	(×1,500,000) 8,919,330	(×-) 200,000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1,815,288	2,015,288	200,000	(400-401-01) 시설비 ◦영등포문화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177,000 → 327,000 (150,000) ◦송파문화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165,000 → 215,000 (50,000)
	(일반회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35,166,470) 68,351,334	(×35,966,470) 79,082,834	(×800,000) 10,731,500	
		손기정기념관 시설 보강	-	730,000	730,000	(400-401-01) 시설비 ◦시설 보강공사 0 → 720,000 (720,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보강 부대경비 0 → 10,000 (10,000)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개최지원	200,000	270,000	7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불교박람회 개최 지원 200,000 → 270,000 (70,000)
		연등회 행사 지원	900,000	1,150,000	2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연등회 행사 지원 900,000 → 1,150,000 (2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0	4,330,000	4,330,000	(100-201-01) 자치단체자본보조 ◦화계사 대방(보화루) 내부 개·보수 0 → 200,000 (200,000) ◦도선사 축대 및 주변시설 정비 0 → 1,500,000 (1,500,000) ◦사자암 극락보전 개·보수 지원 0 → 330,000 (330,000) ◦정법사 유물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0 → 100,000 (100,000) ◦봉은사 시왕전 건립 지원 0 → 1,000,000 (1,000,000) ◦호압사 전통사찰 개·보수 지원 0 → 900,000 (900,000) ◦삼천사 주변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0 → 300,000 (300,000)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0	1,508,000	1,508,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공모) 0 → 1,508,000 (1,508,000)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건립	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 국비 확정내시 반영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건립 지원 0 → 800,000 (800,000)
		보문종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0	1,000,000	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0 → 1,000,000 (1,000,000)
		천주교 종교 문화 활용 프로그램 지원	0	290,000	29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천주교 종교문화 활용 프로그램 지원 0 → 290,000 (290,000)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767,000	1,085,250	318,25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공모) 650,000 → 968,250 (318,250)
		코리아 퍼레이드 지원	0	266,000	266,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코리아 퍼레이드 지원 0 → 266,000 (266,000)
		대한민국 성탄축제 지원	0	237,500	237,5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한민국 성탄축제 지원 0 → 237,500 (237,500)
		서울거리공연 운영	1,350.000	1,400.000	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문화거리 공연(공모) 0 → 50,000 (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140,000	1,021,750	881,75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국제문화교류사업 0 → 881,750 (881,750)
	(도시개발특별회계) 문화시설 운영지원		4,158,071	3,418,071	△750,000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3,618,071	3,418,071	△210,000	(205-201-01) 사무관리비 ◦기본구상 3D 모델링 10,000 → 0 (△10,000) (205-401-01) 시설비 ◦노들섬 재구조화 타당성조사(LIMAC) 의뢰 200,000 → 0 (△200,000) ※ 사업 소관부서 변경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수변 문화공간 조성	540,000	0	△540,000	(205-201-01)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10,000 → 0 (△10,000) (205-401-01) 시설비 ◦수변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330,000 → 0 (△330,000) ◦수변 문화공간 타당성조사(LIMAC) 의뢰 200,000 → 0 (△200,000) ※ 사업 소관부서 변경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792,330) 89,391,637	(×792,330) 99,630,587	(×0) 10,238,950	
	(일반회계) 문화예술 육성·지원		75,243,786	77,416,036	2,172,250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5,665,567	56,842,567	1,177,000	(100-306-01) 출연금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5,665,567 → 56,842,567 (1,177,000)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360,000	455,000	9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학특성화사업 지원 100,000 → 195,000 (95,00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800,000	930,000	13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유랑극단, 연극제 등 지원 780,000 → 910,000 (13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국악 활성화	542,248	1,012,498	470,25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악 민간 행사 지원(공모) 0 → 470,250 (470,250)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2,046,583	2,146,583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1,990,583 → 2,000,583 (100,000)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0	200,000	2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공모) 0 → 200,000 (200,000)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695,273	695,273	-	※ 통계목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창고운영 용역 612,893 → 0 (△612,893)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0 → 612,893 (612,893)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지원		(×792,330) 4,789,865	(×792,330) 4,889,865	(×0) 100,000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1,100,000	1,200,000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시 음악영재 교육 800,000 → 860,000 (60,000) ◦서울시 미술영재 교육 300,000 → 340,000 (40,000)
	(일반회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9,357,986	17,324,686	7,996,700	
		서울 드럼 페스티벌	450,000	560,000	11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 445,000 → 555,000 (110,000)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3,000,000	10,116,700	7,116,7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축제 지원 1,000,000 → 5,831,950 (4,831,9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축제 지원 2,000,000 → 4,284,750 (2,284,750)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 (전환사업)	3,005,000	3,745,000	74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표공연예술제 지원 3,000,000 → 3,740,000 (74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문화재정책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x30,859,446) 54,198,052	(x30,859,446) 54,944,052	(x-) 746,000	
	(일반회계) 문화재 지정 관리		2,391,940	3,021,940	630,000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962,440	2,292,440	3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전예수재 전승 지원 0 → 280,000 (280,00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전승 지원 0 → 50,000 (50,000)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209,500	509,5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고문헌 등 발굴 및 활용 사업 0 → 300,000 (300,000)
	(일반회계) 전통문화 활성화		(x1,030,952) 6,231,602	(x1,030,952) 6,347,602	(x-) 116,000	
		보신각 타종행사	344,058	464,058	12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타종행사(삼일절, 광복절, 제야의 종) 273,000 → 393,000 (120,000)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148,464	2,144,464	△4,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145,864 → 2,141,864 (△4,000)
(문화재관리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x65,593,101) 107,191,715	(x65,593,101) 109,541,715	(x-) 2,350,000	
	(일반회계) 문화재 유지 관리		(x1,157,541) 11,515,840	(x1,157,541) 12,115,840	(x-) 600,000	
		운현궁 위탁운영	759,997	759,997	-	※ 통계목 분리·변경 (100-201-02) 공공운영비 0 → 10,000 (1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759,997 → 749,997 (△10,000)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x-) -	(x-) 600,000	(x-) 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0 → 600,000 (600,000)
	(일반회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x196,000) 1,326,544	(x196,000) 1,526,544	(x-) 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302,000	502,000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재발견 0 → 200,000 (2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풍납토성 보존·정비		(x59,420,060) 85,895,800	(x59,420,060) 87,445,800	(x-) 1,550,000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1,010,000	1,510,000	500,000	※ 세부사업명 변경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 설계 0 → 300,000 (300,000) ◦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설계 0 → 200,000 (200,000)
		풍납토성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연구	-	50,000	50,000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풍납토성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연구 0 → 50,000 (50,000)
		석촌동 고분군 정비	(x-) -	(x-) 1,000,000	(x-) 1,000,000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석촌동 고분군 영상홍보관 조성 0 → 300,000 (300,000) ◦ 석촌동 고분군 주변정비 0 → 700,000 (700,000)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39,388,399	37,388,399	△2,000,000	
	(일반회계) 박물관및미술관건립지원		12,927,555	11,927,555	△1,000,000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9,824,246	8,824,246	△1,0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8,399,928 → 7,399,928(△1,0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박물관및미술관건립지원		26,460,844	25,460,844	△1,000,000	
		서서울미술관 건립	11,952,122	10,952,122	△1,0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10,046,000 → 9,046,000 (△1,000,000)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50,126,464	50,656,314	529,850	
	(일반회계) 문화예술시설 건립		1,113,150	143,000	△970,15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970,150	△970,150	△970,150	(100-401-01) 시설비 ◦생활(통일)문화센터 공사비 825,015 → 0 (△825,015) (100-401-02) 감리비 ◦생활(통일)문화센터 감리비 142,360 → 0 (△142,360) (100-401-03) 시설부대비 ◦생활(통일)문화센터 시설부대비 2,775 → 0 (△2,775)
	(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시설 건립		27,708,706	29,108,706	1,400,000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0	900,000	900,00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0 → 900,000 (900,000)
		장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0	500,000	500,00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장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0 → 500,000 (5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서관 건립 조성		21,304,608	21,404,608	100,000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1,304,608	21,404,608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사업설명회, 공청회, 사업 홍보 등 55,000 → 155,000 (100,000)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9,208,791	9,508,791	300,000	
	(일반회계) 박물관 운영 활성화		3,762,440	4,062,440	300,000	
		몽촌역사관 전시개편	2,505,000	2,805,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전시개편 관련 자문회의 등 75,000 → 175,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전시개편 관련 시설공사 2,430,000 → 2,630,000 (200,000)
(서울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4,078,473) 44,699,802	(× 4,079,000) 45,290,856	(× 527) 591,054	
	(일반회계) 도서관 육성지원		7,995,086	8,015,086	20,000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6,420,304	6,440,304	2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397,264 → 6,417,264 (2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서울도서관 운영		1,754,339	1,754,339	-	
		서울도서관 도서확충	392,800	391,000	△1,800	※ 통계목 조정·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자료선정위원회 회의수당 및 운영물품비 1,800 → 0 (△1,800)
		정보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170,124	171,924	1,800	※ 통계목 조정·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및 회의비 0 → 7,400 (7,400) ◦정보자료 관리 및 소모품 구매 117,319 → 110,999 (△6,320) (100-202-05) 공무직 교육여비 ◦공무직 교육여비 0 → 120 (120) (100-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현장실습/인턴십 산재보험비 0 → 600 (600)
	(일반회계) 독서문화 진흥		10,427,306	10,497,306	70,000	
		책방 활성화	341,293	411,293	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책방 활성화 관련 자치구 공모 0 → 70,000 (70,000)
		광화문 책마당 운영	200,000	200,000	-	※ 통계목 조정·변경 (100-201-03) 행사운영비 ◦광화문 책마당 행사 운영 1,995,000 → 1,120,000 (△875,000) (100-401-01) 시설비 ◦광화문 책마당 실내외 전시공간 설계 0 → 20,000 (20,000) (100-401-04) 행사관련시설비 ◦광화문 책마당 실내외 전시공간 조성 0 → 850,000 (8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광화문 책마당 심사/자문 수당 5,000 → 10,000 (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서관 건립·조성		16,100,633	16,600,633	500,000	
		강서구문화체육전기복합에너지충전타운 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2,000,000	2,500,000	500,00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00,000 → 2,500,000 (5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서관 육성지원		(x4,078,473) 8,156,946	(× 4,079,000) 8,158,000	(× 527) 1,054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 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4,078,473) 8,156,946	(× 4,079,000) 8,158,000	(× 527) 1,054	※ 국비 확정내시 반영 (21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156,946 → 8,158,000 (1,054)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역사기반 구축·체계화			1,596,036	1,696,036	100,000	
	(일반회계) 시사편찬 및 교육		1,596,036	1,696,036	100,000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379,760	479,76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사문화답사 0 → 100,000 (100,000)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8,540,293	8,542,293	2,000	
	(일반회계) 박물관 콘텐츠 조성 및 운영		7,755,333	7,757,333	2,000	
		소장유물 과학적 보존복원	298,000	300,000	2,000	(100-206-01) 재료비 ◦보존처리 재료 및 소도구 구입 5,500 → 7,500 (2,000)

☐ 관광체육국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관광체육국			(x18,734,052) 239,026,858	(x18,734,052) 256,755,516	(x-) 17,728,658	[+ 23건 24,942,912 [△ 3건 7,214,254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60,585,724	70,365,724	8,770,000	
	(일반회계)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56,340,474	66,120,474	8,770,000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843,372	1,893,372	1,0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관광업체 업종별 안전매뉴얼 개발 보급사업 0 → 300,000 (300,000) ◦ 실직종사자 대상 관광산업 직업전문화 교육 0 → 300,000 (300,000) ◦ 관광산업 종사자 안전윤리교육 0 → 200,000 (200,000) ◦ 서울관광인 상생 프로그램 운영 0 → 250,000 (250,000)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0,806,102	58,126,102	7,320,000	(100-306-01) 출연금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0,806,102 → 58,126,102(7,320,000) ‣ 컨벤션 유치 마케팅 550,000 → 850,000(300,000) ‣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 마케팅 165,000 → 565,000(400,000) ‣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및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375,000 → 675,000(300,000) ‣ 서울관광 해외홍보 2,700,000 → 7,100,000(4,400,000) ‣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1,000,000 → 2,010,000(1,010,000) ‣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7,530,817 → 8,170,817(640,000) ‣ 서울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0 → 170,000(170,000) ‣ 서울관광 심포지엄 0 → 100,000(100,000)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	1,146,000	1,410,000	264,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환대실천교육 130,000 → 0(△130,000) ◦ 환대분위기 조성 40,000 → 0(△40,000)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환대분위기 조성 및 환대주간 운영 0 → 430,000(430,000) ◦ 관리운영비 등 66,000 → 70,000(4,000)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64,000	200,000	136,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서울 관광인의 날 행사 운영 54,000 → 190,000 (136,000)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10,028,950	12,336,950	2,308,000	
	(일반회계)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2,316,000	2,416,000	100,000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426,000	526,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게스트하우스 전통문화체험 지원 0 → 100,000 (100,000)
	(일반회계)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 정보확산		2,487,650	2,945,650	458,000	
		서울 도보 관광코스 활성화	250,000	450,000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도보코스 체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60,000 → 260,000 (200,000)
		서울 관광시장 다변화 사업	242,000	500,000	258,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아중동 관광 거버넌스 운영 45,000 → 65,000 (20,000) ◦ 아중동 관광 인프라 구축 57,000 → 107,000 (50,000) ◦ 살람 서울 홍보마케팅 120,000 → 228,000 (108,000) ◦ 아중동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0 → 80,000 (80,000)
	(일반회계)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		4,545,300	6,295,300	1,750,000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450,000	1,000,000	550,000	(100-308-11)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325,000 → 800,000 (475,000) ◦ 관리운영비, 홍보비 등 125,000 → 200,000 (75,000)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322,000	822,000	5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관광취약계층 국내여행 지원 260,350 → 718,150 (457,800) ◦ 관리운영비 등 39,650 → 81,850 (42,200)
		자치구 투어버스 지원	0	700,000	700,000	(100-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 투어버스 운영지원 0 → 600,000 (6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외국인관광객 순환버스 운영실태조사 0 → 100,000 (100,000)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1,090,387	84,111,887	3,021,500	
	(일반회계) 시립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광 명소화		29,010,703	28,610,703	△400,000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3,368,138	13,468,138	10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서울월드컵경기장 경상적 대행사업비 12,726,138 → 12,826,138 (100,000) ‣하이브리드잔디 구매 100,000 → 200,000 (100,000)
		고척스카이돔 운영	12,704,461	12,404,461	△30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고척스카이돔 자본적 대행사업비 2,619,000 → 2,319,000 (△300,000)
		장충체육관 운영	2,938,104	2,738,104	△20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장충체육관 자본적 대행사업비 350,000 → 150,000 (△200,000)
	(일반회계) 체육단체 운영 지원		38,833,663	41,865,163	3,131,500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7,499,090	19,930,590	2,431,5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단체 지원 2,771,944 → 4,014,944 (1,243,000)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1,646,400 → 1,804,000 (158,000) ‣회원종목단체 국제교류 지원 0 → 50,000 (50,000) ‣자치구체육회 맞춤형 체육행사 지원 150,000 → 360,000 (210,000) ‣승마경기장 임대료 0 → 700,000 (700,000) ‣자치구체육회 육성지원(사무국장 처우개선) 648,000 → 823,000 (175,000)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2,000,000 → 3,038,500 (1,038,500) ※ 공모조건으로 추진 ◦국제체육행사 지원 293,400 → 443,400 (150,000) ‣한중 꿈나무 체육활동 한마음대회 0 → 100,000 (100,000) ‣회원종목단체 국제교류 지원 0 → 50,000 (50,00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6,921,792	17,621,792	7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6,921,792 → 17,621,792 (700,000)
	(일반회계)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743,400	1,033,400	290,000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컵 축구대회	0	290,000	29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컵 축구대회 0 → 290,000 (290,000)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x18,734,052) 65,291,447	(x18,734,052) 68,950,605	(x-) 3,629,158	
	(일반회계) 생활체육 활성화		(x5,285,462) 16,763,991	(x5,285,462) 18,573,149	(x-) 1,809,158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600,000	700,000	1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600,000 → 700,000 (100,000)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3,190,000	4,899,158	1,709,158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종목 단체별 대회 지원 970,000 → 1,070,000 (100,000) ‣ 시 종목별 대회(협회장기) 300,000 → 400,000 (100,000)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130,000 → 1,739,158 (1,609,158) ※ 민간단체 공모조건으로 추진
	(일반회계) 여가스포츠 육성		2,228,000	2,478,000	250,000	
		여가스포츠 활성화	2,228,000	2,478,000	2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 수상안전 수영교실 0 → 250,000 (250,000)
	(일반회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7,247,420	8,027,420	780,000	
		생활체육시설 확충	1,020,000	1,590,000	57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노원구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0 → 570,000 (570,000) ※ 구비 매칭 조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전환사업)	2,250,000	2,350,000	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운동장 및 체육관 등 개보수비 지원 2,250,000 → 2,350,000 (100,000) ※ 공모조건(1개소당 50백만원 내외)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124,120	234,120	11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클라이밍 대회 개최 0 → 50,000 (50,000) (100-401-01) 시설비 ◦건축물 보수비용 85,133 → 145,133 (60,000)
	(일반회계) 장애인체육 활성화		(x13,448,590) 30,409,536	(X13,448,590) 30,899,536	(x-) 490,000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x2,014,848) 16,525,706	(x-) 10,301,452	(x△2,014,848) △6,224,254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 활성화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564,300 → 624,300 (60,000) ‣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30,000 → 90,000 (60,000) ◦ 전문체육 육성 780,000 → 880,000 (100,000) ‣ 민간기업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0 → 100,000 (100,000) ◦ 국내대회 개최 735,000 → 935,000 (200,000)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5개자치구 대항전) 170,000 → 290,000 (120,000) ‣ 서울림장애학생체육 페스티벌 (서울림운동회) 70,000 → 150,000 (80,000) ◦ 국제체육행사 지원 540,000 → 590,000 (50,000) ‣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100,000 → 150,000 (50,000) ◦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631,997 → 602,416 (△29,581) ‣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x30,530) ((x△30,530)) 109,581 → 0 (△109,581) ‣ 전임지도자 운영 402,186 → 482,186 (80,000)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등 560,300 → 0 (△560,3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67,896 → 0 (△3,067,896) (100-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x1,984,318) ((x△1,984,318)) 2,976,477 → 0 (△2,976,477)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3,067,896	3,067,896	※ 세부사업 분리 신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0-307-05) 민간위탁금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0 → 3,067,896 (3,067,89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	(x2,014,848) 3,646,358	(x2,014,848) 3,646,358	※ 세부사업 분리 신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단위 : 천원)

과목			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x30,530) ((x30,530)) 0 → 109,581 (109,581)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0 → 560,300 (560,300) (100-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x1,984,318) ((x1,984,318)) 0 → 2,976,477 (2,976,477)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8,642,500	8,942,500	300,000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0	300,000	300,00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0 → 300,000 (300,000)

▢ 평생교육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생교육국			(×13,418,011) 4,460,417,415	(×13,655,634) 4,469,726,827	(x237,623) 9,309,412	┌ + 18건 9,309,412천원 └ △ 0 건 △0,000,000천원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4,044,321,297	4,050,988,297	6,667,000	
	(일반회계) 학교교육 지원		48,221,630	53,388,630	5,167,000	
		학생 안전 강화	-	5,000,000	5,000,000	※ 사업명 변경: 학교시설개선 지원 → 학생 안전 강화 (100-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생 안전 강화 사업 0 → 5,000,000 (5,000,000)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39,081,537	39,248,537	167,000	(100-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국공립 초등학교(568개교) 인건비 36,865,339 → 37,032,339 (167,000) ※ 전체 학교 대상 공모 조건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3,984,354,097	3,985,854,097	1,500,000	
		교육경비보조 (조례상 전출금)	27,579,000	29,079,000	1,500,000	(100-703-02) 비법정전출금 ◦일반·특별교육경비 3,311,000 → 4,811,000 (1,500,000) ‣특별교육경비 275,000 → 1,775,000 (1,500,000)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74,233,356	74,597,356	364,000	
	(일반회계)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21,242,844	21,346,844	104,000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9,428,040	9,478,040	50,000	(100-306-01) 출연금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9,428,040 → 9,478,040 (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0 → 50,000 (50,000)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	103,500	54,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 → 104,000 (54,000) ※ 사업비 지원, 공모 통한 선정 조건
	(일반회계)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		47,139,523	47,399,523	260,000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317,425	17,577,425	260,000	(100-306-01) 출연금 ◦50+ 재단 및 캠퍼스 출연금 17,317,425 → 17,577,425 (260,000) ▸디지털 이음단(시니어 디지털 약자 대상) 0 → 260,000 (260,000)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x13,418,011) 85,500,028	(x13,655,634) 86,266,440	(x237,623) 766,412	
	(일반회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x8,512,996) 65,128,900	(x8,591,202) 65,348,895	(x78,206) 219,995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x1,423,963) 2,850,626	(x1,443,558) 2,889,816	(x19,595) 39,190	(100-307-05) 민간위탁금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x197,438) 394,876 → (x198,883) 397,766 ((x1,445) 2,89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x1,226,525) 2,453,050 → (x1,244,675) 2,489,350 ((x18,150) 36,300)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x103,068) 103,068	(x109,605) 109,605	(x6,537) 6,537	(100-307-05) 민간위탁금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지원 (x103,068) 103,068 → (x109,605) 109,605 ((x6,537) 6,537)
		청소년성문화 센터 운영	(x665,120) 2,479,203	(x665,120) 2,579,203	(x-)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x581,980) 2,279,474 → (x581,980) 2,379,474 ((x-) 100,000)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남자 청소년 성교육, 중앙센터 역할사업 0 → 100,000 (100,0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x1,503,828) 3,007,656	(x1,527,888) 3,055,776	(x24,060) 48,120	(100-307-05) 민간위탁금 ◦ 시·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x1,443,180) 2,886,360 → (x1,466,240) 2,932,480 ((x23,060) 46,1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고위기청소년동반자 운영 (x60,648) 121,296 → (x61,648) 123,296 ((x1,000) 2,000)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5,120,346	26,305,346	1,18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등 23,792,391 → 24,977,391 (1,185,000) ‣ 디지털체험관 등 청소년 대상 시설 조성 0 → 500,000 (500,000) ※ 모든 청소년센터 대상 공모 조건 ‣ 청소년 전용요일제 0 → 200,000 (200,000) ※ 전체 시립청소년센터 대상 공모 조건 ‣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설치사업 0 → 485,000 (485,000) ※ 모든 청소년센터 대상 공모 조건 ※ 통계목 변경 (100-307-05) 민간위탁금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등 24,977,391 → 24,947,391 (△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성동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666,815 → 696,815 (30,0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x548,772) 804,648	(x554,376) 812,976	(x5,604) 8,328	(100-307-05) 민간위탁금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운영 (x243,672) 487,344 → (x246,276)492,552 (x2,604)5,20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운영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x305,100)317,304 → (x308,100)320,424 (x3,000)3,12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x1,797,373) 3,594,746	(x1,818,033) 3,636,066	(x20,660) 41,320	(100-307-05) 민간위탁금 ◦시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x180,388) 360,776 → (x180,934) 361,868 ((x546) 1,09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x1,616,985) 3,233,970 → (x1,637,099) 3,274,198 ((x20,114) 40,228)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1,807,080	2,107,080	3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 사업 0 → 300,000 (300,000) ※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 조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x140,000) 140,000	(x140,000) 140,000	-	※ 통계목 변경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x140,000) 140,000 → (x-) 0 ((x△140,000) △1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x-) 0 → (x140,000) 140,000 ((x140,000) 140,000)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x108,894) 217,788	(x110,644) 221,288	(x1,750) 3,5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x108,894) 217,788 → (x110,644) 221,288 ((x1,750) 3,500)
	(일반회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x4,550,915) 13,979,304	(x4,710,332) 14,138,721	(x159,417) 159,41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x3,109,028) 9,461,035	(x3,268,445) 9,620,452	(x159,417) 159,417	(100-307-05) 민간위탁금 ◦시립청소년쉼터 등 운영지원(14개소) (x2,444,080) 8,398,262 → (x2,517,608) 8,471,790 ((x73,528) 73,52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청소년쉼터 등 운영지원(3개소) (x397,825) 795,650 → (x409,137) 806,962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x11,312) 11,31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2개소) (x267,123) 267,123 → (x341,700) 341,700 ((x74,577) 74,577)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5,594,774	5,981,774	387,00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694,774	5,081,774	387,000	(215-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529,838 → 4,916,838 (387,000) ※ 수요조사 후 시급성 등 감안 지원

☐ 시민건강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시민건강국			(x151,965,853) 627,335,927	(x153,556,424) 633,944,877	(x1,590,571) 6,608,950	┌ + 45건 10,547,941 └ △ 24건 3,938,991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8,669,251) 41,104,136	(x8,668,451) 42,160,336	(x△800) 1,056,200	
	(일반회계)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x8,471,251) 36,613,098	(x8,470,451) 37,639,298	(x△800) 1,026,200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2,287,162	2,687,162	4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 야간의원 운영 1,250,000 → 1,450,000 (200,000) ◦공공 야간약국 운영 1,037,162 → 1,237,162 (200,0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자체)	82,000	382,000	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구매 0 → 300,000 (300,000)
		보건지소 확충 지원	2,108,950	2,808,950	7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보건지소 확충지원 700,000 → 1,400,000 (700,000)
		유해약물 안전관리	71,000	221,000	1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51,000 → 101,000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마약류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비 0 → 100,000 (100,000)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40,000	95,000	5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사업 운영 20,000 → 75,000 (55,000)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x29,400) 29,400	(x28,600) 28,600	(x△800) △8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구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FMTP) (x29,400)29,400 → (x28,600)28,600 ((x△800)△800)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5,009,348	4,869,348	△14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4,354,601 → 4,214,601 (△140,000)
		보호자 없는 시민 안심 응급실	741,800	603,800	△138,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간호간병 서비스 의료인 인건비 705,600 → 567,600 (△138,000)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5,505,481	5,205,481	△300,000	(100-306-01) 출연금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5,505,481 → 5,205,481 (△300,000)
	(일반회계) 공중보건 환경 개선		(x198,000) 4,491,038	(x198,000) 4,521,038	30,000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개최	150,000	180,000	3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미용예술 경연대회 행사 개최 150,000 → 180,000 (3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스마트건강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x22,518,688) 115,223,754	(x22,715,884) 116,242,287	(x197,196) 1,018,533	
	(일반회계) 건강생활 기반 조성		(x5,325,953) 9,144,589	(x5,400,953) 9,864,589	(x75,000) 720,000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455,000	650,000	195,000	**※통계목 신설 및 금액변경**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455,000 → 0 (△455,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0 → 650,000 (650,000)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국비)	0	350,000	35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 0 → 350,000 (350,000)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x75,000) 150,000	(x150,000) 325,000	(x75,000) 17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x75,000)150,000 → (x150,000)325,000 ((x75,000)175,000)
	(일반회계)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x7,303,994) 37,386,272	(x7,426,190) 37,795,127	(x122,196) 408,855	
		모바일 헬스케어	(x345,424) 449,051	(x467,620) 607,906	(x122,196) 158,85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 (x345,424)449,051 → (x467,620)607,906 ((x122,196)158,855)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17,118,825	17,118,825	0	**※통계목 신설 및 통계목 간 금액변경**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설)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기간제인건비 0 → 36,000 (36,000) (100-201-01) 사무관리비 ◦헬스케어 자문, 홍보비 241,000 → 205,000 (△36,000)
		비만예방 사업	415,325	665,325	2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증진학교 운영 0 → 250,000 (250,000)
	(일반회계)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x5,831,589) 59,902,396	(x5,831,589) 59,792,074	△110,322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운영	0	119,000	119,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0 → 119,000 (119,000)
		다둥이맘 산후	0	100,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복지원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운영 0 → 100,000 (100,000)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	0	100,00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 0 → 100,000 (100,000)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0	300,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교육, 사업모니터링 평가 등 0 → 22,000 (2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0 → 278,000 (278,000)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980,000	580,000	△400,000	※세부사업명 변경 (당초)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 (변경)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출산맘 모유수유 지원 980,000 → 580,000 (△400,000)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서비스 지원	1,697,729	1,588,407	△109,322	(100-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1,697,729 → 1,588,407 (△109,32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5,301,622	5,281,622	△2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202,837 → 182,837 (△20,000)
		난임부부 지원(자체)	820,000	620,000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난임부부지원사업(자체) 810,000 → 610,000 (△200,000)
(정신건강과)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x32,963,889) 145,045,790	(x33,130,767) 146,017,426	(x166,878) 971,636	
	(일반회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x32,963,889) 145,045,790	(x33,130,767) 146,017,426	(x166,878) 971,636	
		PTSD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0	100.000	10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PTSD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비 0 → 100,000 (100,000)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0	1,200,000	1,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치매) 자문회의, 사업홍보, 사업모니터링 평가 등 0 → 25,000 (2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어르신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치매) 0 → 1,175,000 (1,175,000)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1,547,035	1,647,035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서울 심리지원센터 운영 1,547,035 → 1,647,035 (1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3,300,446	23,005,446	△29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신질환자 및 가족 권익보호사업 0 → 25,000 (2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1,849,472 → 1,729,472 (△120,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0,813,689 → 20,613,689 (△200,000)
		찾·동 방문건강관리	29,751,939	29,496,939	△25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간호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6,637,500 → 6,382,500 (△255,00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x9,089) 18,178	(x55,000) 110,000	(x45,911) 91,822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x9,089)18,178 → (x55,000)110,000 ((x45,911)91,822)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x416,790) 833,580	(x234,729) 469,458	(x△182,061) △364,122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x416,790)833,580 → (x234,729)469,458 ((x△182,061)△364,12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x1,212,325) 1,576,023	(x1,515,353) 1,969,959	(x303,028) 393,93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x1,212,325)1,576,023 → (x1,515,353)1,969,959 ((x303,028)393,936)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x54,126,719) 119,261,462	(x54,076,719) 119,985,055	(x△50,000) 723,593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x5,990,202) 13,839,964	(x5,990,202) 13,589,964	△250,000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340,000	390.000	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170,000 → 195,000 (25,000)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170,000 → 195,000 (25,000)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1,583,940	1,283,940	△300,000	(100-206-01) 재료비 ◦신종감염병 대응 비축방역물품 구입 1,200,000 → 900,000 (△300,000)
	(일반회계) 생활 보건 예방 관리		(x45,065,519) 92,865,669	(x45,015,519) 92,839,262	(x△50,000) △26,407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 관리(국비)	(x3,905,703) 6,599,347	(x3,855,703) 6,572,940	(x△50,000) △26,407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지회등 (x295,301)590,602 → (x461,801)923,602 ((x166,500)33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비 등 (x3,564,880)5,917,701 → (x3,348,380)5,558,294 ((x△216,500)△359,407)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00-201-03) 행사운영비 ※ 부기 및 금액변경 역학조사 훈련 등 설명회비 →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x7,500)15,000 → (x5,000)10,000 ((x△2,500)△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수당 등 (x2,600)5,200 → (x5,100)10,200 ((x2,500)5,000)
	(일반회계) 생활환경 질환 예방관리		(x3,070,998) 12,555,829	(x3,070,998) 13,555,829	1,000,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5,902,000	6,902,000	1,0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02,000 → 6,902,000 (1,000,000)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경비			(x44,038) 184,456	(x44,335) 185,444	(x297) 988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x44,038) 123,578	(x44,335) 124,566	(x297) 98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	(x3,694) 12,314	(x3,991) 13,302	(x297) 988	(100-101-02) 기타직보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x3,694)12,314 → (x3,991)13,302 ((x297)988)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x6,186,193) 15,855,107	(x6,186,193) 16,155,107	300,000	
	(일반회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x6,186,193) 15,299,257	(x6,186,193) 15,599,257	300,000	
		음식문화 개선	302,000	352,000	50,000	감액 -302000 증액 352000 (100-201-03) 행사운영비 ◦'감성서울' 푸드 페스티벌 185,000 → 235,000 (50,000)
		서울 음식문화 박람회	0	250,000	2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수당 0 → 1,500 (1,500) ◦행사 사무용품비 0 → 500 (5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시물 제작 및 부스설치 0 → 100,000 (100,000) ◦행사장 시스템 구성(음향 등) 0 → 10,000 (10,000) ◦행사 프로그램 운영(이벤트, 재료비 등) 0 → 110,000 (110,000) ◦홍보비(SNS, 인쇄비 등) 0 → 18,000 (18,000) ◦행사 진행비(행사보험, 기록물 등) 0 → 10,000 (1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x5,861,000) 91,687,848	(x7,138,000) 94,345,848	(x1,277,000) 2,658,000	
	(일반회계)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x5,861,000) 91,687,848	(x7,138,000) 94,345,848	(x1,277,000) 2,658,00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9,969,003	10,225,003	256,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377,550 → 507,550 (130,000) ◦ 노후 전산기기 교체 0 → 126,000 (126,000)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615,153	879,153	264,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고양정신병원 지붕슬라브 철거·교체공사 0 → 264,000 (264,000)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810,000	650,000	△160,000	(100-301-14) 기타보상금 ◦ 공공의료서비스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800,000 → 640,000 (△160,00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4,835,870	14,579,870	△256,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1,613,000 → 1,357,000 (△256,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x1,261,000) 2,522,000	(x2,448,000) 4,896,000	(x1,187,000) 2,374,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x1,261,000)2,522,000 → (x2,448,000)4,896,000 ((x1,187,000)2,374,000)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x1,740,000) 3,480,000	(x1,830,000) 3,660,000	(x90,000) 18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x1,740,000)3,480,000 → (x1,830,000)3,660,000 ((x90,000)180,00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x2,872,477) 21,334,275	(x2,872,477) 21,284,275	△50,000	
	(일반회계)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8,711,908	8,661,908	△50,000	
		청사시설 유지관리	2,638,740	2,588,740	△5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 측정소 공공운영비 400,000 → 350,000 (△50,000) ▸ 대기 및 수질측정소 공공요금 200,000 → 175,000 (△25,000) ▸ 대기 및 수질측정소 유지보수 200,000 → 175,000 (△25,000)
(어린이병원)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7,681,046	7,661,046	△20,000	
	(일반회계)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7,681,046	7,661,046	△20,000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91,090	371,090	△20,000	(100-307-01) 의료및구료비 ◦ 외부검사 위탁 및 혈액대금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51,900 → 131,900 (△20,000) ▸ 코로나19 검체검사위탁비 94,300 → 74,300 (△20,000)
(서북병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x191,990) 11,007,829	(x191,990) 10,957,829	△50,000	
	(일반회계) 서북병원 운영		(x191,990) 11,007,829	(x191,990) 10,957,829	△50,000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1,169,170	1,119,170	△50,000	(100-307-01) 의료및구료비 ◦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계약 156,000 → 106,000 (△50,000)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3,197,036	3,197,036	-	**※ 통계목 변경** (100-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무의탁환자 귀향여비 등 100 → 0 (△100)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무의탁환자 귀향여비 등 0 → 100 (100)
(은평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10,289,380	10,289,380	-	
	(일반회계) 은평병원 운영		10,289,380	10,289,380	-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1,108,210	1,108,210	-	**※ 통계목 변경** (100-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무의탁환자 귀향여비 등 240 → 0 (△240)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무의탁환자 귀향여비 등 0 → 240 (240)

▢ 행정국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행정국			(×2,540,498) 4,491,413,148	(×2,540,498) 4,493,143,148	1,730,000	[+ 8건 2,043,000 [△ 1건 313,000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41,176,686	41,276,686	100,000	
	(일반회계) 물품관리		547,090	647,090	100,000	
		행정장비 구매	547,090	647,090	1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 사무환경 개선관련 물품구입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 0 → 100,000 (100,000)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2,891,997	2,891,997	0	
	(일반회계) 기본경비		2,891,997	2,891,997	0	
		기본경비	2,891,997	2,891,997	0	<부기명 수정 및 삭제> (100-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5,336명→5,365명) (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1부시장실(5명 이하) : 부기삭제 ◦시장실(정원25인 초과 30인 이하) : 부기삭제 ◦총무과(정원 31인 이상) : 인원수정 452명→492명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8,991,193	9,021,193	30,000	
	(일반회계) 포상관리		1,582,208	1,612,208	30,000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010,678	1,040,678	30,000	(100-303-01) 포상금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금 755,600 → 785,600 (30,000)
	(일반회계) 인사관리 운영		7,408,985	7,408,985	0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311,466	311,466	0	<부기명 수정>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사랑 인사통계시스템 운영지원(복무)→인사랑 운영지원(복무) ◦인사랑 인사통계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인사랑 인프라 유지보수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57,675,874	58,375,874	70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공무원 복지증진		38,649,037	39,349,037	700,000	
		직원 후생복지 지원	7,127,532	7,827,532	7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콘도회원권 이용료 지원 2,000,000 → 2,500,000 (500,000)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직원 공연문화바우처 700,000 → 900,000 (200,000)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766,202	1,766,202	0	<통계목 변경> (100-307-05) 민간위탁금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766,202 → 1,526,202 (△24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보수 및 보강 0 → 240,000 (240,000)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1,146,370	1,411,370	265,000	
	(일반회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146,370	1,411,370	265,00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89,524	654,524	26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중장년 기여활동 모아시간 운영 113,000 → 0 (△113,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중장년 기여활동 모아시간 시스템 구축 200,000 → 0 (△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가칭)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지원센터 조성 0 → 578,000 (578,000)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X1,106,198) 7,766,549	(X1,106,198) 8,351,549	(X0) 585,000	
	(일반회계) 시민참여 강화		7,766,549	8,351,549	585,00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349,764	5,649,764	300,000	(100-306-01) 출연금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5,330,544 → 5,630,544 (300,000)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357,513	642,513	28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개 단체 통일안보체험행사 0 → 285,000 (285,000)
(대외협력과)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7,709,861	7,759,861	50,000	
	(일반회계)		6,665,921	6,715,921	5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운영	64,050	114,050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지역상생 주요사업 홍보 50,000 → 100,000 (50,000)

▢ 재무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무국			(x1,510,517) 3,418,182,472	(x1,510,517) 3,382,339,034	△35,843,438	+ 0 건 - △ 2 건 35,843,438천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850,433,096	817,233,096	△33,200,000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848,791,486	815,591,486	△33,200,000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848,791,486	815,591,486	△33,200,000	(100-101-01) 보수 ◦정근수당 29,436,244 → 19,436,244 (△10,000,000) ◦처우개선비 19,244,549 → 4,244,549 (△15,000,000) (100-101-02) 기타직보수 ◦처우개선비 6,151,462 → 1,951,462 (△4,200,000) (100-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처우개선비 5,473,260 → 1,473,260 (△4,000,000)
(세제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996,174,438	1,993,531,000	△2,643,438	
	(일반회계) 출연(재무국 세제과)		2,643,438	-	△2,643,43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438	-	△2,643,438	(100-306-01) 출연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438 → 0 (△2,643,438)

☐ 미래공간기획관

(단위 : 천원)

과목			2023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미래공간기획관			(×-) 14,533,732	(×-) 15,263,732	(×-) 730,000	┌ + 5건 1,500,000 └ △ 2건 △770,000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 8,219,268	(×-) 8,719,268	(×-) 500,000	
	(일반회계)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 8,219,268	(×-) 8,719,268	(×-) 500,000	
		서초1교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 -	(×-) 250,000	(×-) 250,000	(100-401-01) 시설비 ◦디자인 개발 및 설계 0 → 16,500 (16,500) ◦공사비 등 0 → 233,500 (233,500)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 1,300,000	(×-) 800,000	(×-) △5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1,000,000 → 500,000 (△500,000) ◦설계공모 관리 및 기획 100,000 → 1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200,000 → 200,000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 -	(×-) 750,000	(×-) 7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기본구상 3D 모델링 0 → 10,000 (10,000) ◦자문회의 개최 0 → 10,000 (10,000) (100-401-01) 시설비 ◦노들섬 재구조화 타당성조사(LIMAC) 의뢰 0 → 200,000 (200,000) ◦수변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0 → 330,000 (330,000) ◦수변 문화공간 타당성조사(LIMAC) 의뢰 0 → 200,000 (200,000)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 2,940,944	(×-) 3,040,944	(×-) 1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 2,940,944	(×-) 3,040,944	(×-) 100,000	
		이문정비창 복합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구상	(×-) -	(×-) 100,000	(×-) 100,000	(205-401-01) 시설비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1건~~ 0 → 100,000 (100,000)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지역균형발전전략 추진			(×-) 3,075,000	(×-) 3,205,000	(×-) 13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	(×-)	(×-)	

(단위 : 천원)

과목			2023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역거점육성(특별회계)		2,050,000	2,180,000	130,000	
		강북구 우이동 일대 차고지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 -	(×-) 200,000	(×-) 200,000	(205-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0 → 1,000 (1,000) ◦외부전문가 자문단 회의참석비 등 0 → 4,000 (4,000) (205-401-01) 시설비 ◦강북구 우이동 일대 차고지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비~~-1건~~ 0 → 195,000 (195,000)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 300,000	(×-) 30,000	(×-) △270,000	(205-401-01) 시설비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0 → 20,000 (20,000) ◦전문가 자문회의 0 → 10,000 (10,000)
		신내 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	(×-) 200,000	(×-) 200,000	(205-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0 → 1,000 (1,000) ◦외부전문가 자문단 회의참석비 등 0 → 4,000 (4,000) (205-401-01) 시설비 ◦신내 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1건~~ 0 → 195,000 (195,000)

▢ 디자인정책관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디자인정책관			60,645,948	64,699,948	4,054,000	┌ +12 건 4,514,000 └ △ 2 건 △460,000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 역량강화			40,546,639	43,110,639	2,564,000	
	(일반회계) SOFT서울 기반구축		36,325,441	38,725,441	2,400,000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8,318,652	29,618,652	1,300,000	(100-306-01) 출연금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 28,318,652 → 29,618,652 (1,300,000) <증액 세부항목> · 202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서울디자인정원 조성사업 0→1,000,000 · 국가대표 한정판 디자인 NFT 기획전시 0→150,000 · 서울디자인특파원 운영 0→100,000 ·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활성화 0→50,000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2,160,000	2,710,000	55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사업비 2,160,000→ 2,710,000 (550,000)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400,000	700,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0 → 300,000 (300,000)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0	250,000	2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0 → 1,600 (1,600) (4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0 → 248,400 (248,400)
	(일반회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4,221,198	4,385,198	164,000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861,800	1,191,800	3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제안서평가 참석수당 3,200→ 5,200(2,000) ㅇ 전문가 자문수당 0→ 2,000(2,000) (100-401-01) 시설비 ㅇ 인지건강디자인 확산 0 → 30,000(3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확산 0 → 296.000(296,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650,000	350,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5,600천원 → 3,200천원(△2,400) ◦전문가 자문수당 2,400 → 0(△2,400) (100-401-01) 시설비 644,400천원 → 346,800천원(△297,600) ◦공원 유도디자인 구현 450,400 → 346,800(△103,200) ◦행동유도 안내사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 등 194,400 → 0(△194,400)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0	134,000	13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 및 회의 운영비 등 0 → 4,000(4,000)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0 → 130,000(130,000)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수준향상			15,831,830	17,321,830	1,490,000	
	(일반회계)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물관리 등		15,483,970	16,973,970	1,490,000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추진	1,578,290	1,828,290	2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1,578,290 → 1,828,290 (250,000)
		도시경관개선	3,468,000	3,668,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도시경관개선 설계·공사 3,450,000 → 3,650,000 (200,000)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	1,160,000	1,000,000	△160,000	(100-401-01) 시설비 ◦서울 빛의 관문 경관조명 설치 1,070,000 → 940,000 (△130,000) (100-401-02) 감리비 ◦서울 빛의 관문 경관조명 설치 90,000 → 60,000 (△30,000)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1,000,000	1,400,000	400,000	(100-401-01) 시설비 ◦4대지천 경관조명 설치 910,000 → 1,300,000 (390,000) (100-401-02) 감리비 ◦4대지천 경관조명 설치 90,000 → 100,000 (10,000)
		동대문구 정릉천 용두교 미디어글라스	0	500,000	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용두교 미디어글라스 설치 0 → 500,000 (500,00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0	300,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 등 0 → 2,000 (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0 → 298,000 (298,000)

☐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술심사담당관			2,156,531	2,156,531	0	┌ + 0건 └ △ 0건
(일반회계) **건설기술 설계 수준 향상**			743,955	743,955	0	
	(일반회계)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395,716	395,716	0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5,716	395,716	0	(100-201-01) 사무관리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288,000→287,450 (△360) ‣ 기본설계 적격 심의 : 108,000→107,640 (△360) ○ 안전점검 피복비 1,800→2,160 (360)

☐ 안전총괄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안전총괄실			(소4,785,774) (×5,606,836) 1,268,516,787	(소4,785,774) (×5,606,836) 1,294,534,787	(소0) (×0) 26,018,000	+ 89건 44,975,000 △ 9건 18,957,000
안전총괄과			(×92,924) 224,000,082	(×92,924) 224,000,082	(×-) 0	+ 0 건 △ 0 건
재무활동			221,695,446	221,695,446	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210,192,260	221,695,260	0	
		재난관리기금 적립	210,192,260	221,695,260	11,503,000	<사업간 조정 : 통계목 조정> (100-702-01) 기금 전출금 ◦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0 → 11,503,000 (11,503,000)
	(일반회계) 보전지출		11,503,186	186	△11,503,000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재난관리기금)	11,503,000	0	△11,503,000	<사업간 조정 : 통계목 조정> (100-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03,000→0 (△11,503,000)
중대재해예방과			5,545,895	5,565,895	20,000	+ 1 건 20,000천원 △ 0 건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5,475,173	5,495,173	20,000	
	(일반회계) 안전관리		5,475,173	5,495,173	20,00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유도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0	20,000	2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유도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0→20,000 (2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안전지원과			(×318,912) 4,917,179	(×318,912) 5,317,179	(×-) 400,000	┌ + 2 건 400,000천원 └ △ 0 건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318,912) 4,887,309	(×318,912) 5,287,309	(×-) 400,000	
	(일반회계) 재난상황관리		4,887,309	5,287,309	400,000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0	250,000	2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0→250,000 (250,000) ‣장학금 미지원 및 공모 조건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지원	39,875	189,875	1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자율방재단 피복비 0→150,000
도로계획과			(×3,200,000) 379,502,189	(×3,200,000) 373,352,189	(×-) △6,150,000	┌ + 12 건 3,750,000천원 └ △ 3 건 △9,900,000천원
도로 건설			(×3,200,000) 362,823,628	(×3,200,000) 356,673,628	(×-) △6,15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간선도로망 확충		23,827,400	21,827,400	△2,000,000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7,114,400	5,114,400	△2,000,000	(202-401-01) 시설비 ◦공사비 6,614,400→4,614,400(△2,0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39,461,468	40,061,468	60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15,200,000	15,800,000	600,000	(205-401-01) 시설비 ◦단절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0→600,000 (6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283,425,713	278,675,713	△4,7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신길~여의도 일대 교통소통 개선	0	300,000	3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300,000 (300,000)
		시루봉로 도로 확장	0	900,000	900,000	(205-401-01) 시설비 ◦ 설계비 0→100,000 (100,000) ◦ 보상비 0→200,000 (200,000) ◦ 공사비 0→600,000 (600,000)
		용비교~강변북로 진입로간 도로개선	0	1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100,000 (100,000)
		백사터널 건설	0	300,000	3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300,000 (300,000)
		상계IC 건설	0	300,000	3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300,000 (300,000)
		내곡 IC 연결로 신설	0	50,000	5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50,000 (50,000)
		성암로 도로확장	0	500,000	500,000	(205-401-01) 시설비 ◦ 보상비 0→500,000 (50,000)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0	1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100,000 (100,000)
		도곡로·언주로 입체화 지하차도 건설	0	200,000	200,000	(205-401-01) 시설비 ◦ 기본구상 용역 0→200,000 (200,000)
		월계로(창문여고~북서울꿈의 숲) 지하도로 건설	0	200,000	2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 조사 용역 0→200,000 (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테헤란로 지하물류 인프라 건설	0	200,000	200,000	(205-401-01) 시설비 ◦기본구상 용역 0→200,000 (200,000)
		남부순환도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5,740,000	10,740,000	△5,0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15,140,000→10,140,000 (△5,000,00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18,000,000	15,100,000	△2,9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16,800,000→13,900,000(△2,900,000)
도로관리과			**225,281,082**	**253,390,082**	**28,109,000**	**+ 53 건 28,109,000천원** **△ 0 건**
도로시설물 관리			**219,347,366**	**247,456,366**	**28,109,000**	
	(일반회계)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74,330,434**	**79,495,434**	**5,165,000**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960,000	3,530,000	2,570,000	(100-401-01) 시설비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960,000→3,530,000(2,570,000) ‣경일초등학교 앞 방음벽 교체 0 → 550,000 (550,000) ‣솔샘로 102 노후 방음벽 교체 0 → 300,000 (300,000) ‣광양 중고교 방음벽 교체 0 → 1,200,000 (1,200,000) ‣중랑구) 신현초등학교 방음벽 신설 0 → 520,000 (520,000)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692,400	2,792,400	100,000	(100-401-01) 시설비 ◦6개 도로사업소 (충격흡수 시설, 과속방지턱 등) 2,680,000→2,780,000 (100,000) ‣동부도로 사업소- 도로안전시설(차선분리대)설치 0 → 100,000 (100,000)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999,000	2,834,000	1,835,000	(100-401-01) 시설비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사설물 보수 보강 999,000→2,834,000 (1,835,000) ◦서초구) 서초대로 등 4개소 보행자 울타리 정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0 → 273,000 (273,000) ◦ 동작구) 현충로, 노량진로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0 → 512,000 (512,000) ◦ 동작구) 여의대방로 등 4개소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0 → 1,000,000 (1,000,000) ◦ 강남구) 영동대로 도로부속시설물 설치((일원동 743번지 일대 방호울타리 설치) 0 → 50,000 (50,000)
		제설대책 추진	11,805,280	12,465,280	660,000	(100-401-01) 시설비 ◦ 테헤란로 위험 예측 경고 교통안전 시스템 시설 구축 0→100,000(100,000) ◦ 상습결빙구간 사전예방 경고시스템 시범 사업 0→300,000(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14,000→1,574,000 (260,000) ◦ 제설장비구매(8톤) 480,000→740,000(260,000) * 마포구 제설장비 교체(260,000)
		보도영업 시설물 개선	104,019	104,019	0	<통계목 변경> (100-303-01) 포상금 ◦ 300 → 0(△300) (100-301-14) 기타보상금 ◦ 0 → 300(300)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22,000	22,000	0	<통계목 변경> (100-303-01) 포상금 ◦ 22,000 → 20,000(△2,000) (100-301-14) 기타보상금 ◦ 0 → 2,000(2,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145,016,932**	**167,960,932**	**22,944,000**	
		노후 포장도로 정비	89,863,661	96,248,661	6,385,000	(205-401-01) 시설비 ◦ 중앙버스 차로 칼라포장 0 → 4,000,000(4,000,000) ◦ 미끄럼방지 포장정비(남부도로사업소) 0 → 285,000(28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송파역 근린생활 시설 스마트 물순환 사업 0 → 1,500,000(1,500,000) ◦ 쿨링로드 시스템 설치(중랑구 일대) 0 → 600,000(600,000) ‣ 지하유출수 용량 및 수질, 제설(염수살포)기능 병행, 물튀김 문제 해결 등 개선사항 반영하여 사업 시행 하는 조건
		시도보도 유지관리	19,446,165	33,002,665	13,556,500	(205-401-01) 시설비 ◦ 시도보도 유지관리 16,730,000→30,286,500 (13,556,500) ‣ 성동구) 난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0 → 237,500 (237,500) ‣ 노원구) 동일로 면목2동 사거리 주변 보도정비 0 → 665,000 (665,000) ‣ 대방천로 보도 정비 0 → 304,000 (304,000) ‣ 뚝섬로 596~630외 1구간 노후 보도정비 0 → 475,000 (475,000) ‣ 종로구) 평창문화로 보행환경 개선 0 → 427,500 (427,500) ‣ 송파구) 중대로(가락시장역7번 출구~광평교 사거리)) 노후 보도 정비 0 → 570,000 (570,000) ‣ 강북구) 오현로 노후 보도 정비 0 → 332,500 (332,500) ‣ 강북구) 한천로 노후 보도 정비 0 → 570,000 (570,000) ‣ 용산구) 삼각지역~신용산역간 한강대로 보행환경 개선 0 → 1,900,000 (1,900,000) ‣ 종로구) 지봉로(50-98)보행환경 개선 0 → 950,000 (950,000) ‣ 동작구) 장승배기로 노후보도 정비 0 → 427,500 (427,500) ‣ 양천구) 오목로 보행환경개선사업 0 → 950,000 (950,000) ‣ 노원구) 동일로 노후 측구 시설물 개선 0 → 427,500 (427,500) ‣ 송파구) 송파대로(잠실역~가락시장역) 노후 측구 시설물 개선 0 → 285,000 (285,000) ‣ 송파구) 송파대로(가락시장역~장지역) 노후 측구 시설물 개선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0 → 190,000 (190,000) ‣ 광진구) 마들로 797~891 노후보도 정비 0 → 475,000 (475,000) ‣ 양천구) 양천로 보도블럭 정비사업 0 → 190,000 (190,000) ‣ 노원구) 노원로, 노해로, 도봉로 측구 정비 0 → 1,007,000 (1,007,000) ‣ 마포구) 성산로 노후보도 정비 0 → 570,000 (570,000) ‣ 마포구) 토정로 노후보도 정비 0 → 570,000 (570,000) ‣ 성북구) 월곡로 노후측구 시설 개선 0 → 304,000 (304,000) ‣ 성북구) 월계로 노후측구 시설 개선 0 → 342,000 (342,000) ‣ 동대문구) 천호대로 노후 측구 개선 0 → 475,000 (475,000) ‣ 중랑구) 상봉로(47-89, 48-90) 보도블럭 정비 0 → 693,500 (693,500) ‣ 중랑구) 겸재삼거리 주변 보도 정비 0 → 218,500 (218,500)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10,000,000	10,500,000	500,000	(205-401-01) 시설비 ◦ 횡단보도 진출입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10,000,000→10,500,000 (500,000)
		노면표시유지관리	14,399,280	16,901,780	2,502,500	(205-401-01) 시설비 ◦ 도시안전시설(도로표지병 등) 정비 0 → 2,502,500 (2,502,500) ‣ 동작구) 교통안전 시설 노면표시 유지관리 공사(시도에 한함) 0 → 80,000 (80,000) ‣ 봉천로 도로 표지병 설치(관악구) 0 → 237,500 (237,500) ‣ 도로표지병 설치(마포구)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은평구)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강서구)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강남구)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용산구)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광진구)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285,000 (285,000) ‣ 도로표지병 설치(성북구) 0 → 285,000 (285,000) ‣ 강남구 도로표지병 사업 0 → 190,000 (190,000)
도로시설과			(×1,995,000) 299,647,353	(×1,995,000) 310,244,353	10,597,000	┌ + 22 건 12,654,000천원 └ △ 5 건 △2,057,000천원
도로시설관리			(×1,995,000) 247,520,792	(×1,995,000) 257,825,792	10,305,000	
	(일반회계) 도로시설물 운영(일)		(×325,000) 66,922,938	(×325,000) 65,373,938	△1,549,000	
		공동구 관리 위탁	13,491,015	13,222,015	△269,000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 12,954,466→12,685,466 (△269,000)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16,175,579	15,690,579	△485,000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 15,351,486→14,866,486 (△485,000)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위탁	16,993,765	16,739,765	△254,000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 16,253,978→15,999,978 (△254,000)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8,065,155	17,524,155	△541,000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 17,211,856→16,670,856(△54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73,368,604	73,968,604	600,000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정비	0	600,000	600,000	(205-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태양광 LED내부 조명식 0 → 600,000(6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물 운영		27,351,518	29,001,518	1,6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도로시설물(자치구위임관리)긴급보수	1,139,000	2,689,000	1,550,000	(205-401-01) 시설비 ◦보도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 등 1,139,000→2,689,000 (1,550,000) ‣ 아시아공원 정비사업(F/S) 타당성 용역(송파구) 0 → 100,000(100,000) ‣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서대문구) 0 → 1,000,000(1,000,000) ◦백운육교 도색 및 정비(노원구) 0 → 150,000(150,000) ‣ 가리봉동 효성아파트 앞 육교 보수 공사(구로구) 0 → 200,000(200,000) ‣ 중목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선(중랑구) 0 → 100,000(100,000)
		선형의 숲 보도육교 설치	0	1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타당성 조사 및 기계획 수립 용역 0 → 100,000(1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터널시설관리		**13,523,688**	**13,673,688**	150,000	
		월드컵 터널 보행환경 개선	0	150,000	150,000	(205-401-01) 시설비 ◦차단벽 설치 설계용역 0 → 150,000(15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천복개 구조물 관리		**5,338,208**	**7,242,208**	1,904,000	
		당현천1복개 보수	78,953	378,953	3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78,953 → 378,953(300,000)
		대방천복개 보수	244,023	644,023	4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244,023 → 644,023(400,000)
		도림천4복개 보수	55,725	155,725	1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55,725 → 155,725(100,000)
		불광천1복개 보수	402,277	602,277	2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402,277 → 602,277(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성내유수지교 보수	2,000,000	2,324,000	324,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보도정비) 2,000,000 → 2,324,000(324,000)
		성북천2복개	60,639	560,639	5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60,639 → 560,639(500,000)
		청계천복개 (우안)보수	1,586,658	1,666,658	8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1,586,658 → 1,666,658(8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전시설물 관리		**(×1,670,000) 58,285,836**	**(×1,670,000) 65,835,836**	**7,550,000**	
		노후도로조명 시설 개량 사업	12,285,000	18,715,000	6,430,000	(205-401-01) 시설비 ◦도로 조명시설 개량 12,282,000 → 18,712,000 (6,430,000) ‣테헤란로 노후도로 조명시설 개량 0 → 3,60,000(3,600,000) ‣ 학동로 가로등 교체 사업 0 → 1,500,000 (1,500,000) ‣ 삼전로 가로등 개량공사 0 → 760,000(760,000) ‣남부순환로 가로등 교체 사업 0 → 570,000 (570,000)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6,675,324	7,795,324	1,120,000	(205-401-01) 시설비 ◦도로터널 진출입구간 고성능 CCTV설치 0 → 1,120,000 (1,120,000) ‣남부도로사업소 (590,000) ‣북부도로사업소 (530,000)
	(일반회계) 지하도상가 관리		**52,068,345**	**52,360,345**	**292,000**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50,894,744	50,386,744	△508,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46,105,253 →45,597,253(△508,000)
		지하도상가 개보수	750,000	1,550,000	80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위탁사업비 750,000 →1,550,000(800,000) ‣ 강남역 12번 출구 E/S설계 용역비 0 → 100,000 (100,000) ‣ 지하도상가 선별관제 기반 화재 CCTV도입 0 → 700,000 (700,000)
교량안전과			**(소4,785,774) 129,114,784**	**(소4,785,774) 122,156,784**	**(소0) △6,958,000**	**┌ + 1 건 42,000천원 └ △ 1 건 △70,000,000천원**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소4,785,774) 129,046,059**	**(소4,785,774) 122,088,059**	**(소0) △6,958,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교량관리		**70,479,699**	**63,479,699**	**△7,000,000**	
		한강교량 일상 유지 보수	8,400,000	8,400,000	0	<통계목 변경> (205-401-01) 시설비 ◦ 보수, 보강 공사비 7,000,000 → 6,980,000(△20,000) (205-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등 외부 위원 참석 수당 0 → 20,000(20,000)
		성산대교 성능개선	17,060,000	10,060,000	△7,000,000	(205-401-01) 시설비 ◦ 공사비 16,100,000 → 9,100,000(△7,0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교량관리		**35,789,974**	**35,831,974**	**42,000**	
		교량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13,500,000	13,542,000	42,000	(205-401-01) 시설비 ◦ 보수·보강 공사비 12,400,000 →12,442,000(42,000) ‣ 오륜교 방호 울타리 설치비 0 → 36,000(36,000) ‣ 방이고가 충격완충 장치 설치 0 → 6,000(6,000)

▢ 주택정책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택정책실			(×1,248,101,724) 4,382,267,423	(×1,240,346,699) 4,202,398,556	(×△7,755,025) △179,868,867	┌ + 23건 303,336,752 └ △ 7건 483,208,619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967,180,828) 1,906,809,071	(×967,180,828) 1,911,319,071	(×-) 4,51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490,847,828) 1,051,524,879	(×490,847,828) 1,051,634,879	(×490,847,828) 110,000	
		예비비(국민)	(×-) 913,946	(×-) 893,946	(×-) △20,000	(204-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국민) 913,946 → 893,946 (△20,000)
		비주택 거주 및 자장강부가구 지원	(×-) -	(×-) 130,000	(×-) 130,000	(204-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0 → 130,000 (13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 150,701,567	(×-) 155,101,567	(×-) 4,400,000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 150,701,567	(×-) 155,101,567	(×-) 4,400,000	(204-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서울주택도시공사 교부금 82,426,639 → 86,826,639 (4,400,000)
(주택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 213,141,799	(×-) 46,141,799	(×-) △167,000,00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 198,500,000	(×-) 31,500,000	(×-) △167,0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국민계정)	(×-) 167,000,000	(×-) -	(×-) △167,000,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167,000,000 → 0 (△167,000,000)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108,289,462) 236,673,029	(×108,289,462) 240,158,029	(×-) 3,485,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8,887,500) 20,843,950	(×8,887,500) 24,328,950	(×-) 3,485,000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	(×8,887,500) 20,843,950	(×8,887,500) 24,328,950	(×-) 3,485,000	(204-201-01) 사무관리비 ◦ 모아주택 시·구 합동워크숍 개최 0→ 60,000 (60,000) (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존 관리계획 수립대상지 모아타운 지원단 운영 인건비 지원 0 → 660,000 (66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비 6,125,000 → 8,310,000 (2,185,000)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SH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 0 → 852,000 (852,000) ◦설계비 지원, 사업성 분석비 지원 272,000 → 0 (△272,000)
(공공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164,705,846) 672,947,974	(×156,950,821) 656,982,949	(×△7,755,025) △15,965,025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84,937,449) 254,297,292	(×77,182,424) 238,332,267	(×△7,755,025) △15,965,025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7,589,655) 20,263,964	(×7,195,325) 19,387,634	(×△394,330) △876,330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연남동 행복주택 건설 876,330 → 0 (△876,330)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 -	(×394,330) 876,330	(×394,330) 876,330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연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0 → 876,330 (876,330)
		공공주택 건설 (추가8만호)	(×47,303,253) 78,796,473	(×4,249,964) 5,487,184	(×△43,053,289) △73,309,289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주택건립 58,005,796 → 1,558,616 (△56,447,180) · 북부간선도로 20,699,791 → 0 (△20,699,791) · 장지차고지 17,803,113 → 0 (△17,803,113) · 강일차고지 16,005,025 → 0 (△16,005,025) · 노동자복지관 1,939,251 → 0 (△1,939,251) (204-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공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 19,553,457 → 2,691,348 (△16,862,109) · 신촌동주민센터 715,943 → 0 (△715,943) · 가리봉구시장 1,761,221 → 0 (△1,761,221) · 방화차고지 1,172,250 → 0 (△1,172,250) · 금천경찰서 2,695,674 → 0 (△2,695,674)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영등포쪽방 968,853 → 0 (△968,853) · 면목행정문화중심 4,201,812 → 0 (△4,201,812) · 구로시립도서관 2,138,929 → 0 (△ 2,138,929) · 명일1동주민센터 3,207,427 → 0 (△3,207,427)
		공공주택 건설 (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 -	(×35,298,264) 57,304,264	(×35,298,264) 57,304,264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주택건립 0 → 40,442,155 (40,442,155) · 북부간선도로 0 → 20,699,791 (20,699,791) · 장지차고지 0 → 17,803,113 (17,803,113) · 노동자복지관 0 → 1,939,251 (1,939,251) (204-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공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 0 → 16,862,109 (16,862,109) · 신촌동주민센터 0 → 715,943 (715,943) · 가리봉구시장 0 → 1,761,221 (1,761,221) · 방화차고지 0→ 1,172,250 (1,172,250) · 금천경찰서 0 → 2,695,674 (2,695,674) · 영등포쪽방 0→ 968,853 (968,853) · 면목행정문화중심 0 → 4,201,812 (4,201,812) · 구로시립도서관 0 → 2,138,929 (2,138,929) · 명일1동주민센터 0 → 3,207,427 (3,207,427)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24,000	(×-) 64,000	(×-) 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24,000 → 64,000 (40,000)
(공공주택과) 재무활동			(×-) 264,448,095	(×-) 24,448,095	(×-) △240,000,000	
	보전지출(도정)		(×-) 262,563,095	(×-) 22,563,095	(×-) △240,000,000	
		지방채상환(도정)	(×-) 262,563,095	(×-) 22,563,095	(×-) △240,000,000	(204-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240,000,000 → 0 (△240,0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동주택지원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 10,241,774	(×-) 10,326,652	(×-) 84,878	
	(일반회계)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 1,433,630	(×-) 1,518,508	(×-) 84,878	
		공동주택관리 지원	(×-) 278,132	(×-) 360,010	(×-) 84,87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57,632 → 242,510 (84,878)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 사업 추진			(×-) 40,991,621	(×-) 46,106,621	(×-) 5,115,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 35,991,621	(×-) 41,106,621	(×-) 5,115,000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20,000,000	(×-) 25,000,000	(×-) 5,000,000	(204-501-01) 민간융자금 ◦추진위/조합 운영비 등 융자금 20,000,000 → 25,000,000 (50,000,000)
		정비사업 분석 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 309,180	(×-) 409,180	(×-) 100,000	(204-201-01) 사무관리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309,180 → 409,180 (100,000)
		예비비(도정)	(×-) 906,986	(×-) 921,986	(×-) 15,000	(204-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도정) 906,986 → 921,986 (15,000)
(주거정비과) 재무활동			(×-) 438,153,500	(×-) 663,653,500	(×-) 225,500,000	
	내부거래지출(도정)		(×-) 216,100,000	(×-) 441,600,000	(×-) 225,500,000	
		통합안정화기금 예탁(도정)	(×-) 216,100,000	(×-) 441,600,000	(×-) 225,500,000	(204-704-01)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216,100,000 → 441,600,000 (225,500,000)
(주택정책지원센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 3,680,605	(×-) 4,574,605	(×-) 894,000	
	(일반회계)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및 개선		(×-) 252,601	(×-) 1,046,601	(×-) 794,000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 794,000	(×-) 79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0 → 750 (750)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1,600 (1,600) ◦건축주택 공간정보 분석 및 기획 0 → 97,650 (97,650) (100-207-02) 전산개발비 ◦시스템 고도화 0 → 694,000 (694,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안정 방안 연구 개발(국민)		(×-) 3,428,004	(×-) 3,528,004	(×-) 100,000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00,000	(×-) 200,000	(×-)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물량예측 데이터 분석 및 정보공개 50,000 → 100,0000 (50,000)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개발 50,000 → 0 (△50,000) ◦전월세 관련 시장지표 신규개발 0 → 100,0000 (100,000)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40,000) 10,756,007	(×40,000) 11,463,287	(×-) 707,280	
	(일반회계)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 9,542,664	(×-) 10,249,944	(×-) 707,280	
		건축위원회 등 운영	(×-) 267,026	(×-) 274,306	(×-) 7,280	(100-201-01) 사무관리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70,000원*5명*2회*0.8 0 → 2,160 (2,160)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200,000원*8명*4회*0.8 0 → 5,120 (5,120)
		의회정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	(×-) -	(×-) 700,000	(×-) 7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비용 등 0 → 20,000 (20,000) (204-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 0 → 680,000 (680,000)
(건축기획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 1,413,224	(×-) 2,213,224	(×-) 800,000	
	(일반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 153,224	(×-) 953,224	(×-) 800,000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시범사업	(×-) -	(×-) 800,000	(×-) 8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개폐형 방범창 설치 0 → 800,000 (800,000)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			(×-) 739,349	(×-) 1,739,349	(×-) 1,0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739,349	(×-) 1,739,349	(×-) 1,000,000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 -	(×-) 165,000	(×-) 165,000	(204-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 0 → 165,000 (165,000)
		예비비(재촉)	(×-) 599,349	(×-) 634,349	(×-) 35,000	(204-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재촉계정) 599,349 → 634,349 (35,00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지원	(×-) 70,000	(×-) 770,000	(×-) 700,000	(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지원 60,000 → 560,000 (500,000) (204-401-01) 시설비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정책 수립 용역 0 → 200,000 (200,000)
		답십리 굴다리 가하구조 개선	(×-) -	(×-) 100,000	(×-) 100,000	(204-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 0 → 100,000 (100,000)
(재정비촉진사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 488,124,500	(×-) 487,124,500	(×-) △1,000,000	
	내부거래지출		(×-) 266,500,000	(×-) 265,500,000	(×-) △1,000,000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재촉)	(×-) 266,500,000	(×-) 265,500,000	(×-) △1,000,000	(204-704-01)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66,500,000 → 265,500,000 (△1,000,000)
(주거환경개선과)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5,433,000) 30,169,418	(×5,433,000) 29,669,418	(×-) △5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3,699,254	(×-) 2,699,254	(×-) △1,000,000	
		저층주거지 시민 편익시설 공급	3,561,000	2,561,000	△1,0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21년 선정지역 사업비 3,261,000 → 2,261,000 (△1,0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		(×5,433,000) 26,470,164	(×5,433,000) 26,970,164	(×-) 5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 315,000	(×-) 315,000	(×-) -	(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택개량사업 지원 15,000 → 315,000 (3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주택개량(안심 집수리) 사업 300,000 → 0 (△300,000)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 315,000	(×-) 315,000	(×-) -	(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택개량사업 지원 15,000 → 315,000 (3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주택개량(안심 집수리) 사업 300,000 → 0 (△300,000)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 -	(×-) 500,000	(×-) 5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앵커시설 조성 사업 0 → 400,000 (400,000)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공사비 0 → 100,000 (100,000)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2,137,500) 21,252,625	(×2,137,500) 23,252,625	(×-) 2,0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18,799,557	(×-) 20,799,557	(×-) 2,000,000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10,650,000	(×-) 12,650,000	(×-) 2,000,000	(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10,000,000 → 12,000,000 (2,000,000)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 10,028,189	(×-) 10,528,189	(×-) 500,000	
	(일반회계)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 7,325,329	(×-) 7,825,329	(×-) 500,000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 2,720,000	(×-) 3,220,000	(×-) 50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 수선비 보조 2,200,000 → 2,700,000 (5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전통문화계승발전		(×-) 2,645,260	(×-) 2,645,260	(×-)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택사업)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 1,741,860	(×-) 1,741,860	(×-) -	(100-201-01) 사무관리비 ◦ 흰개미 진단 및 집수리 용역 345,500 → 0 (△345,000)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용역 0 → 245,000 (245,000) ◦ 한옥/비한옥 집수리 상담 및 지원 용역 0 → 100,000 (100,000) (204-401-01) 시설비 ◦ 골목길 경관개선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328,000 → 0 (△328,000) ◦ 골목길 경관개선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0 → 100,000 (100,000) ◦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0 → 828,000 (828,000) ◦ 거점시설 공간 개선 0 → 300,000 (300,000)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거점시설 공간 개선 300,000 → 0 (△300,000) ◦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600,000 → 0 (△600,000)

☐ 도시계획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도시계획국			(×452,740) 20,090,655	(×452,740) 22,752,641	(×-) 2,661,986	┌ + 10 건 2,661,986 └ △ 0 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 4,410,917	(×-) 5,410,917	(×-) 1,000,000	
	(일반회계) 도시발전연구		(×-) 4,410,917	(×-) 5,410,917	(×-) 1,000,000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	(×-) 200,000	(×-) 200,000	(100-401-01) 시설비 ◦ 기술용역비 0 → 200,000(200,000)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 -	(×-) 300,000	(×-) 300,000	(100-401-01) 시설비 ◦ 기술용역비 0 → 300,000(300,000)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 -	(×-) 500,000	(×-) 500,000	(100-401-01) 시설비 ◦ 기술용역비 0 → 500,000(500,000)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정책연구 지원			(×-) 614,000	(×-) 644,000	(×-) 30,000	
	(일반회계) 도시계획 기획 및 심의지원		(×-) 614,000	(×-) 644,000	(×-) 30,000	
		알기쉬운 도시계획 정보 시각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120,000	(×-) 150,000	(×-)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도시계획 정보전달 컨텐츠 제작 등 120,000 → 150,000(30,000)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주거공간의 혁신			(×-) 5,340,000	(×-) 5,370,000	(×-) 3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일반회계) 신속통합기획 추진		(×-) 5,340,000	(×-) 5,370,000	(×-) 30,000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 540,000	(×-) 570,000	(×-)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등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540,000 → 570,000(30,000)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 4,653,832	(×-) 5,653,832	(×-) 1,0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 3,900,000	(×-) 4,900,000	(×-) 1,000,00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 3,500,000	(×-) 3,600,000	(×-) 100,000	(205-401-01) 시설비 ◦기술용역비 0 → 100,000(100,000)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400,000	(×-) 1,300,000	(×-) 900,000	[사업명 변경]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 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5-401-01) 시설비 ◦기술용역비 400,000 → 1,300,000(900,000)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 2,296,770	(×-) 2,496,770	(×-) 2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 시설정비		(×-) 1,685,100	(×-) 1,885,100	(×-) 200,000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 400,000	(×-) 600,000	(×-) 200,000	(205-401-01) 시설비 ◦기술용역비 400,000 → 600,000(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452,740) 2,171,446	(×452,740) 2,573,432	(×-) 401,986	
	(일반회계)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52,740) 2,067,146	(×452,740) 2,469,132	(×-) 401,986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 200,000	(×-) 317,000	(×-) 117,000	(100-207-02) 전산개발비 ◦ 부동산동향분석 고도화 및 공간분석기능 개발 200,000 → 317,000(117,000)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 58,000	(×-) 342,986	(×-) 284,986	(100-207-02) 전산개발비 ◦ 보행약자 정밀 위치정보 취득 및 길 안내 서비스 제공 58,000 → 342,986(284,986)

☐ 균형발전본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균형발전본부			(×4,223,500) 1,669,317,237	(×4,223,500) 1,667,943,245	(×-) △1,373,992	┌ + 7건 1,626,008 └ △ 2건 3,000,000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 1,551,532	(×-) 1,551,532	(×-) -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 847,000	(×-) 847,000	(×-) -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추진	(×-) 400,000	(×-) 400,000	(×-) -	※ 세부사업명 변경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추진 ※ 부기 변경 (205-201-01) 사무관리비 ◦ 도시재생 신규제도 검토 및 현황분석 →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및 도시재생 연계방안 추진
(도심재창조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 3,998,000	(×-) 4,598,000	(×-) 6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 1,435,000	(×-) 2,035,000	(×-) 600,000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1,435,000	(×-) 2,035,000	(×-) 600,000	(205-401-01) 시설비 ◦ 인현·진양상가 구간 아케이드 개선공사 0 → 600,000(600,000)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11,400) 77,339,260	(×11,400) 76,939,260	(×-) △4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 60,871,782	(×-) 60,471,782	(×-) △400,000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	(×-) 4,678,500	(×-) 3,678,500	(×-) △1,000,000	(205-401-01) 시설비 ◦ 공사비 4,530,000 → 3,530,000 (△1,000,000)
		창동차량기지 고가구조물 최적화	(×-) -	(×-) 100,000	(×-) 100,000	(205-401-01) 시설비 ◦ 고가구조물 최적화 타당성조사 용역 0 → 100,000 (100,000)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 608,202	(×-) 808,202	(×-) 200,000	(205-401-01) 시설비 ◦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608,202 → 808,202 (200,000)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	(×-) 300,000	(×-) 300,000	(205-401-01) 시설비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0 → 300,000 (3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부권사업과) 지역발전 계획 수립			(×100,000) 1,463,300	(×100,000) 1,663,300	(×-) 2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		(×100,000) 1,463,300	(×100,000) 1,663,300	(×-) 200,000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 303,000	(×-) 503,000	(×-) 200,000	(205-401-01) 시설비 ◦서부권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300,000 → 500,000 (200,000)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4,000,000) 11,302,746	(×4,000,000) 9,453,754	(×-) △1,848,992	
	(일반회계) 광화문일대 활성화		(×-) 3,302,746	(×-) 3,453,754	(×-) 151,008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 1,474,640	(×-) 1,625,648	(×-) 151,008	(100-201-01) 사무관리비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 51,080 → 31,080 (△20,000) ◦광화문광장 이용객 안전 및 시설물 보호 0 → 151,008 (151,008) (100-406-01) 기타자본이전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보증금 0 → 20,000 (2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4,000,000) 8,000,000	(×4,000,000) 6,000,000	(×-) △2,000,000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4,000,000) 8,000,000	(×4,000,000) 6,000,000	(×-) △2,0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8,000,000 → 6,000,000 (△2,000,000)
(동남권추진단)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6,106,871	(×-) 6,181,871	(×-) 75,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간계획		(×-) 1,006,223	(×-) 1,081,223	(×-) 75,000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철거설계 및 철거 용역	(×-) -	(×-) 75,000	(×-) 75,000	(205-401-01) 시설비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철거설계 및 철거용역 0 → 75,000 (75,000)

▢ 푸른도시여가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푸른도시여가국			(x38,883,636) 470,362,104	(x39,597,769) 515,397,716	(x714,133) 45,035,612	┌ + 49건 89,268,612 └ △ 15건 △44,233,000 ※ 기타 부기 간 금액 변경 1건 세부사업명 변경 1건 통계목 간 금액 변경 1건
(공원여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x2,572,603) 66,028,919	(x2,826,718) 95,443,034	(x254,115) 29,414,115	
	(일반회계) 공원 녹지정책 수립·운영		997,254	797,254	△200,000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961,645	761,645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랜드마크 공원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비 등 200,000 → 0(△200,000)
	(일반회계)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x954,985) 27,588,596	(x1,209,100) 32,591,711	(x254,115) 5,003,115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x865,985) 865,985	(x1,120,100) 1,120,100	(x254,115) 254,115	(100-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여가센터) (x737,820)737,820 → (x942,000)942,000 [(x204,180)204,1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자치구) (x128,165)128,165 → (x178,100)178,100 [(x49,935)49,935]
		공원 내 공원등 시설 개선	2,822,200	4,248,200	1,426,000	(100-401-10) 시설비 ◦ 태양광 수목경관 조명정비 0 → 760,000(760,000) 가로수 경관조명 사업(경춘선숲길,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0→760,000 ◦ 도봉구 초안산 야간조명 0 → 143,000(143,000) ◦ 성북구 북악산공원 외 2개소 공원등 시설개선 0 → 285,000(285,000) ◦ 도봉구 초안산, 둘리쌍문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0 → 238,000(238,000)
		공원 내 CCTV 개선	1,638,400	2,341,400	703,000	(100-401-10) 시설비 ◦ 초안산 및 둘리쌍문공원 CCTV 개선 0 → 228,000(228,000) ◦ 공원내 CCTV 시설개선 0 → 475,000(47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6,070,416	18,690,416	2,620,00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린이대공원 가족 한마음 축제 0 → 250,000(25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어린이대공원 보행자 도로 차열 개선 0 → 140,000(140,000) ◦어린이대공원 후문 진입로 문화거리 조성 0 → 1,500,000(1,500,000) ◦어린이대공원 안내표지 및 홍보시설물 개선 0 → 200,000(200,000)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화장실 신축 설계 0 → 30,000(30,000) ◦어린이대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0 → 500,000(5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x1,617,618) 37,443,078	(x1,617,618) 62,054,078	(x-) 24,611,000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23,530,000	46,323,000	22,793,000	(205-401-10) 시설비 ◦시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정비 및 시설 개선 등 8,653,000 → 9,033,000(380,000) 북한산 운동공간 및 쉼터 정비사업(은평구) 0 → 380,000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 0 → 950,000(950,000) ◦배봉산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 0 → 95,000(95,000) ◦용마산근린공원(사가정지구) 보수정비 0 → 760,000(760,000) ◦용마산근린공원(폭포지구) 보수정비 0 → 760,000(760,000) ◦우장 및 궁산공원 융설시스템 설치 0 → 665,000(665,000) ◦노량진근린공원 정비 0 → 475,000(475,000) ◦일자산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 0 → 475,000(475,000) ◦향림근린공원 보수정비 0 → 116,000(116,000) ◦우장근린공원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시공원 안내체계개선 0 → 143,000(143,000) ◦시공원 안전시설 보수정비 0 → 143,000(143,000) ◦시공원 보행환경 개선 0 → 95,000(95,000)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공공시설 환경개선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190,000(190,000) ◦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 0 → 475,000(475,000) ◦ 기자촌근린공원 보수정비 0 → 329,000(329,000) ◦ 불암산공원 체육시설 정비 0 → 1,425,000(1,425,000) ◦ 강북구 북한산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 0 → 238,000(238,000) ◦ 일자산공원 안전한 산책로 조성 0 → 95,000(95,000) ◦ 오금공원 안전한 산책로 조성 0 → 95,000(95,000) ◦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생태계류원 조성 0 → 95,000(95,000) ◦ 성북구 청량근린공원 보수정비 0 → 285,000(285,000) ◦ 개운산근린공원 보수정비 0 → 760,000(760,000) ◦ 도봉구 시공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0 → 95,000(95,000) ◦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0 → 190,000(190,000) ◦ 상암근린공원 보수정비 0 → 285,000(285,000) ◦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보수정비 0 → 1,000,000(1,000,000) ◦ 진관근린공원 못자리골 수변공간 개선 0 → 523,000(523,000) ◦ 효창근린공원 시설개선 0 → 475,000(475,000) ◦ 용산구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 0 → 190,000(190,000) ◦ 종로구 북악산공원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인왕산공원(무악지구)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인왕산공원(청운지구)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삼청근린공원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사직근린공원 보수정비 0 → 380,000(380,000) ◦ 금천구 호암산 진입부 정비 0 → 475,000(475,000) ◦ 관악산공원(금천삼각지구) 보수정비 0 → 285,000(28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장지공원 야외무대 개선 0 → 285,000(285,000) ◦ 천마공원 인조잔디 교체 0 → 238,000(238,000) ◦ 오금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0 → 1,425,000(1,425,000) ◦ 오금공원 화장실 조성 0 → 190,000(190,000) ◦ 동작구 상도공원 편의휴게시설 확충 0 → 285,000(285,000) ◦ 강서구 시공원 화장실 개선 0 → 12,000(12,000) ◦ 망우리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0 → 143,000(143,000) ◦ 은평구 북한산공원 운동공간 및 쉼터정비 0 → 380,000(380,000) ◦ 명일공원 시설개선 0 → 760,000(760,000) ◦ 강북구 오동교 보수보강 및 주변환경 정비 0 → 285,000(285,000) ◦ 관악구 시공원 포충기 설치 0 → 95,000(95,000) ◦ 일자산공원(허브전문) 무장애데크길 조성 0 → 950,000(950,000) ◦ 일자산 잔디광장 및 주변 산책로 정비 0 → 475,000(475,000) ◦ 둘리쌍문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0 → 418,000(418,000) ◦ 성북구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 0 → 475,000(475,000) ◦ 아차산 맨발산책로 조성 0 → 190,000(190,000) ◦ 동작구 현충근린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0 → 300,000(300,000) ◦ 아차산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 조성 0 → 665,000(665,000)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 공간 조성	419,460	419,460	-	(205-401-10) 시설비 ◦ 실내놀이터 4개소 신증축 343,873 → 0(△343,873) ◦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200 → 343,873(302,673) ◦ 공모보상금 등 34,387 → 75,587(41,200) ※ 부기 간 금액 변경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3,200,000	4,578,000	1,378,000	(205-401-10) 시설비 ◦ 둘리쌍문근린공원 세심천지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0 → 143,000(143,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0 → 1,235,000(1,235,000)
		시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	440,000	440,000	※ 세부사업 신설 (205-401-10)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0 → 440,000(440,000)
(공원여가사업과) 녹색 여가문화 조성			(x1,944,868) 12,042,652	(x1,944,868) 11,472,652	(x-) △570,000	
	(일반회계)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2,940,879	2,300,879	△640,000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1,190,000	1,070,000	△12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 260,000 → 140,000(△120,000) -공원예술제 등 260,000→80,000(△180,000) -망우역사문화공원 시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0→30,000 -플로깅 걷기대회 0→30,000
		테마가 있는 공원 여행	250,000	150,000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테마가 있는 공원 여행 250,000 → 150,000(△100,000)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프로젝트	160,000	100,000	△6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160,000 → 100,000(△60,000)
		주말·방학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	111,200	81,200	△3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111,200 → 81,200 (△30,000) ※ 부기명 수정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81,200 · 주말캠프 7,800,000원*4개소 31,200 · 방학(여름,겨울) 50,000 →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81,200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290,000	100,000	△19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약자동행 녹색문화 조성 290,000 → 100,000(△190,000)
		녹색여가문화 축제	240,000	100,000	△14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녹색여가문화 축제 240,000 → 100,000(△14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농업여가육성 지원		(x202,000) 2,719,583	(x202,000) 2,789,583	(x-) 70,0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2,126,583	2,196,583	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도시농업공동체 육묘장(온실) 정비 0 → 70,000(70,000)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x3,911,165) 157,528,500	(x3,911,165) 127,756,500	(x-) △29,772,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미집행 공원조성		125,220,000	92,920,000	△32,3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42,300,000	10,000,000	△32,300,000	(205-401-01) 시설비 ◦ 보상비 42,300,000 → 10,000,000(△32,3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심공원 확충		(x3,911,165) 31,701,100	(x3,911,165) 34,229,100	(x-) 2,528,000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20,060,000	21,318,000	1,258,000	(205-401-01) 시설비 ◦ 불암산근린공원(중계동 산139-2번지 일대) 조성 0 → 500,000(500,000) ◦ 봉화산근린공원(신내동 779-6번지 일대) 조성 0 → 720,000(720,000) ◦ 봉화산근린공원(묵동 산146-18번지 일대) 조성 0 → 38,000(38,000)
		암사역사공원 조성	(x2,211,165) 3,121,100	(x2,211,165) 3,971,100	(x-) 850,000	(205-401-01) 시설비 ◦ 보상비 (x2,211,165)3,121,100 →(x2,211,165)3,971,100[(x-)850,000]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	180,000	180,000	(205-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용역비 0 → 180,000(180,000)
		현충근린공원 조성	-	170,000	170,000	(205-401-01) 시설비 ◦ 현충근린공원 내 보상지 공원조성 등 0 → 170,000(170,000)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정비	900,000	900,000	-	※ 세부사업명 수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정비
		서울창포원 정비	200,000	-	△200,000	(205-401-01) 시설비 ◦ 공사비 등 200,000 → 0(△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남근린공원(양천)조성 세부사업 신설	-	200,000	200,000	(205-401-01) 시설비 ◦계남근린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0 → 200,000(200,000)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조성 세부사업 신설	-	70,000	70,000	(205-401-01) 시설비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기본구상 수립 용역 0 → 70,000(70,000)
(공원조성과) 재무활동			(x7,424,550) 29,698,200	(x5,688,800) 22,755,200	(x△1,735,750) △6,943,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전지출		(x7,424,550) 29,698,200	(x5,688,800) 22,755,200	(x△1,735,750) △6,943,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x7,424,550) 29,698,200	(x5,688,800) 22,755,200	(x△1,735,750) △6,943,000	(205-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지방채 이자상환 (x7,424,550)29,698,200 →(x5,688,800)22,755,200 [(x△1,735,750)△6,943,000]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x6,306,565) 36,042,100	(x6,306,565) 51,695,000	(x-) 15,653,000	
	(일반회계) 생활주변 녹지확충		3,303,000	4,803,000	1,500,000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758,000	1,508,000	750,000	(100-401-01) 시설비 ◦노원구 중계1동 소공원 마을마당 0 → 300,000(300,000) ◦은평구 불광동 마을마당 0 → 50,000(50,000) ◦영등포구 마을마당(2개소) 0 → 300,000(300,000) ◦광진구 마을마당(1개소) 0 → 100,000(100,000)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	750,000	750,000	(100-401-01) 시설비 ◦성북구 석계역 일대 고가 하부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0 → 500,000(500,000)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일대 고가 하부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0 → 250,000(250,000)
	(일반회계) 시민참여 녹지조성		(x1,906,565) 7,093,655	(x1,906,565) 7,343,655	(x-) 250,000	
		옥상녹화	935,000	1,185,000	2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구)잠실본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조성 0 → 250,000(2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녹지벨트 구축		1,512,385	3,852,385	2,340,000	
		사계절 꽃길 조성	1,512,385	3,852,385	2,340,000	(100-401-01) 시설비 ◦ 강북구 도봉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300,000(300,000) ◦ 도봉구 방학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300,000(300,000) ◦ 은평구 통일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200,000(200,000) ◦ 광진구 천호대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200,000(200,000) ◦ 송파구 송파대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300,000(300,000) ◦ 서초구 신반포로 사계절 꽃길 조성 0 → 200,000(200,000) ◦ 강동구 천호대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190,000(190,000) ◦ 성동구 마장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150,000(150,000) ◦ 중구 퇴계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0 → 500,000(500,000)
	(일반회계) 녹지보전 강화		(x4,400,000) 23,633,060	(x4,400,000) 32,696,060	(x-) 9,063,00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8,741,735	20,304,735	11,563,000	(100-401-01) 시설비 ◦ 노원구 동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475,000(475,000) ◦ 중랑구 동일로, 사가정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190,000(190,000) ◦ 강서구 양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95,000(95,000) ◦ 도봉구 방학사거리 등 가로경관 개선 0 → 143,000(143,000) ◦ 도봉구 도봉로 등 가로수 정비(은행나무 등) 0 → 570,000(570,000) ◦ 은평구 북한산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219,000(219,000) ◦ 송파구 송파대로 가로녹지 조성 0 → 2,413,000(2,413,000) ◦ 송파구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 0 → 950,000(950,000) ◦ 서초구 반포대로 가로정원 조성 0 → 95,000(95,000) ◦ 송파구 중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 → 247,000(247,000) ◦ 강동구 상일로 등 가로변 수목 수세회복 0 → 285,000(285,000) ◦ 영등포구 영중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380,000(380,000) ◦ 성북구 안암로 가로정원 조성 0 → 190,000(190,000) ◦ 도봉구 해등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209,000(209,000) ◦ 광진구 능동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95,000(95,000) ◦ 동대문구 장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190,000(190,000) ◦ 구로구 공원로 가로정원 조성 0 → 950,000(950,000) ◦ 노원구 덕릉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380,000(380,000) ◦ 금천구 시흥대로, 금하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257,000(257,000) ◦ 용산구 이태원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0 → 190,000(190,000) ◦ 마포구 대흥로, 가양대로 가로정원 조성 0 → 95,000(95,000) ◦ 광진구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0 → 475,000(475,000) ◦ 노원구 노원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475,000(475,000) ◦ 광진구 천호대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 0 → 95,000(95,000) ◦ 송파구 가락사거리 일대 가로정원 조성 0 → 1,425,000(1,425,000) ◦ 마포구 마포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190,000(190,000) ◦ 성동구 왕십리로(덕수고 일대) 가로정원 조성 0 → 285,000(285,000)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2,500,000	-	△2,5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500,000	3,000,000	2,500,00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500,000	3,000,000	2,500,000	(205-401-01) 시설비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송파구) 0 → 1,500,000(1,500,000) ◦ 올림픽대로변 녹지 재정비(서초구) 0 → 500,000(5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일대 녹지대 환경개선(서초구) 0 → 300,000(300,000) ◦경부고속도로 길마중길(서초IC~한남IC) 녹지 정비(서초구) 0 → 200,000(200,000)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x7,574,344) 33,143,404	(x7,574,344) 55,708,404	(x-) 22,565,000	
	(일반회계) 생태계 복원		(x1,365,000) 8,140,000	(x1,365,000) 16,120,000	(x-) 7,980,000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2,254,000	10,234,000	7,980,000	(100-401-01) 시설비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중랑구, 중랑교 일대) 0 → 380,000(380,000) ◦고덕천 생태복원 및 녹화(강동구, 고덕천교 일대) 0 → 1,425,000(1,425,000) ◦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영등포구, 목동교~양평교) 0 → 1,425,000(1,425,000) ◦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구로구, 고척교 일대) 0 → 380,000(380,000) ◦불광천(서대문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950,000(950,000) ◦중랑천(도봉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570,000(570,000) ◦안양천(구로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665,000(665,000) ◦중랑천(광진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380,000(380,000) ◦청계천(성동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475,000(475,000) ◦홍제천(서대문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190,000(190,000) ◦중랑천(성동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190,000(190,000) ◦도림천(구로구) 생태복원 및 녹화 0 → 950,000(950,000)
	(일반회계) 생태계 보전		(x5,979,344) 23,382,017	(x5,979,344) 37,517,017	(x-) 14,135,000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07,750	12,287,750	10,780,000	(100-401-01) 시설비 ◦북악스카이웨이 무장애숲길 조성(성북구) 0 → 43,000(43,000) ◦용마산 자락길 정비(중랑구) 0 → 380,000(380,000) ◦봉제산 무장애숲길 조성(강서구) 0 → 713,000(713,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까치산 무장애숲길 조성(동작구) 0 → 48,000(48,000) ◦ 국사봉 등산로 정비(동작구) 0 → 285,000(285,000) ◦ 서달산 등산로 정비(동작구) 0 → 760,000(760,000) 서달산 둘레길 정비(동작구) 0 → 285,000 서달산 둘레길 재정비(동작구) 0 → 475,000 ◦ 불광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은평구) 0 → 1,710,000(1,710,000) ◦ 북악산 등산로 정비(성북구) 0 → 475,000(475,000) ◦ 청계산 등산로 정비(서초구) 0 → 475,000(475,000) ◦ 궁산 등산로 정비(강서구) 0 → 570,000(570,000) ◦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금천구) 0 → 950,000(950,000) ◦ 시흥계곡 무장애숲길 조성(금천구) 0 → 285,000(285,000) ◦ 수락산 등산로 정비(노원구) 0 → 618,000(618,000)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노원구) 0 → 143,000 수락산 등산로 재정비사업(노원구) 0 → 475,000 ◦ 신정산 등산로 정비(양천구) 0 → 143,000(143,000) ◦ 지양산 무장애숲길 조성(양천구) 0 → 380,000(380,000) ◦ 오금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송파구) 0 → 1,425,000(1,425,000) ◦ 초안산 등산로 정비(노원구) 0 → 380,000(380,000) ◦ 수락산 태양광 안내시설 설치(노원구) 0 → 95,000(95,000) ◦ 개운산 무장애숲길 조성(성북구) 0 → 190,000(190,000) ◦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은평구) 0 → 855,000(85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503,600	2,058,600	1,555,000	(100-401-01) 시설비 ◦ 불암산 어울림숲 조성(노원구, 영신여고 뒤) 0 → 1,000,000(1,000,000) ◦ 매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성동구) 0 → 500,000(500,000) ◦ 회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강북구) 0 → 55,000(55,000) ※ 부기명 수정 ◦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 ◦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동대문구)
		서울둘레길 정비	891,000	1,891,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 서울둘레길 쉼터 조성(금천구) 0 → 400,000(400,000) ◦ 서울둘레길 쉼터 조성(서초구) 0 → 300,000(300,000) ◦ 서울둘레길 정비(노원구) 0 → 300,000(300,000)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1,052,865	1,652,865	600,000	(100-401-01) 시설비 ◦ 배봉산 유아숲체험원 정비(동대문구) 0 → 300,000(300,000) ◦ 우장산 유아숲체험원 정비(강서구) 0 → 300,000(300,000) ※ 부기명 수정 ◦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신규) → ◦ 유아숲체험원 조성(중구) ◦ 유아숲체험원 정비(5개소) → ◦ 유아숲체험원 정비(4개소)
		산림환경 개선	-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호암산 산림환경 개선(금천구) 0 → 200,000(200,000)
	(일반회계) 야생동식물 보호		(x230,000) 1,621,387	(x230,000) 2,071,387	(x-) 450,0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341,400	391,400	5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 안양천 어류 모니터링 0 → 50,000(50,000)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465,654	865,654	4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부기명 수정 ◦ 야생생물보호구역 → ◦ 자치구 관리 보호구역 유지관리 (100-401-01) 시설비 ◦ 철새보호구역 생태복원 0 → 100,000(100,000) ◦ 우면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정비(서초구) 0 → 300,000(3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911,363) 7,068,854	(x911,363) 8,338,854	(x-) 1,270,000	
	(일반회계)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x609,735) 6,497,303	(x609,735) 7,767,303	(x-) 1,270,000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829,550	1,429,550	600,000	(100-401-01) 시설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조성 0 → 600,000(600,000)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154,000	824,000	67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구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지원 0 → 670,000(670,000)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x8,117,178) 20,993,759	(x10,312,946) 26,362,256	(x2,195,768) 5,368,497	
	(일반회계) 산림재해방지		(x8,117,178) 20,993,759	(x10,312,946) 26,308,456	(x2,195,768) 5,368,497	
		사방시설 조성(자체)	7,221,780	7,971,780	750,000	(100-401-01) 시설비 ◦우이령 흙길 사방시설 조성 0 → 250,000(250,000) ◦봉산 사방시설 조성 0 → 500,000(500,000)
		산림재해발생시 긴급복구비	(x-) -	(x2,195,768) 4,618,497	(x2,195,768) 4,618,497	※ 세부사업 신설 (100-401-01) 시설비 ◦산사태 피해복구 (x-)0 → (x2,195,768)4,391,536 [(x2,195,768)4,391,536] ◦산사태 피해복구('22년 시비) 0 → 226,961(226,961)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11,257,758	11,857,758	600,000	
	(일반회계)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11,257,758	11,857,758	600,000	
		동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3,031,749	3,081,749	5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산하공원(천호공원 등 3개소) 페스티벌 50,000 → 100,000(50,000) ※ 부기명 수정 ◦산하공원 음악페스티벌 → ◦산하공원(천호공원 등 3개소) 페스티벌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4,758,386	5,208,386	450,000	(100-401-01) 시설비 ◦서울숲 노후 체육시설 등 정비 0 → 450,000(450,000)
		천호공원 시설물 정비	50,000	15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천호공원 노후시설(체육시설 등) 정비 0 → 100,000(100,000)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10,112,978	12,962,978	2,850,000	
	(일반회계) 남산 및 산하공원 보수정비		2,178,704	5,028,704	2,850,000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178,704	5,028,704	2,850,000	(100-401-01) 시설비 ◦ 낙산근린공원 재정비 0 → 300,000(300,000) ◦ 용산가족공원 황톳길 및 도서보관함 조성 0 → 250,000(250,000) ◦ 용산가족공원 환경개선 0 → 300,000(300,000) ◦ 남산 필동일대 산책로 정비 0 → 300,000(300,000) ◦ 남산공원 남측순환도로 친환경 융설시스템 설치 0 → 1,000,000(1,000,000) ◦ 낙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0 → 700,000(700,000)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23,831,306	27,631,306	3,800,000	
	(일반회계) 산하공원 운영		22,608,020	26,408,020	3,800,000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7,601,059	8,121,059	520,000	(100-401-01) 시설비 ◦ 월드컵공원 일대 노후 그레이팅 교체 0 → 150,000(150,000) ◦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0 → 100,000(100,000) ◦ 월드컵공원 노후 CCTV 개선 0 → 270,000(270,000)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742,042	792,042	50,000	(100-401-01) 시설비 ◦ 서서울호수공원 조명시설 정비 0 → 50,000(50,000)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1,076,048	1,476,048	400,000	(100-401-01) 시설비 ◦ 산책로 개선 80,975 → 180,975(100,000) ◦ 경의선숲길 보행전용 구름다리 신설 타당성 조사 0 → 100,000(1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의선숲길공원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0 → 200,000(200,000)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227,623	1,427,623	200,000	(100-401-01) 시설비 ◦노후조명 교체 및 신설 0 → 200,000(200,000)
		보라매공원 유지관리	2,268,410	2,648,410	380,000	(100-401-01) 시설비 ◦보라매공원 시설개선(출입구 개선 및 배드민턴 그늘막 설치) 0 → 80,000(80,000) ◦보라매공원 내 노후 CCTV 개선 0 → 300,000(300,000)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937,792	937,792	-	(100-401-01) 시설비 ◦감리비 31,754 → 부기 및 금액 삭제 (100-401-02) 감리비 ◦감리비 31,754 → 부기 및 금액 신설 ※ 통계목 간 금액 변경
		월드컵 난지 체육공원 조성 세부사업 신설	-	1,650,000	1,650,000	(100-401-10) 시설비 ◦월드컵 난지체육공원 조성 0 → 1,650,000(1,650,000)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세부사업 신설	-	600,000	600,000	(100-401-10) 시설비 ◦하늘공원 일대 메타세쿼이아길 하층식생 개선 0 → 600,000(600,000)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화와 여가가 흐르는 품격높은 공원운영			(x25,000) 6,354,262	(x25,000) 7,554,262	(x-) 1,200,000	
	(일반회계) 북서울꿈의숲 및 산하공원 운영		(x25,000) 6,354,262	(x25,000) 7,554,262	(x-) 1,200,000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5,086,670	6,286,670	1,200,000	(100-401-01) 시설비 ◦북서울꿈의숲 노후 출입구 개선 0 → 500,000(500,000)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CCTV 및 네트워크 장치 등 교체설치 0 → 700,000(700,000)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13,189,455	13,939,455	750,000	
	(일반회계)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11,734,587	12,484,587	7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원문화 활성화	256,500	406,500	15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계절별 식물 기획전시 등 행사 운영 153,000 → 303,000(150,000)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63,143	463,143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문화행사 및 이벤트 운영 196,584 → 296,584(100,000) 누군가의 식물원 0→100,000
		서울식물원 홍보	170,961	470,961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버스 및 전자게시대 등 홍보 0 → 300,000(300,000)
		전시온실 및 야외정원 유지관리	1,765,392	1,965,392	200,000	(100-401-01) 시설비 ◦사계절 꽃나들이 명소 조성 0 → 200,000(2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x96,000) 37,187,571	(x96,000) 36,037,571	(x-) △1,150,000	
	(일반회계)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736,454	2,436,454	△300,000	
		장미원 유지관리	1,392,934	1,092,934	△300,000	(100-401-01) 시설비 ◦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 300,000 → 0 (△300,000)
	(일반회계) 시민만족도 향상		5,955,744	5,855,744	△100,000	
		서울대공원 정보통신사업	1,834,125	1,734,125	△100,000	(100-401-01) 시설비 ◦공원 내 지하구 통신선로 및 보강(중대재해) 850,000 → 650,000 (△200,000) ◦노후 CCTV카메라 교체 0 → 200,000 (2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제센터 상황판시스템 교체 106,860 → 6,860 (△100,000)
	(일반회계)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8,210,758	17,460,758	△750,000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819,411	1,819,411	-	(100-401-01) 시설비 ◦산림욕장 노후시설 정비 400,000 → 100,000 (△300,000) ◦순환도로 주변 산책로 조성 140,000 → 440,000 (300,000)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1,426,674	10,676,674	△750,000	(100-401-01) 시설비 ◦서울랜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배관 보수 400,000 → 0 (△4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서울랜드 노후 오수관 배관 보수 1,000,000 → 400,000 (△600,000) ◦ 서울대공원 데크 정비 0 → 150,000 (150,000) ◦ 저수지 위험지구 안전펜스 설치 0 → 100,000 (100,000)

☐ 물순환안전국(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물순환안전국			(x49,849,436) 211,083,737	(x49,849,436) 222,484,737	(x-) 11,401,000	┌ + 32건 15,871,000 └ △ 4건 4,470,000
(수변감성도시과) 물환경 관리			(x19,500) 16,898,934	(x19,500) 17,748,934	850,000	
	(일반회계) 수변 감성도시 조성		10,293,000	11,143,000	850,000	
		홍제천 일대 수변감성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0	550,000	550,000	(100-401-01) 시설비 ◦설계비 0 → 550,000 (550,000)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설계비 0 → 300,000 (300,000)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관리			(x17,447,000) 156,265,083	(x17,447,000) 166,816,083	10,551,000	
	(일반회계) 수방대책 사업		(x7,981,000) 54,006,984	(x7,981,000) 56,277,984	2,271,000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개량	1,153,375	1,453,375	300,000	(100-401-01) 시설비 ◦제어설비 교체 1,153,375 → 1,453,375 (300,000)
		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및 변압기 개량	903,000	2,583,000	1,680,000	(100-401-01) 시설비 ◦수배전 설비 교체 903,000 → 2,583,000 (1,680,000) ※가산1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23년 성능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교체 조건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 시설 설치(서초구)	0	700,000	700,000	(100-401-01) 시설비 ◦여의천, 양재천 시설물 설치비 0 → 700,000 (700,000)
		청계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설치	0	600,000	60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설치비 0 → 600,000 (600,000) ※청계천 위험지역에 우선 설치 조건
		도림천(구로구) 진출입로 CCTV 구축	0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설치비 0 → 100,000 (100,000)
		풍수해 예방대책	332,446	343,446	11,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수해대책 홍보(캠페인 등) 60,000 → 71,000 (11,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우이천(성북구) 제방 복원공사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실시설계비 0 → 200,000 (200,000)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0 → 300,000 (300,000)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4,000,000	3,000,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하천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4,000,000 → 3,000,000 (△1,000,000)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3,253,000	1,253,000	△2,0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3,253,000 → 1,253,000 (△2,000,000)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6,370,000	5,900,000	△470,000	(100-401-01) 시설비 ◦고지배수로 및 침사지 준설 1,250,000 → 780,000 (△470,000)
		신월 빗물저류배수 시설 유지관리	805,000	955,000	150,000	(100-401-01) 시설비 ◦영상감시 시스템 점검 등 198,000 → 348,000 (150,000)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7,597,000	9,297,000	1,7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6,997,000 → 8,547,000 (1,550,000) (100-401-02) 감리비 ◦감리비 600,000 → 750,000 (150,000)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100,000	100,000		※ 부기변경 (205-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반회계) 하천복원 및 정비		24,886,009	33,166,009	8,280,000	
		중랑천(성동구) 응봉나들목 환경개선	0	150,000	15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150,000 (150,000)
		청계천(성동구) 용답나들목 환경개선	0	150,000	15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150,000 (150,000)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0	500,000	5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400,000 (400,000) (100-401-02) 감리비 ◦감리비 0 → 100,000 (100,000)
		당현천(노원구) 징검다리 개선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300,000 (30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랑천(중랑구) 둔치 체육공원 정비	0	120,000	120,000	(100-401-01) 시설비 ◦조형시계탑 교체 0 → 120,000 (120,000)
		우이천(노원구) 산책로 정비	0	400,000	400,000	(100-401-01) 시설비 ◦산책로 확장 0 → 400,000 (400,000)
		중랑천, 묵동천(중랑구) 시설물 정비	0	1,000,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설계비 0 → 100,000 (100,000) ◦공사비 0 → 900,000 (900,000)
		당현천(노원구) 경관개선	0	250,000	25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250,000 (250,000)
		양재천 (강남구) 자전거도로 보수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200,000 (200,000)
		탄천 등 3개 하천(송파구) 조명시설 개선	0	145,000	145,000	(100-401-01) 시설비 ◦탄천, 감이천, 성내천 태양광 LED등 교체비 0 → 145,000 (145,000)
		안양천 (구로구) 조명시설 개선	0	880,000	880,000	(100-401-01) 시설비 ◦태양광 LED등 교체비 0 → 880,000 (880,000)
		안양천(금천구) 조명시설 개선	0	657,000	657,000	(100-401-01) 시설비 ◦태양광 LED등 교체비 0 → 657,000 (657,000)
		여의천, 양재천(서초구)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개선		128,000	128,000	(100-401-01) 시설비 ◦ 태양광 LED등 교체비 0 → 128,000 (128,000)
		중랑천, 도봉천(도봉구) 안전시설물 설치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설치비 0 → 300,000 (300,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랑천(광진구) 제방보강 및 사면녹화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300,000 (300,000)
		우이천(성북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0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300,000 (300,000)
		정릉천(성북구) 자연친화 문화공간 조성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 및 설계비 0 → 200,000 (200,000)
		정릉천(동대문구) 주민친화공간 조성	0	1,500,000	1,5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1,500,000 (1,500,000)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4,310,000	3,310,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3,710,000 → 2,710,000(△1,000,000)
		묵동천(노원구) 동네하천 재탄생 사업	0	1,300,000	1,3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1,300,000(1,300,000)
		청계천 산책로 정비(청계광장~고산자교)	0	500,000	500,000	(100-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공사비 0 → 500,000 (500,000)
(치수안전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x4,366,861) 5,670,706	(x4,366,861) 5,670,706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 수질개선		(x4,366,861) 4,725,528	(x4,366,861) 4,725,528	-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x198,800) 198,800	(x198,800) 198,800	-	※ 부기변경 및 통계목 변경 (209-201-01) 사무관리비 ◦회계법인 정산검사 0 → 4,800(4,800) (209-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198,800 →194,000(△4,800)

☐ 물순환안전국(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물순환안전국			886,400,100	886,400,100	0	┌ + 16건 12,230,000 └ △ 8건 12,230,000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386,158,876	385,858,876	△3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29,101,296	28,801,296	△300,000	
		예비비	1,167,250	867,250	△300,000	(303-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167,250 → 867,250 (△3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 보수보강		68,987,000	71,327,000	2,340,000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8,745,000	8,745,000	-	※ 부기변경 (303-401-01) 시설비 ◦회기로12길 11 주변 사각형거 보수 55,000 ◦동일로148가길 8-3~동일로 856 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강 1,600,000 ◦망우로62길 30~47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700,000 ◦중랑역로 33~중랑역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100,000 ◦상명고등학교~중계로6가길 65 간 사각형거 보수 200,000 ◦하계역 주변 등 노후 사각형거 보수 300,000 ◦중계주공4단지 주변 등 사각형거 보수 600,000 ◦녹천중학교~월계역신도브레뉴아파트간 등 노후 사각형거 보수 420,000 ◦광운대역 주변 등 노후 사각형거 보수 720,000 ◦동산정보산업고 주변 등 노후 사각형거 보수 1,100,000 ◦노해로 485~상계로 101 노후 사각형거 보수 950,000
		난지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0,509,000	10,509,000	-	※ 부기변경 (303-401-01) 시설비 ◦한남대로20길 47~한남대로 51 구간 외 4개소 사각형거 보수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83,000 ◦불광로 122-10 주변 외 9개소 사각형거 보수 1,440,000 ◦서오릉로23길 4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1,190,000 ◦광성로 16 주변 사각형거 보수 750,000 ◦광성로 27-1 주변 사각형거 보수 870,000 ◦서강대길 40 일대 사각형거 보수 1,895,000 ◦월드컵로 108 주변 사각형거 보수 700,000 ◦도화길 6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023,000 ◦마포대로 201 일대 사각형거 보수 1,078,000 ◦신촌로 94 주변 외 12개소 사각형거 보수 680,000 ◦방울내로11길 198 주변 사각형거 보수 600,000 ◦방울내로 19 일대 사각형거 보수 200,000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1,480,000	11,480,000	-	※ 부기변경 (303-401-01) 시설비 ◦국회대로 7길 주변 사각형거 보수 700,000 ◦경인로53길 73~구로중앙로42길 77 주변 사각형거 보수 1,000,000 ◦경인로53길 90~구로중앙로237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300,000 ◦독산로93길 22~시흥대로138길 33 사각형거 보강 2,030,000 ◦시흥대로2길 8-41~시흥대로2가길 6 사각형거 보수 110,000 ◦국회대로 612~22길 20 사각형거 보수보강 2,500,000 ◦시흥대로 635~대림로 153 사각형거 보수 1,430,000 ◦당산로 187 ~ 양평로21길 25 사각형거 보수 1,150,000 ◦여의도동 44-37~42-21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100,000 ◦신풍로25길 6~대방천로 147-9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16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 업 명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2,900,000	4,200,000	1,300,000	※ 부기 및 금액 변경 (303-401-01) 시설비 ◦둔촌동 517-4~둔촌동 98-7 사각형거 보수 600,000 ◦천호동 328~암사동 469-17 사각형거 보수 900,000 ◦성내동 420-3~성내동 225-4 사각형거 보수 700,000 → 1,000,000 (300,000) ◦성내동 434~성내동 385-5 사각형거 보수 700,000 → 1,700,000 (1,000,000)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7,217,000	18,257,000	1,040,000	※ 부기 및 금액 변경 (303-401-01) 시설비 ◦청운초교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 980,000 ◦배화여자고등학교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6,000 ◦창경궁 주변 원형관로 보수 170,000 ◦흥인지문공원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 373,000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 원형관로 보강 244,000 ◦다산로 32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 400,000 ◦장충단로 188 일대 원형관로 보수 985,000 ◦남대문로5가 450 주변 외 3개소 원형관로 보강 1,350,000 ◦한국외대 주변 원형관로 보강 490,000 ◦전농로16길 73-15 주변 원형관로 보강 100,000 ◦고려대로 40~100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 648,000 ◦노해로33길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 900,000 ◦한천로139가길 주변 등 3개소 원형관로 보수 900,000 ◦도봉로 482 주변 원형관로 보수 851,000 ◦방학로 193 주변 외 3개소 원형관로 보강 1,200,000 ◦시루봉로 149-21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강 1,200,000 ◦시루봉로 248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 업 명				
						보수 1,640,000 ◦해등로 50 외 1개소 원형관로 보수 1,062,000 ◦상계로10길 일대 등 3개소 원형관로 보수 948,000 ◦덕릉로130길 5 일대 등 4개소 원형관로 보수 449,000 ◦동일로 1066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수 386,000 ◦한글비석로 366 일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강 982,000 ◦동일로 1554 일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강 453,000 ◦상계 백병원 주변 외 4개소 원형관로 보수 0→ 1,040,000 (1,040,000)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4,789,000	4,789,000	-	※ 부기 변경 (303-401-01) 시설비 ◦청파로 113-12 일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 1,100,000 ◦한강대로 211 일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수 730,000 ◦천호대로 416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강 310,000 ◦가좌로7길 24-1 일대 주변 원형관로 보수 205,000 ◦연서로17길 18-6 일대 주변 원형관로 보수 664,000 ◦연서로29길 6 일대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수 167,000 ◦응암로4길 3 주변 외 10개소 원형관로 보수 653,000 ◦서대문구 관내 원형관로 보수 440,000 ◦세검정로1길 85 외 4개소 원형관로 보수 520,000
		서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6,233,000	6,233,000	-	※ 부기 변경 (303-401-01) 시설비 ◦안양천로 939 주변 원형관로 보수 743,000 ◦화곡로 301 일대 주변 원형관로 보수 466,000 ◦방화대로6나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000,000 ◦양천로 706 일대 원형관로 보수 1,100,000 ◦양천로 699 일대 원형관로 보수 900,000 ◦여의대로 123 외 14개소 원형관로 보수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480,000 ◦신림로 391 주변 외 5개소 원형관로 보수 660,000 ◦현대시장 교차로 주변 등 3개소 원형관로 보수 401,000 ◦남부순환로 1578 외 3개소 원형관로 보강 483,000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114,000	7,114,000	-	※ 부기 변경 (303-401-01) 시설비 ◦서초동 1748-12 주변 외 6개소 원형관로 보수 1,000,000 ◦논현로 37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 1,160,000 ◦방배역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 1,000,000 ◦도곡로 116 일대 원형관로 보수 785,000 ◦남부순환로 3154~3179 주변 원형관로 보수 958,000 ◦오금로36길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 876,000 ◦새말로8길 6 일대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 914,000 ◦백제고분로 210 주변 원형관로 보수 81,000 ◦고덕로 253 주변 원형관로 보수 34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4,521,000	122,181,000	△2,340,000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818,000	5,318,000	△50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5,000,000 → 4,500,000 (△500,000)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471,000	4,971,000	△50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5,000,000 → 4,500,000 (△500,000)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482,000	4,982,000	△50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5,000,000 → 4,500,000 (△500,000)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666,000	4,826,000	△84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5,000,000 → 4,160,000 (△840,00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242,019,670	232,429,670	△9,59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444,447	43,525,447	△4,919,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물재생시설 개선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0,850,280	5,931,280	△4,919,000	(303-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 10,000,280 → 5,081,280(△4,919,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193,575,223	188,904,223	△4,671,0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82,902,000	179,681,000	△3,221,000	(303-308-11)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경상적위탁사업비 168,175,850 → 165,204,850 (△2,971,000) ‣서남센터 2처리장 최초침전지 유출부 보수공사 1,500,000 → 2,500,000 (1,000,000) ‣탄천센터 체육시설(족구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개선사업 0 → 500,000 (500,000) ‣공단 시설개선(방진망) 사업 0 → 200,000 (200,000) ‣탄천센터 제2처리장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 400,000 → 800,000 (400,000) ‣탄천센터 제1처리장 유입유출로 내부보수공사 0 → 1,000,000 (1,000,000) ‣약품비(탄천) 6,794,858 → 6,114,858 (△680,000) ‣약품비(서남) 18,121,294 → 16,309,294 (△1,812,000) ‣탄천센터 하수슬러지폐기물처리비 13,560,761 → 11,875,761 (△1,685,000) ‣서남센터 하수슬러지폐기물처리비 19,286,831 → 17,392,831 (△1,894,000) ◦(303-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726,150 → 14,476,150(△250,000) ‣공단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200,000 → 150,000 (△50,000) ‣서남센터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보완 200,000 → 0 (△200,000)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5,885,000	4,435,000	△1,450,000	(303-401-01) 시설비 ◦공사비 5,585,000 → 4,135,000 (△1,450,000)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09,379,899	113,429,899	4,05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 업 명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5,303,000	18,603,000	3,300,000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6,655,000	8,655,000	2,000,000	(303-401-01) 시설비 ◦2023 청계천 차집관로(좌안) 단면보수공사 등 6,655,000 → 8,655,000 (2,000,000)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중랑물재생센터) 0 → 2,000,000 (2,000,000) ※ 사업명 변경 :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보수공사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3,720,000	3,870,000	150,000	(303-401-01) 시설비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등 3,720,000 → 3,870,000 (150,000) ‣용답동 물재생센터 내부 인조잔디교체 및 환경개선 0 → 150,000 (150,000) ※사업명변경 : 중랑물재생센터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340,000	890,000	550,000	(303-401-01) 시설비 ◦하수처리 전기설비 정비공사 등 340,000 → 890,000 (550,000) ‣지하공동구 위험구역 안전관리 감시시스템 0 → 550,000 (550,000)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1,547,000	1,647,000	100,000	(303-401-01) 시설비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 1,547,000 → 1,647,000 (100,00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개선(방진망) 사업 0 →100,000 (100,000)
		정보통신 및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510,000	1,010,000	500,000	(303-401-01) 시설비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510,000 → 1,010,000 (500,000) ‣중랑물재생센터 CCTV 설치 0 → 500,000 (5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4,698,500	15,448,500	750,000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2,445,000	2,645,000	200,000	(303-401-01) 시설비 ◦2,3처리장 멀티수질분석기 모니터링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시스템 구축 등 2,445,000 → 2,645,000 (200,000) ‣ 계면측정기 설치 200,000 → 400,000 (200,000)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5,475,000	6,025,000	550,000	(303-401-01) 시설비 ◦ 제2,3,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노후부품 제조구매 등 5,475,000 → 6,025,000 (550,000) ‣ 자양오수펌프장 노후 침사설비 교체 0 → 550,000 (550,000)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72,444,363	78,284,363	5,84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5,699,000	17,939,000	2,240,000	
		차집관로 보수공사	7,309,000	7,529,000	220,000	(303-401-01) 시설비 ◦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물막이 공사 등 7,309,000 → 7,529,000(220,000) ‣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480,000 → 700,000 (220,000)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6,840,000	8,460,000	1,620,000	(303-401-01) 시설비 ◦ 토목시설물유지보수,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등 6,840,000 → 8,460,000 (1,620,000) ‣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480,000 → 900,000 (420,000) ‣ 월류웨어 긴급보수보강 및 교체공사 0 → 1,200,000 (1,200,000)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350,000	450,000	100,000	(303-401-01) 시설비 ◦ 소방시설 유지보수, PSM대행 용역 등 280,000 → 380,000 (100,000) ‣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방진망)사업 0 → 100,000 (100,000)
		기전설비 유지보수(공통분야) 및 안전진단	500,000	800,000	300,000	(303-401-01) 시설비 ◦ 공통분야 전기설비 보수 등 500,000 → 800,000 (300,000) ‣ 난지물재생센터 영상감시(CCTV) 설치 200,000 → 500,000 (3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3,530,000	15,230,000	1,700,000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7,110,000	8,810,000	1,700,000	(303-401-01) 시설비 ◦1,2처리장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7,110,000 → 8,810,000 (1,700,000) ‣유입펌프장 탈취기 교체 0 → 1,700,000 (1,7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2,910,000	4,110,000	1,200,000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2,210,000	3,410,000	1,200,000	(303-401-01) 시설비 ◦슬러지농축기 교체 등 2,210,000 → 3,410,000 (1,200,000) ‣슬러지처리장 탈취 설비 설치 0 → 1,200,000 (1,2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740,000	2,440,000	700,000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1,740,000	2,440,000	700,000	(303-401-01) 시설비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개선사업 1,740,000 → 2,440,000 (700,000)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교체 0 → 700,000 (700,000)

☐ 인재개발원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재개발원			16,794,283	17,434,283	640,000	[+ 1건, 640,000 [△ 0건
(인재개발원)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6,213,405	16,853,405	640,000	
	(일반회계)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2,638,806	3,278,806	640,000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410,000	1,050,000	640,000	(100-401-01) 시설비 ◦ 인재개발원 운동장 개선공사 0 → 640,000 (640,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x73,415,000) 1,594,638,486	(x73,415,000) 1,634,604,486	(x-) 39,966,000	[+ 1건 39,966,000 △ 0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82,130,000	82,130,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사업 (교통개선분담금)		82,130,000	82,130,000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교통개선분담금)	15,000,000	15,000,000	-	※ 통계목간 금액 조정 (202-401-01) 시설비 ◦공사비 11,650,000→ 12,950,000(1,300,000) (202-401-02) 감리비 ◦감리비 3,300,000→ 2,000,000(△1,300,000)
행정운영경비(총무부 총무과)			15,114,168	15,114,168	-	※ 세부사업명 변경 행정운영경비(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 행정운영경비(총무부 총무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14,340,704	14,340,704	-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4,340,704	14,340,704	-	
행정운영경비(총무부 총무과)			755,954	755,954	-	※ 세부사업명 변경 행정운영경비(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 행정운영경비(총무부 총무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755,954	755,954	-	
		기본경비	755,954	755,954	-	
(총무부 총무과) 재무활동			937,811,296	977,777,296	39,966,00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97,094,512	537,060,512	39,966,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497,094,512→ 537,060,512(39,966,000)

☐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상수도사업본부			(×1,145,356) 930,000,000	(×1,145,356) 930,000,000	0	+ 2건 3,308,000 △ 4건 3,308,000
(기획예산과)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762,070) 247,756,329	(×762,070) 249,364,329	(×-) 1,608,000	
	(수도사업특별회계)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762,070) 243,468,476	(×762,070) 245,076,476	(×-) 1,608,000	
		정수센터 시설정비	(×762,070) 47,828,324	(×762,070) 50,436,324	(×-) 2,608,000	(100-401-01) 시설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현대화 0 → 2,000,000 (2,000,000) ◦정수센터 농축조슬러지 계면계 보수정비 0 → 350,000 (350,000) ◦차염발생 설비 설치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0 → 258,000 (258,000) ◦풍납취수장 전기설비 교체 1,931,570 → 1,531,570 (△400,000) ◦암사정수센터 지하관랑 공동구 노후 LED조명 개선 0 → 400,000 (400,000)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7,081,000	6,081,000	△1,00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7,081,000 → 6,081,000 (△1,000,000)
(기획예산과) 공기업 경영 효율화			152,432,314	150,524,314	△1,908,000	
	(수도사업특별회계)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		10,446,040	9,165,040	△1,281,000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6,034,272	4,753,272	△1,281,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6,034,272 → 4,753,272 (△1,281,000)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확충		82,347,761	81,760,761	△587,000	
		수도계량기 교체	23,910,397	23,323,397	△587,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수도계량기 교체 16,310,834 → 15,723,834 (△587,000)

(단위 : 천원)

과목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도사업특별회계) 효율적인 경영 역량 강화		2,160,446	2,120,446	△40,000	
		수도사업 해외진출	292,635	252,635	△40,000	(100-301-09) 외빈초청여비 ◦수도사업 해외진출 105,351 → 65,351 (△40,000)
(기획예산과) 아리수에 대한 수용성 증진			64,451,113	64,751,113	300,000	
	(일반회계) 아리수 마시는 문화 형성		19,396,127	19,696,127	300,000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2,957,986	3,257,986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2,839,000 → 3,139,000 (300,000)

☐ 한강사업본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한강사업본부			119,179,711	124,419,711	5,240,000	+ 18건 5,610,000 △ 5건 370,000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86,078,237	89,718,237	3,640,000	
	(일반회계)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71,962,555	75,752,555	3,790,00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973,754	2,913,754	△6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528,675 → 458,675 (△70,000) (100-401-01) 시설비 ◦흑석동 한강변 먼지털이기 설치 0 → 10,000 (10,000)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965,920	1,265,920	300,000	(100-401-01) 시설비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680,000 → 980,000 (300,000) ※생활체육시설 확충 100,000 뚝섬한강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등 시설개선 200,000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94,866	794,866	300,000	(100-401-01) 시설비 ◦내부조명식 태양광 LED안내판 설치 0 → 100,000 (100,000) ◦기초질서 유지관련 안내판 설치 0 → 200,000 (200,000)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446,399	7,996,399	1,550,000	(100-401-01) 시설비 ◦당산 육갑문 화장실 설치 0 → 500,000 (500,000) ◦부상형 화장실 신설 0 → 1000,000 (1,000,000) ◦화장실 차열페인트 시공 0 → 50,000 (50,000)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3,480,761	3,780,761	300,000	(100-401-01) 시설비 ◦수영장 미끄럼방지 시설물 설치 0 → 300,000 (300,000)
		녹지시설 유지관리	5,137,810	6,087,810	950,000	(100-401-01) 시설비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2단계) 조성 0 → 800,000 (800,000) ◦산책로 개선 0 → 150,000 (150,000)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205,459	2,455,459	250,000	(100-401-01) 시설비 ◦자전거도로 바닥 노면 안내표지 0 → 100,000 (100,000) ◦자전거도로 도막형 바닥재 설치 0 → 150,000 (150,00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3,212,611	3,412,611	200,000	(100-401-01) 시설비 ◦스마트 무비젝터 설치 0 → 200,000 (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4,181,667	4,071,667	△110,000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52,089	42,089	△1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한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13,264 → 3,264 (△10,000)
		한강 이색 축제	181,900	81,900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한강 다리밑 가족 영화제 100,000 → 0 (△100,000)
	(일반회계) 한강 하천시설 관리		5,659,015	5,619,015	△40,000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20,000	-	△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 17,000 → 0 (△17,000) ◦한강수질측정장비 소모품 3,000 → 0 (△3,000)
		한강저수로 정비	1,325,825	1,475,825	150,000	(100-401-01) 시설비 ◦수로조사 용역 120,000 → 270,000 (150,000)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250,000	80,000	△170,000	(100-401-01) 시설비 ◦침수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50,000 → 80,000 (△170,000)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30,800,064	32,400,064	1,600,000	
	(일반회계) 한강 접근체계 개선		8,669,424	10,169,424	1,500,000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4,291,000	5,791,000	1,500,000	(100-401-01) 시설비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0 → 1,000,000 (1,000,000) ◦청담나들목 리모델링 0 → 500,000 (500,000)
	(일반회계) 한강 관광자원화		138,650	238,650	100,000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타당성 용역 0 → 100,000 (100,000)

▢ 서울역사박물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역사박물관			(x308,700) 15,000,129	**(x308,700)** **15,210,129**	(x-) 210,000	┌ + 4건 210,000천원 └ △ 0건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x308,700) 13,571,243	(x308,700) 13,781,243	(x-) 210,000	
	(일반회계)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906,100	**956,100**	50,000	
		유물등록 관리	195,000	245,000	5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비파괴북스캐너 구매 0 → 50,000
	(일반회계) 박물관 활성화		7,552,732	**7,672,732**	120,000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	164,890	184,890	2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민-관협약 재능기부 행사 13,000 → 33,000 (20,000)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90,400	390,40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용 문화상품 개발 제작 82,400 → 122,400 (40,000) ◦ 신규 홍보매체 개발 용역 및 제작 100,000 → 160,000 (60,000)
	(일반회계)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		675,572	715,572	40,000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 운영	675,572	715,572	40,000	(100-401-01) 시설비 ◦ 동대문야외유구전시장 긴급 보수 0 → 40,000 (40,000)

☐ 서울시립미술관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시립미술관			19,604,555	19,854,555	250,000	+ 1건 250,000 △ 0건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진흥			17,768,572	18,018,572	250,000	
	(일반회계) 미술관 운영 활성화		5,456,950	5,706,950	250,00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추진)	187,500	437,500	250,000	(100-401-01) 시설비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시설개선 0 → 250,000 (+250,0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08,880	545,080	36,200	[+ 1건 36,200 [△ -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90,779	426,979	36,200	
	(일반회계)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97,154	133,354	36,20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85,054	121,254	36,200	(100-201-01) 사무관리비 ◦위원회 홍보 확대 ·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리플렛, 포스터 및 기념품 등) 30,000 → 66,200 (36,200)

▢ 자치경찰위원회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자치경찰위원회			(x892,763) 20,764,272	(x892,763) 22,388,272	(×-) 1,624,000	┌ + 7건 1,624,000천원 └ △ 0건 ※통계목 변경 1건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x892,763) 2,035,891	(x892,963) 2,329,891	(×-) 294,000	
	(일반회계) 자치경찰 제도 정비		(x892,963) 1,296,963	(x892,963) 1,440,963	(×-) 144,000	
		주민참여 자치 경찰 지안정책	(×-) 155,700	(×-) 299,700	(×-) 14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실무협의회 등 수당 400 → 0 (△400) ◦반려견 순찰대 홍보비 7,800 → 19,100 (11,300)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 31,000 → 37,500 (6,500) ◦반려견 순찰대 활동용품 69,500 → 145,500 (76,000)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및 캠페인 20,000 → 16,350 (△3,650) ◦반려견 순찰대 보험 7,000 → 7,200 (200) ◦반려견 순찰대 역량강화 교육 0 → 24,500 (24,500) ◦반려견 매개교육 0 → 20,000 (20,000) ◦반려견 순찰대 운영비 0 → 9,550 (9,550)
	(일반회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x-) 738,928	(x-) 888,928	(×-) 150,000	
		자율방범 연합회 지원	(×-) 100,000	(×-) 250,000	(×-) 1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 0 → 150,000 (150,000)
(자치경찰협력과)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 15,401,195	(×-) 15,644,195	(×-) 243,000	
	(일반회계) 자치경찰제의		(×-) 15,349,295	(×-) 15,592,295	(×-) 243,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안정적인 정착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전환사업)	(×-) 107,736	(×-) 107,736	-	※ 통계목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범죄예방진단 물품구입 7,626 → 0 (△7,626)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범죄예방진단 물품구입 0 → 7,626 (7,626)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환사업)	(×-) 334,490	(×-) 514,490	(×-) 18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16,560 → 106,560 (9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장비교체 12,600 → 102,600 (90,000)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전환사업)	(×-) 31,620	(×-) 58,620	(×-) 27,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성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구매 26,800 → 53,800 (27,000)
		교통장비, 운영비 (자본보조) (전환사업)	(×-) 11,726	(×-) 47,726	(×-) 36,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캠코더 단속장비 구매 10,340 → 46,340 (36,000)
(자치경찰지원과)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 3,040,608	(×-) 4,127,608	(×-) 1,087,000	
	(일반회계)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961,408	(×-) 2,048,408	(×-) 1,087,000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 166,410	(×-) 253,410	(×-) 87,000	(100-201-01) 사무관리비 ◦관광경찰대 외국어교육비 0 → 87,000 (87,000)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300,000	(×-) 1,300,000	(×-) 1,0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 순찰정 구매 0 → 1,000,000 (1,000,000)

☐ 의회사무처

(단위 : 천원)

과목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의회사무처			32,973,327	34,517,557	1,544,230	┌ + 6건 1,574,230 └ △ 1건 30,000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16,229,428	16,409,428	180,000	
	(일반회계) 의회운영 사업		12,889,496	12,909,496	20,000	
		의회운영 지원	1,478,704	1,522,704	4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상임위 활동지원 버스 임차 0 → 30,000 (30,000)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11,100 → 61,100 (50,000) · GX 운동프로그램 등 운영 - 60,000원*5일*1명*50주 = 15,000 0 → 15,000 (15,000) · 재활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 운영 - 70,000원*5일*2명*50주* = 35,000 0 → 35,000 (35,000) (100-204-03)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수당 36,000→0(△36,000) ·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일반직) 34,800→0(△34,800) · 여론,동향전담공무원(시간선택제) 1,200→0(△1,200)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30,298	136,298	6,000	(100-303-01) 포상금 ◦유공공무원 시상 12,000 → 18,000 (6,000)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 물품 구매	358,635	358,635	-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임위원회 노후집기 교체 0 → 50,000 (50,000)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 32,000 → 0 (△32,000) ◦의원회관 회의실 등 집기 구매 25,000 → 7,000 (△18,000)
		국내위탁교육 훈련	140,000	110,000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 지원 등 90,000 → 78,000 (△12,000) (100-202-05)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 교육훈련 20,000 → 2,000 (△18,000)
	(일반회계) 의회청사 환경개선		2,875,609	3,035,609	160,000	
		의회 청사 시설개선	514,000	674,000	160,000	(100-401-01) 시설비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구축 0 → 130,000 (130,000) ◦노후 CCTV 교체 0 → 30,000 (30,000)

(단위 : 천원)

과목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국내·외 교류사업		464,323	464,323	-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20,812	320,812	-	(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개최 관련 다과 등 5,112 → 0 (△5,112)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개최 관련 다과 등 0 → 5,112 (5,112) ※ 부기변경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11,831,816	13,082,046	1,250,230	
	(일반회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3,117,430	4,367,660	1,250,230	
		의정 정보화 지원	1,545,127	2,795,357	1,250,23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0 → 1,410,884 (1,410,884) ◦본회의장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87,781 → 27,127 (△160,654)]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3,088,965	3,202,965	114,000	
	(일반회계) 입법활동 지원사업		1,994,160	2,108,160	114,000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60,200	1,060,20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50,200 → 0 (△50,200) · 제안서평가위원회 42,000 → 0 (△42,000) · 연구용역 종합평가 8,200 → 0 (△8,200) ◦제안서평가위원회 0 → 42,000 (42,000) ◦연구용역 종합평가 0 → 8,200 (8,200) ※ 부기변경 (100-207-01) 연구용역비 ◦연구용역 910,000 → 1,010,000(100,000)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572,200	586,200	1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4,200 → 18,200 (14,000) (100-205-09)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560,000 → 0 (△560,000) ◦연구용역비 0 → 560,000 (560,000) ※ 부기변경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2022년 최종예산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4,442,400	0	950,000	950,000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x571,000) 1,142,000	0	(x428,448) 856,896	(x428,448) 856,896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x571,990) 779,200	-	(x207,210) 414,420	(x207,210) 414,420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x1,974,000) 3,986,180	-	(x1,364,266) 2,728,533	(x1,364,266) 2,728,533
5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965,300) 28,521,857	(×19,855,247) 28,364,639	(×18,635,356) 26,621,937	(×△1,219,891) △1,742,702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재해복구비(체육)	(×689,067) 689,067	(×-) -	(×689,067) 689,067	(×689,067) 689,067
7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호우피해 응급복구	4,095,000	-	2,065,000	2,065,000
8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x650,000) 650,000	(x455,000) 455,000	(x650,000) 650,000	(x195,000) 195,000
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2,355,500	0	1,299,020	1,299,020
1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3,700,000	0	2,400,000	2,400,000
11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830,055	-	210,102	210,102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2022년 최종예산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x21,300,000) 34,320,000	(x577,724) 1,634,477	(×13,277,724) 14,334,477	(×12,700,000) 12,700,00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2022년 최종예산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도봉공영차고지 내 국유재산 부지 매입	226,400	-	212,152	212,15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000,000) 100,070,000	(×-) 5,470,433	(×-) 5,945,043	(×-) 474,610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2022년 최종예산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2,500,000	-	2,500,000	2,500,00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x11,096,000) 42,510,000	-	2,920,000	2,920,000
3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의정부지 정비	(x700,000) 1,037,000	(x337,239) 481,770	(x321,839) 459,770	(x△15,400) △22,000
4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x63,630,897) 90,901,281	(x999,999) 1,428,571	-	(△x999,999) △1,428,571
5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342,000	0	100,000	100,000
6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1,316,000	205,062	-	△205,062